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6. 2.

국회행정안전위원회

- 목 차 -

Ⅰ. 감사의 목적 ····· 1

Ⅱ. 감사기간 ····· 1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 2

Ⅳ. 감사실시 경과 ····· 4

Ⅴ. 감사실시 주요내용 ····· 9

1. 행정안전부 ····· 9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5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44

4.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46

5. 인사혁신처 ····· 47

6. 경찰청 ····· 53

7. 소방청 ····· 85

8. 지방자치단체 ····· 99

가. 서울특별시 ····· 99

나. 대구광역시 ····· 115

다. 인천광역시 ····· 123

라. 대전광역시 ····· 131

마. 세종특별자치시 ····· 137

바. 경기도 ····· 142

사. 강원특별자치도 ····· 152

아. 충청남도 ····· 154

자. 전북특별자치도 ····· 157

차. 경상남도 ····· 163

9. 공공기관 ····· 168
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68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168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68
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168
마. 공무원연금공단 ····· 168
바. 한국도로교통공단 ····· 169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170
10. 본회의승인대상기관 ····· 171
가. 서울경찰청 ····· 171
나. 대구경찰청 ····· 179
다. 인천경찰청 ····· 185
라. 대전경찰청 ····· 190
마. 세종경찰청 ····· 196
바. 경기남부경찰청 ····· 200
사. 경기북부경찰청 ····· 209
아. 강원경찰청 ····· 214
자. 충청남도경찰청 ····· 218
차. 전북경찰청 ····· 223
카. 경상남도경찰청 ····· 227
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232
파. 새마을운동중앙회 ····· 232
하. 한국자유총연맹 ····· 232

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33
1. 행정안전부 ····· 23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49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57
4.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258
5. 인사혁신처 ····· 259
6. 경찰청 ····· 261
7. 소방청 ····· 280
8. 지방자치단체 ····· 283
가. 서울특별시 ····· 283
나. 대구광역시 ····· 288
다. 인천광역시 ····· 292
라. 대전광역시 ····· 297
마. 세종특별자치시 ····· 298
바. 경기도 ····· 299
사. 강원특별자치도 ····· 307
아. 충청남도 ····· 307
자. 전북특별자치도 ····· 308
차. 경상남도 ····· 312
9. 공공기관 ····· 314
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314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314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314
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314
마. 공무원연금공단 ····· 314

바. 한국도로교통공단 ····· 314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315
10. 본회의승인대상기관 ····· 316
가. 서울경찰청 ····· 316
나. 대구경찰청 ····· 322
다. 인천경찰청 ····· 326
라. 대전경찰청 ····· 330
마. 세종경찰청 ····· 334
바. 경기남부경찰청 ····· 337
사. 경기북부경찰청 ····· 343
아. 강원경찰청 ····· 347
자. 충청남도경찰청 ····· 351
차. 전북경찰청 ····· 354
카. 경상남도경찰청 ····· 357
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361
파. 새마을운동중앙회 ····· 361
하. 한국자유총연맹 ····· 361
Ⅶ. 증인 및 참고인 현황 ····· 362
1. 기관증인 ····· 362
가. 기관증인 총괄 ····· 362
나.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 364
2. 일반증인·참고인 ····· 365
가. 일반증인·참고인 총괄 ····· 365
나.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현황 ····· 366
다. 일반증인·참고인 철회 현황 ····· 375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

2026. 2. .

행정안전위원장

Ⅰ.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입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Ⅱ. 감사기간

2025. 10. 14.(화) ~ 2025. 10. 30.(목) [17일간]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

1) 행정안전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5) 인사혁신처
6) 경찰청
7) 소방청
8) 지방자치단체
   - ① 서울특별시
   - ② 대구광역시
   - ③ 인천광역시
   - ④ 대전광역시
   - ⑤ 세종특별자치시
   - ⑥ 경기도
   - ⑦ 강원특별자치도
   - ⑧ 충청남도
   - ⑨ 전북특별자치도
   - ⑩ 경상남도
9) 공공기관
   - 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②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③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④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⑤ 공무원연금공단
   - ⑥ 한국도로교통공단
   - ⑦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나.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 ① 서울경찰청
- ② 대구경찰청
- ③ 인천경찰청
- ④ 대전경찰청
- ⑤ 세종경찰청
- ⑥ 경기남부경찰청
- ⑦ 경기북부경찰청
- ⑧ 강원경찰청
- ⑨ 충청남도경찰청
- ⑩ 전북경찰청
- ⑪ 경상남도경찰청
- ⑫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⑬ 새마을운동중앙회
- ⑭ 한국자유총연맹

다. **업무현황보고서 제출요구기관** (주무부처 국감 시 기관장 배석)

1) 행정안전부 산하

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② 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③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④ 한국지역정보개발원
⑤ 지방공기업평가원
⑥ 한국섬진흥원
⑦ 한국지방세연구원
⑧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2) 경찰청 산하

① 경찰공제회
②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3) 소방청 산하

① 한국소방안전원
② 대한소방공제회
③ 소방산업공제조합
④ 한국소방시설협회

Ⅳ. 감사실시 경과

1.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 위원장, △ 간사

대 상 기 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직 원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29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 신정훈 위원장 (민)	△ 윤건영 위원 (민) 권칠승 위원 (민) 김성회 위원 (민) 모경종 위원 (민) 박정현 위원 (민) 양부남 위원 (민) 위성곤 위원 (민) 이광희 위원 (민) 이상식 위원 (민) 이해식 위원 (민) 채현일 위원 (민) 한병도 위원 (민) △ 서범수 위원 (국) 고동진 위원 (국) 박덕흠 위원 (국) 박수민 위원 (국) 이달희 위원 (국) 이성권 위원 (국) 주호영 위원 (국) 정춘생 위원 (조) 용혜인 위원 (기)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행정실장 윤여문 입법조사관 황지현 〃 김현숙 〃 홍선기 〃 이영주 〃 조명식 〃 이상준 〃 이기연 〃 이재승 〃 구진회 〃 김동길 〃 이다영 〃 김경훈 〃 황아람 행 정 관 백승운 〃 조예린 주 무 관 이화자 〃 권현라 〃 임현숙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3인 위원보좌진 22인 의정기록과 직원 5인

나. 지방감사반

1) 지방 1반 : 인천광역시 · 인천경찰청, 대전광역시 · 대전경찰청, 충청남도 · 충청남도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경찰청

구 분	구 성	
감사반장	신정훈 위원장 (민)	
감사위원	김성회 위원 (민) 모경종 위원 (민) 박정현 위원 (민) 이해식 위원 (민) 채현일 위원 (민) 한병도 위원 (민)	고동진 위원 (국) 박덕흠 위원 (국) 박수민 위원 (국) 정춘생 위원 (조)
사무보조직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등 행안위 직원 10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2인 위원 보좌진 11인 의정기록과 직원 3인	

2) 지방 2반 : 대구광역시 · 대구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경찰청, 경상남도 · 경상남도경찰청

구 분	구 성	
감사반장	서범수 위원 (국)	
감사위원	윤건영 위원 (민) 권칠승 위원 (민) 양부남 위원 (민) 위성곤 위원 (민) 이광희 위원 (민) 이상식 위원 (민)	이달희 위원 (국) 이성권 위원 (국) 주호영 위원 (국) 용혜인 위원 (기)
사무보조직원	조문상 전문위원 등 행안위 직원 9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2인 위원 보좌진 11인 의정기록과 직원 3인	

2. 감사 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시간 (출석/재적)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0.14. (화)	10:03~00:29(익일) (22/22)	행정안전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국회	
10.15. (수)	10:04~20:10 (22/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회	
10.17. (금)	10:07~20:09 (22/22)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	
10.20. (월)	10:04~14:54 (10/11)	인천광역시	인천시청	지방1반
	15:32~16:59 (10/11)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10:02~12:53 (11/1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청	지방2반
	14:31~16:03 (11/11)	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	

일 자	감사시간 (출석/재적)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0.21. (화)	10:05~17:56 (21/22)	경기도	경기도청	
	19:20~21:59 (20/22)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10.23. (목)	10:09~19:38 (22/2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20:34~23:28 (22/22)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10.24. (금)	10:07~13:27 (11/11)	대전광역시	대전시청	지방1반
	15:20~17:01 (11/11)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10:04~12:49 (10/11)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청	지방2반
	14:12~15:31 (10/11)	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10.27. (월)	10:06~15:38 (11/11)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지방1반
	16:11~17:31 (11/11)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10:03~13:11 (11/11)	대구광역시	대구시청	지방2반
	14:41~16:28 (11/11)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일 자	감사시간 (출석/재적)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0.28. (화)	10:03~12:58 (11/1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청	지방1반
	14:20~15:25 (11/11)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10:03~13:16 (11/11)	경상남도	경상남도청	지방2반
	14:33~16:05 (11/11)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10.30. (목)	10:12~23:10 (22/22)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국회	

V. 감사실시 주요내용

1.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사관】

○ 행정안전부가 12.3 계엄 발생시 청사폐쇄와 관련하여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이성권위원, 고동진위원)

【인사기획관】

【운영지원과】

【참여혁신조직실】

○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구위기를 전담하는 부처를 설치할 필요 (주호영위원)

○ 2식 이상 급식 및 36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의 업무과중과 관련하여 비교과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 (한병도위원)

○ 검찰개혁추진단에 경찰의 경무관급을 파견하여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 (이상식위원)

○ 검찰청 폐지와 관련하여 정부 내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검찰청 폐지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검토 필요 (주호영위원)

○ 대규모 화재 시 소방본부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바, 긴급구조통제단장 직급의 적절성 및 상향 필요성 (모경종위원)

○ 인천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지연되는 이유 (모경종위원)

○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각 부처의 정책연구가 제대로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정기·수시로 확인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업데이트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용혜인위원)

○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1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를 이유로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해 해외 치안 공백이 발생함. 경찰 주재관 증원은 반드시 반영해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할 필요 (양부남위원)

【인공지능정부실】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사업이 2020년 시작부터 2024년 예비타당성 완료까지 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문제 (박수민위원)

○ 공공데이터 AI 활용을 위해 행정문서의 한글(HWP) 등 폐쇄적 형식을 기계판독형 포맷으로 전환 필요 (위성곤위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백업 및 이중화 관련 로드맵 마련 필요 (이해식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이 데이터센터로서 입지가 적절한지 검토 필요 (이해식위원)

○ AI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등록을 독려하고 정부가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필요 (고동진위원)

○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위험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 필요 (이해식위원)

○ AI 중심의 공공행정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연계 체계 개선 필요 (위성곤위원)

○ 온나라시스템 해킹 발생 후 국정원의 취약사실 통보를 통해 해당 사실 인지 등 정부의 보안관리체계 및 시스템의 설계·관리상 문제 점검 필요 (박덕흠위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보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이해식위원)

○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쇼핑몰 및 택배가 멈추면서 국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 필요 (박덕흠위원)

○ 행정안전부는 7월 정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정황을 파악하고도 10월에야 공개해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대되었으나 인증 강화나 접속관리 기준 강화 없이 공무원 개인 책임으로만 돌린 점에 대한 지적 및 인증 강화 대책으로 제시한 모바일 공무원증 역시 현재 발급률이 낮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 (양부남위원)

【자치혁신실】

○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같은 행사에서 각 지자체의 입장이 충분히 표명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할 필요 (이성권위원)

○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 (이상식위원)

○ 탄소중립 관련 자체사업의 발굴 및 타 부처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조직 신설 필요성에 관한 질의 (위성곤위원)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노력 및 역할수행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탄소중립 참여기반 마련 및 사회문화 조성 필요성에 관한 질의 (위성곤위원)

○ 행정안전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의 추가 편성을 포함해 농어촌기본소득의 단계적 확산 및 전면 실시를 위해 노력할 필요 (신정훈위원, 용혜인위원)

○ 경기도지사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이상식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설(인프라)중심에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람·프로그램 중심으로 정책 개편의 계기와 과정,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내용 질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박정현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분할 지급방안에도 불구하고 기금 집행률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 필요 (박정현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의 집행률과 실집행률, 진도율 간 차이가 있으므로, 광역지원계정의 실제 사업 집행률을 파악하고 배분액을 선배정하지 않고 투자계획 평가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박정현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의 분류체계 개편의 실익 질의 및 분류 방식 개선방안 마련 필요 (박정현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대 추진 계획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체계 개선 방향 질의 (이광희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집행률이 부진한데 기금 배분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서 평가에 집행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는지, 실집행률이 부진한 원인 질의 (이성권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하거나 인구감소 대응과 연관성이 낮은 단발적 성격의 사업 등 기금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 (이성권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권한을 보장하되, 인구감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 및 사업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이성권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시설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운영·제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 (양부남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인구 정주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 기관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체계의 부실함의 원인이 되므로 전문기관 분리 또는 공동평가 체제로 전환이 필요 (한병도위원)

○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 특례의 주요 내용과 운영 실태 질의 (이광희위원)

- 통합창원시의 구 마산시 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자치구가 아닌 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 질의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이광희위원)

- 제2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 마련, 준비 현황 및 지정계획 질의 (이광희위원)

-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는 시·군·자치구로 되어 있어 도농복합시의 경우와 같이 읍·면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신정훈위원)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 부담 및 지역정보개발원 이사회 참여 권한 부재 관련 질의 (이광희위원)

- 고향사랑기부 디지털서비스 3차 개방 대기업 참여 관련 질의 (이광희위원)

-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예상 모금액, 제도 활성화가 저조한 이유, 세액공제 확대 및 세제개편시 예상 효과 질의 (이광희위원)

- 정부가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박정현위원)

-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 (박정현위원)

○ 울릉도 여객선 노선이 일시 중단될 예정으로 울릉도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중장기 방안 마련 필요 (이광희위원)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공기정화장치를 포함하는 등 시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제공할 필요 (이광희위원)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에 상시탐지형 시스템 관리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필요 (서범수위원)

○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나 오작동 비율이 높아 경찰력과 국고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찰관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회신하도록 법률이 개정될 필요 (양부남위원)

○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전면지급에 대한 견해 질의 (용혜인위원)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주무부처를 담당하고, 법률 개정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증액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와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할 필요 (용혜인위원)

○ 행정안전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사업의 주관부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신정훈위원)

○ 기본사회위원회의 출범 시기 및 역할 질의 (용혜인위원)

○ 혐오표현이나 부정선거 음모론 등 내용의 정당현수막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읍·면·동별 설치개수(2개)를 초과하는 정당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현수막이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단속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수사·처벌할 필요 (정춘생위원)

○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권칠승위원)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 (정춘생위원)

○ 행정안전부는 선거에 관한 주무부처가 아닌 지원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선거구획정 및 정수 산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점검·개선할 필요 (이상식위원)

○ 이·통장의 공정한 선출 및 주민자치회 정치적 중립을 위한 조치 필요 (이광희위원)

○ 대구·경북 통합, 대전·충남 통합 등 권역별 초광역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 (주호영위원)

○ 사문화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사업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법규 개선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포함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는데 노력할 필요 (권칠승위원)

○ 나주시 영산포읍의 환원 문제와 같이 도농통합 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동을 읍으로 전환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신정훈위원)

○ 신설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에 대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모경종위원)

○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등 공무원이 정치적 기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정춘생위원)

○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 지방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해 국가부담비율을 확대할 필요 (이달희위원)

○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고 지방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필요 (이해식위원)

○ 범죄의 예방 및 신분 확인을 위해서 일정 기간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 및 갱신해야 할 필요 (주호영위원)

○ 현장 인력부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패널티제도로 인한 증원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김성회위원)

○ 지방분권 및 지역을 위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할 필요 (이성권위원)

○ 권력형 비위행위에 노출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핵심 직무를 시행령이나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 List)을 도입할 필요 (용혜인위원)

○ 인천광역시 신설 자치구의 공무원 정원 산출과정에서 합리적인 적정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모경종위원)

○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면 단위부터 주민선택 면장 제도를 실시하고 점차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나갈 필요 (이해식위원)

○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해외연수 등의 체재비·항공료 등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 (신정훈위원)

○ 소방공무원의 완전환 국가직 전환을 위하여 보수·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세원 등을 확보할 필요 (고동진위원)

○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배분내역 공개 요구에 관한 질의 (이광희위원)

○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특례시 지정기준 관련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에 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창원특례시가 특례시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도권에만 특례시가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역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여비규정의 현실화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성 관련 질의 (신정훈위원)

○ 지역의 자치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의지 및 필요성에 관한 질의 (신정훈위원)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시 상속·사망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성년후견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질의 (박정현위원)

○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서명·날인 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관한 질의 (박정현위원)

○ 지방자치단체 필수조례 정비율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 및 집행부가 필수조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보고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관한 질의 (이해식위원)

○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관한 질의 (용혜인위원)

○ 시행령 또는 규칙 등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명시할 필요성에 관한 질의 (용혜인위원)

○ 2026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지역사회 의료·요양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전담조직 설치 현황 및 조례제정 현황 등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지원할 것 (정춘생위원)

○ 서울·경기·인천·부산 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필요성에 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소방예산의 국비 전환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필요 (채현일위원)

○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39년간 동결된 사유와 의료업무수당의 현실화 필요성 등에 관한 질의 (이달희위원)

○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동결되고 있는 상황 및 간호직 수당 상향 조정 필요성에 관한 질의 (용혜인위원)

○ 여름철 공공부문 실내온도 28℃ 기준의 타당성을 근로환경, 업무 효율,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 (위성곤위원)

○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치적 중립 조항 삭제·복원 경위를 확인하고, 정치 편향적 활동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필요 (권칠승위원, 신정훈위원, 윤건영위원, 이광희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개발 사업 관련 특정 업체 우대, 발전기금 요구 의혹 등과 기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회계·행정상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법·부당 사항 확인 시 관련 절차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할 필요 (권칠승위원, 신정훈위원, 채현일위원)

○ 2021년 보상법 개정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해직 또는 학사징계 받은 사람이 포함되었으나, 5·18보상심의회에서 8차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 (채현일위원)

○ 장생탄광 사건, 우키시마호 침몰사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노력 필요 (이상식위원)

○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관리 주체인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의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김성회위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기금관리단이 재단법인의 인감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위조도장 3개를 만들어 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철저한 운영실태 점검이 필요 (모경종위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막도장 사용 문제, 이의 축소 은폐 시도, 용산 대통령실의 부당 지시 문제를 조사하고 향후 대응 방안 보고 필요 (김성회위원)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 내년에는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이 예상되지만, 당장 하반기에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 (이광희위원)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사업비의 전액 국가 부담 등 예산 및 인력 지원 확장 계획 관련 질의 (이광희위원)

○ 5·18 민주화운동 8차보상 결과통보 저조 사유, 법정기한 내 심사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문 및 구체적 처리일정 제출 관련 질의 (이광희위원)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개인청구권 소송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대법원 판결 및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재단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동의 여부 질의 (이광희위원)

○ 일본 기업의 공식 사죄나 기부 참여 여부,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 조사 및 봉환 사업 진행 상황 관련 질의 (이광희위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대면회의 계획 관련 질의 (박정현위원)

○ 제3기 진화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청·각 지방경찰청의 보안문서실 등에 대한 조사협조가 필요하여 향후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시 행정안전부가 경찰 등 산하기관의 조사협조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용혜인위원)

○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배정, 추모공간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관련 질의 (용혜인위원)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사업 및 형제복지원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 (용혜인위원)

○ 여순사건위원회 조사관 인력 증원, 편향적 위원 해촉, 중립적·객관적인 2기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위촉 필요 (용혜인위원)

【지방재정경제실】

○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직접시공 평가제를 도입한 뒤 규제가 강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 (서범수위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지방자치권이 훼손되었다는 지적 (이성권위원)

○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자 선택방식으로의 개정전후 주계약자 공동도급 수주현황 및 지방공사에 이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주계약제도를 발주자 지정방식으로 유지할 필요 (박정현위원)

○ 2026년 국고보조사업 중앙재정 지원 일몰 이후 대응책, 2026년 이후 지방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 및 근원적 해결책으로서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 지적 (이광희위원, 이해식위원)

○ 17개 시·도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채 발행 현황 (위성곤위원)

○ 지자체 간 공공요금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생활요금 지도를 마련하고, 부처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며, 원가공시 설명제를 도입할 필요 (한병도위원)

○ 지방세 과오납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김성회위원)

○ 인천공항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국제업무지역)하고 있으므로, 투기방지 목적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리과세 제외)를 배제할 필요 (신정훈위원)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경륜장(본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배분하는 등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 (이광희위원)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시책수요에 지역화폐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반영 비중을 대폭 늘릴 필요 (용혜인위원)

○ 지방세연구원을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 (권칠승위원)

○ 일부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수백억원 대의 보험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금(기본재산) 전반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점검을 검토할 필요 (이광희위원)

○ 국비지원율을 발행되는 지역화폐의 실제할인율에 따라 차등화 할 필요 (용혜인위원)

○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지정해제 절차에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TBS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채현일위원)

○ 더본코리아와 산하 지점 외식산업개발원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체결한 계약 중 일부가 지방계약법, 조달규칙 등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 (이해식위원)

○ 지방정부가 출연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정부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구조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 (신정훈위원)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민간연구자에게 과제를 재위탁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외주남발 및 예산낭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질의(신정훈위원)

○ PBS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수탁과제 중심에서 정책연구 중심으로 구조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신정훈위원)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보다 높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질의 (신정훈위원)

○ 타당성조사 수행 시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질의 (신정훈위원)

○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유사동종기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 평균임금의 산정 주체 및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지방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제도개선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명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 (위성곤위원)

○ 새마을금고가 비회원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는 등 잘못된 경영방식을 관리할 것 (이상식위원)

○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 (이달희위원)

○ 사회적협동조합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지방세 감면혜택에서 배제되어 있고, 생활협동조합과 달리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경우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필요 (용혜인위원)

【국가기록원】

○ 비상계엄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모경종위원)

○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공개 필요 (신정훈위원)

【정부청사관리본부】

○ 21그램의 관저 공사 관련해, 준공검사에 필요한 여러 서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준공 확인을 해줬다는 지적 (용혜인위원)

○ 21그램의 관저 공사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 (용혜인위원)

○ 21그램의 관저 공사와 관련해, 발주청인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의 감사에는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누락되어 부실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지적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자체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용혜인위원)

○ 정부청사 화장실에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청사 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근절하는 방안 마련 필요 (서범수위원)

○ 행정안전부 소관 청원경찰 간 처우 차별, 정원 부족 문제, 대체인력 운영 제도 등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모경종위원)

【대통령기록관】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기록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지정권자 확인 및 지정기록물 관리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 (모경종위원, 이해식위원)

【이북5도위원회】

○ 이북5도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인건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북도민 지원과 이북 관련 조사연구 사업 등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조직·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 (모경종위원)

○ 국외출장 내실화 및 행정자문위원회 수당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한병도위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가융합망 2차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 사전 유출 사건과 대전본원 화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공직기강 해이, 안전불감증,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문제 (채현일위원)

○ 대전본원 배터리 이설 작업 시 업무 매뉴얼이 부재하고 시공 업체의 현장 경험 미흡 및 초급기술 위주 인력 등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 (고동진위원)

○ 배터리 이설 공사 계약업체 선정 시 공사실적, 기술 보유수준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한 문제 (고동진위원)

○ 대전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현황 공개 필요 (박수민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이성권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채현일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최근 5년간 해킹 시도 건수, 우회 해킹 사례, 프랙 보고서의 분석 내용 등 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가 미흡한 문제 (이해식위원)

【안전예방정책실】

○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도 및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권칠승위원)

○ 승강기 1대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자체점검을 하도록 관리 감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 전동스쿠터·킥보드 등 전동 이동수단으로부터의 충격을 고려한 승강기 문 강도 기준 향상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 승강기 침수 등 생활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AI 기술 등을 활용하도록 승강기 안전관리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광희위원)

○ 재난관리 긴급 복구 등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만 수당이 지급된다는 지적 (김성회위원)

【자연재난실】

○ 도시지역에서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를 적극 수행하고,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윤건영위원)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고체계의 명확성을 위한「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개정에 행정안전부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윤건영위원)

○ 재난의 정의를 피해 영향 중심으로 통합하고, 재난 통합 관리 거버넌스에 '완화(Mitigation)' 단계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사회재난실】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위에 대한 질의 (박덕흠위원)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정춘생위원)

○ 서울 한강버스 사고 사례와 같은 유·도선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지침을 재검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해식위원)

○ 일부 지자체에서 소방헬기에 담수량이 적은 밤비바켓을 설치하여 산불 초기대응 능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용혜인위원)

○ 참사 트라우마 특성을 반영한 트라우마센터 활용, 치유휴직 제도 등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정춘생위원)

【재난복구지원국】

○ 온실 내 농작물을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박덕흠위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달희위원)

○ 재난구호성금을 자연재난·사회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정춘생위원)

○ 재난안전 심리회복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기반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ISP수립 용역 예산을 확보할 필요 (양부남위원)

○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기 위해 재난 원인에 따라 구분 운영하고 있는 재난구호성금 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기타】

○ 폭염 안전 대응 우수 사례로 홍보된 기업의 산재 사고 이력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홍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박수민위원)

○ 10·29이태원참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상식위원)

○ 2023년 한강 르네상스 아쿠아슬론 대회의 사망 사고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특별 점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채현일위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례에서 나타난 지하차도 명칭의 혼선과 같이 도로 등의 명칭의 유사·중복성으로 인해 참사 예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서범수위원)

○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도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안전관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김성회위원)

○ 방재안전직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 확충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재난담당 공무원의 정원에 맞는 인력 배치와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상식위원)

○ 재난 상황에서 기간통신망 장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해식위원)

○ 남영호 침몰사고 관련 기본 조사 및 진상규명 로드맵, 유족 실태조사 및 명예회복 지원, 국가 차원의 추모·기록화 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 안동시가 추진하려는 현직 대통령의 생가복원 사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방관하며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아 추진되므로 행안부 장관이 유보를 건의할 필요 (서범수위원)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관련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민간보험사의 입장에 대한 질의 (박덕흠위원)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으로 2인 1조 승강기 점검 원칙의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승강기 안전 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김건희 씨·대통령실과 21그램의 관계에 대한 질의

-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에게서 수수한 샤넬백 보관 및 교환 경위 (윤건영위원, 채현일위원)

- 대통령 여름 휴양지인 저도 별장 방문 여부 (윤건영위원)

-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사업가 강 모씨에게 추천하였는지 여부 (윤건영위원)

- 2024년 국정감사 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2025년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상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 (채현일위원)

○ 21그램의 대통령 관저 공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질의

- 관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부터 시정 요구나 점검사실 등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윤건영위원)

-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 및 김건희 씨와의 관계 (윤건영위원, 채현일위원)

- 공사 계약 체결 이전 공사를 시작한 것에 비서실이 개입하였는지 여부 (윤건영위원, 모경종위원, 용혜인위원)

- 김건희 씨의 관저 답사 시 증인이 동행하고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될 때 조언했는지 여부 (채현일위원)

- 공사계약 체결일 전 공사를 시작한 것이 국가계약법에 위반되며,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총괄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채현일위원, 용혜인위원)

○ 현대건설의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건설 의혹에 대한 질의

-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공사가 이루어진 경위 (윤건영위원, 이해식위원, 박덕흠위원)

- 관저 내 골프 연습 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저 공사 실무 책임자로서 확인을 하지 않고, 감사원 조사에서 이에 대해 증언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윤건영위원)

- 현대건설이 수행한 대통령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공사는 통상적인 발주 방식과 달리 MS건설이라는 전문건설사에 발주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고, 현대건설이 1억 5천만원 공사비를 3년째 지급하지 않고 공사비를 대납한 것은 영빈관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으로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 (윤건영위원)

- 현대건설의 주장과 달리 2022년 9월 이후에도 현대건설에서 작성한 조감도를 바탕으로 대통령경호처와 영빈관 공사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지적 (윤건영위원)

- 내란국조특위 청문회 당시 관저 내 스크린골프 시설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변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지적 (윤건영위원)

- 관저 스크린골프장 시공과 관련하여 신00 증인이 위증을 하였다는 지적 (이해식위원)

○ 관저 후원의 작은 수영장의 준공 시기 및 용도, 히노키탕, 다다미방 등이 추가로 설치된 사실 여부에 대한 질의 (이해식위원)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점검 및 신뢰 회복 방안 마련 필요 (이성권위원)

○ 반복적으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사례의 다수가 위촉된 투·개표 사무원의 과실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위촉 사무원에 대한 교육·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관련 문제가 재발하고 있다는 점 지적 (이성권위원)

○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당원 가입, 당비 대납 및 매표 행위 의혹, 당내 경선 개입 정황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 필요 (박수민위원)

○ 검찰 수사 기능 축소 및 이관 과정에서 선거범죄 대응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선거범죄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박수민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규모 국민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망 보안 점검을 주로 자체 검증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 해킹 및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제도적 보완 필요 (이달희위원)

○ 사전투표 기간 중 전산망 연결, 망 분리 미완성, 서버·배터리 물리적 분리 미흡 및 재해 발생 시 전산 전환 대응 능력 등에 있어 선거 전산 시스템의 안전성과 복원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이달희위원)

○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업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어, 선거구 획정 기준의 일관성과 법체계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점 지적 (이상식위원)

○ 지방의원 의원정수 산정 시 인구 외 행정구역·지세 등 불확정 개념에 따른 조정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과 합리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 (이상식위원)

○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가 도입 이후 외국인 유권자 급증과 특정 국적 편중 현상으로 인해 국민주권과 지역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바, 실제 거주 요건 및 상호주의 원칙 등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재검토 필요 (박덕흠위원, 서범수위원, 고동진위원)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도 고발 등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 확산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점 지적 (권칠승위원, 신정훈위원)

○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당 당원 가입,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정당의 자발성 원칙과 정교분리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대응이 충분한지 여부 (이해식위원)

○ 정당법상 당원 관련 사항 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쪼개기 후원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파악·차단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체계 미흡 지적 (이해식위원)

○ 부정선거 의혹 및 허위정보 확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선거 신뢰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 축소 논의가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주호영위원)

○ 부정선거 주장과 혐오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신고·처리 현황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지적 (채현일위원, 모경종위원, 이해식위원, 정춘생위원, 위성곤위원, 신정훈위원)

○ 실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유령 정당'이 정당등록을 유지한 채 정당법상 보고 의무와 조직 요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과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지적 (채현일위원, 이해식위원, 정춘생위원)

○ 종교시설을 정당 시·도당 사무소로 등록·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교분리 원칙 및 국민 정서에 반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당법상 이를 규율·제재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 존재 지적 (한병도위원)

○ 반복적인 불법행위와 반헌법적 활동 논란이 제기되는 정당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만 충족할 경우 선관위가 등록·유지에 관여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민주헌정질서 보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한병도위원)

○ 공직선거법상 현직 유지 출마 허용 범위가 광역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직위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와 의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복수인 지역에서 정당사무소 설치 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등 현행 법령 해석과 제도운영의 합리성 개선 필요 (신정훈위원)

○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적 자원의 선거 활용 의혹에 대해 중앙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모경종위원)

○ 채용 비위 근절과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혁신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에도, 최근 발생한 채용 청탁 및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징계가 이루어져 내부 쇄신 의지와 징계의 엄정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 (김성회위원)

○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전 90일간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와 저비용·고효율 선거운동 수단 활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와 딥페이크 탐지 도구의 지속적·안정적 활용 방안 마련 필요 (양부남위원)

○ 정당·선거 관련 중대한 위법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1차적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주의 경쟁을 순화하는 심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박수민위원)

○ 자체 감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유사 감사 지적사항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으며 감사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어, 자체 감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 (박수민위원)

○ 선거 직전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변경 및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한 관리 공백 가능성이 제기되는바, 선거 핵심 인프라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 선정·계약 방식 개선 필요 (박덕흠위원)

○ 정당사무소와 선거사무소의 기능·역할 구분이 불명확하여 선거운동 과정에서 혼란과 불필요한 의혹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바, 관련 기준의 명확화 필요 (박덕흠위원)

○ 복수직급제 운영에 있어 특정 직급으로의 편중 임용, 과도한 고위직 외부 파견 등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바, 선관위 인사·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 (권칠승위원)

○ 재외선거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재택근무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외국어 능력 검증 등 기본 요건을 완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권칠승위원)

○ 12·3 계엄 당시 선관위 전산·서버 시설에 대한 물리적 통제 및 방호가 미흡했던 정황이 있는바, 국가중요시설 지정 추진과 함께 보안·방호 체계 강화 및 데이터 이중화·재해복구 체계(서버·배터리 분리 등) 전반의 실효성 제고 필요 (채현일위원)

○ 리박스쿨 등 민간단체를 통한 청소년 대상 부정선거 프레임 확산 사례가 확인되고, 공교육 차원의 선거·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 해석을 이유로 제한되어 있는바, 선거연수원 활용 확대 등 공신력 있는 민주시민·선거교육 체계 구축 필요 (채현일위원, 이광희위원)

○ 교육·종교 등 조직을 활용한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 유도 및 경선·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정당가입 강요 금지 및 조직 이용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바, 사실관계 확인 및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조사 필요 (고동진위원)

○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비율이 상당 수준에 이르고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바, 유권자 선택권 확대와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위해 선거구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정춘생위원)

○ 선거보도 심의가 방송·신문·인터넷 매체별로 분산 운영되어 동일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바, 선거보도 심의의 일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심의체계 구축 필요 (위성곤위원)

○ 사전투표 비중이 본투표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본투표와 상이한 절차·관리 기준으로 인해 선거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바, 사전투표 제도의 헌법상 선거원칙 부합성 및 관리 기준의 정합성에 대한 전면적 점검 필요 (주호영위원)

○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중앙·시도·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간 해석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는바, 선거운동 기간 중 신속하고 일관된 법 해석 제공을 위한 개선 필요 (서범수위원, 이상식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으나, 기존 선거자문위원회·보안자문위원회·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등 유사 기능의 자문기구가 이미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구 설치가 실질적 쇄신보다는 책임 분산 또는 형식적 대응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 (채현일위원)

○ 헌법재판소가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기준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가운데, 인구 하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군 지역 선거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의 구조적 한계 지적 (박덕흠위원)

○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자금 배분 결과, 거대 양당에 정치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소수정당의 정책개발·인재양성·기본적 정당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확인 (정춘생위원)

○ 경기도 국감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통화 녹취 내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무원 재직 당시 선거자금 모금 관련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 제기 (서범수위원)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위원회 상임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상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 년간 내부 출신 인사로만 임명되어 온 실태와 그에 따른 조직의 폐쇄성 및 국민 신뢰 저해 우려 제기 (고동진위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자게시대가 확산되는 추세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또는 전용게시대·전자게시대 설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신정훈위원)

○ 선거비용 미반환 사례와 관련하여, 미반환 금액에 대한 수납률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고 수납률 제고를 위한 관리 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한병도위원)

○ 공정선거참관단 운영과 관련하여, 전국 단위 확대 운영의 필요성, 인적 구성의 다양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화 및 법 개정 필요성, 그리고 투표용지 선정·인쇄 절차 확인 등 참관단의 활동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이달희위원)

○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환경을 고려한 재외선거 관리 특별대책 수립 필요성, 예산 절감 및 선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외선거관 파견기간 단축, 재외선거 홍보방식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재외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 지적 (이성권위원)

○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와 관련하여 '정당한 비판'과 '비방'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후 예정된 지방선거·총선을 대비하여 명확한 판단 기준과 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 제기 (이상식위원)

○ 동일한 선거보도임에도 매체 유형(방송·신문·인터넷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심의기구가 관할함으로써 상이한 심의 결과가 도출되는 현행 선거보도 심의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의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 (이상식위원)

○ 계엄 및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으로 인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선관위가 그간 어떠한 조치를 시행해 왔는지 점검하고 기존 심리상담 지원 체계의 실효성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 지적 (이해식위원)

○ 선거보전금 미반환 사례가 누적되면서 현행 환수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반환자에 대한 제재 수단의 한계, 당선무효 확정시 선거보전금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 35억 원 규모의 징수 불능 손실이 발생한 구조적 문제 등 선거보전금 환수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 제기 (주호영위원)

○ 재외선거 참여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선거 관련 정보의 전달방식과 제공 시점의 적정성, 재일동포 간담회 이후 선관위 차원에서 검토·마련 중인 재외선거 개선책의 내용, 그리고 재외선거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요 민원현황 및 그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 제기 (용혜인위원)

○ 최근 선거에서 투표참관인 등으로 인한 개표소 질서유지 방해, 선거사무 관리관계자 또는 선거시설에 대한 폭행·교란 행위로 고발된 사건의 발생 건수와 주요 유형,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실제로 처벌에 이른 사례 및 처벌 인원 규모 등 투·개표소 질서 방해행위에 대한 현황과 사후 조치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 제기 (용혜인위원)

3.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1국장이 마스크를 쓰고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신정훈위원)

○ 3·15의거 진상보고서를 상세본과 축약본으로 나누어 작성한 것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 (양부남위원)

○ 진실화해위원장의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의 내용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 (양부남위원)

○ 진실화해위원장 개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조정신청 및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 명의의 조정신청 및 소송이 아니므로 정책보좌관이 대동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 (김성회위원)

○ 일제강점기 소록도에서 있었던 이춘상 의사 관련 사건이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 중지되었으므로,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 (윤건영위원)

○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과거사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받고도 배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진실규명을 넘어 가해자와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고동진위원)

○ 여수순천 10·19사건은 반란 사건과 반란 진압 과정에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 (박수민위원)

○ 제주 4·3 사건에 대한 평가 및 위원회의 인정 여부 관련 질의 (이광희위원)

○ 진실화해위원장의 인권상 후보 선정 관련 후보 명단 포함 사실 인지 시점, 작성 관여 여부 관련 질의 (이광희위원)

○ 종합보고서 작성 완료 시점, 정치적 편향성 및 독단적 운영 논란에 대한 입장, 군경사건의 조사중지율이 적대세력 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이유 관련 질의 (이광희위원)

4.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국】

○ 검찰·경찰로부터 제출 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양부남위원)

○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윤건영위원)

○ 사고 발생 원인과 참사 당시 구조·구급을 비롯한 기관 대응의 적정성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광희위원)

【안전사회국】

○ 다중운집 안전관리 매뉴얼 등 관리 대책, 예방, 피해자 지원방안, 추모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광희위원)

5.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G드라이브 소실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현장 상황 장악력이 미흡했다는 지적 (윤건영위원)

【인재채용국】

○ 교정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무직 의무채용을 제도화하고 의료기관 근무 약사 인력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인력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 (이성권위원)

【인사혁신국】

○ 이재명 정부의 측근·보은인사에 대한 질의 (이달희위원)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해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의 폐지 의견이 있는 등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개선 권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 시간선택제노조가 실시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박정현위원)

○ 공직사회 내 민주성 제고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상식위원)

○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에 미비점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정춘생위원)

○ 부처 간 파견, 특히 대통령실로의 공무원 파견 협의 시 인사혁신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주호영위원)

○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확대가 헌법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개정된 명예퇴직수당규정은 감사나 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무죄가 확정되어도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한병도위원)

○ 고위공직자의 복무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이성권위원)

【인사관리국】

○ 원고가 승소한 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와 동일한 조건의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 (김성회위원)

○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월 100만 원 미만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모경종위원)

○ 젊은 세대들이 공직 사회에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모경종위원)

○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및 일시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신정훈위원)

○ 공무원 헌법교육과 관련하여 6~9급 대상 교육이 부족하므로, 전 공무원이 시스템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 약무행정의 업무 강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38년간 동결된 약무직 특수업무수당의 인상 근거를 마련하고,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및 인력 수급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성권위원)

○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원 수 증원과 관련, 공무원연금 재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종합감사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 (주호영위원)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업무부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한병도위원)

【윤리복무국】

○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하 보좌관의 재산 내역이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 (고동진위원)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시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는 판단 기준을 직접적·객관적 기준으로 정비하고, 심사 결과의 상세 근거와 사유를 공개하며 주식보관신탁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고동진위원)

○ 인재 발굴 측면에서 민간 전문가 영입을 저해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국회와 행정부 간 인용률 차이가 크다는 지적 (고동진위원)

○ 2023년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계획 및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 (신정훈위원)

○ 비상장주식, 가상자산(가상화폐)의 백지신탁 대상 미포함 등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신정훈위원)

○ 직무관련성 심사 자료 공개가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것은 재산 공개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는 지적 (용혜인위원)

○ 주식백지신탁 처분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녀 증여 및 분할 매각 등을 통해 제도를 무력화하는 사례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신정훈위원)

○ 공직 내 소위 '간부 모시는 날' 등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실태 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징계와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 법적 근거도 없이 이미 공개된 재산내역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직사회 윤리시스템을 흔드는 것으로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채현일위원)

○ 계엄 기간 동안 부당하게 지시를 받고 고통받고 있는 공무원을 선처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채현일위원)

【재해보상정책관】

○ 재해보상 심사 업무 증가로 심사기간 지연과 승인율 하락으로 공무원들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 (모경종위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순직 처리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신정훈위원)

○ 소방·경찰공무원의 정신질환(PTSD) 공상 불승인율이 높고,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신속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모경종위원)

○ 장해연금 수급자 중 중과실 감액 대상자에 대해 실제 본인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광희위원)

○ 일선현장 행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공무원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입증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심사인력 확충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광희위원)

○ 생계유지를 위해 소득 활동을 하는 장해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2까지 정지하는 제도의 타당성 및 정지 기준 금액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광희위원)

○ 재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정신적 재해와 비극적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고위험 공무원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정규직제화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양부남위원)

○ 행안부 국정자원 수습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서기관님의 순직 심사와 관련해, 심사자료가 누락 없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 질의 (이달희위원)

○ 공무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공상처리 및 재심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인용율 또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서범수위원)

6. 경찰청

○ 국제범죄조직이 운영한 돼지도살스캠에 속아 9억 3,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종로경찰서에 고발하고, 국가수사본부 다중피해사기 TF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사에 진전이 없고, 현재 사건은 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단순 대포통장 명의자 조사에만 머물러 있고 국제공조나 자금추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찰청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할 필요 (신정훈위원)

○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다중피해사기에 대해서 일선 경찰서가 아닌 국수본 등 상위기관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휘할 필요 (신정훈위원)

○ 피해액 4조원대의 사기사건(사건명 콕 코인 사건)에서 모집책 1,000여명이 처벌받지 않았고, 1조원대 사기사건(사건명 ICC-FVP)에서 100여명의 모집책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모집책은 향후 유사사건에 모집책으로 다시 활동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으므로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을 한번 더 들여다 보시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할 필요 (이성권위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고소를 접수한 이후 10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수사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사례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전세사기 수사의 신속한 진행 및 전세사기 피해 통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달희위원)

○ 입금 유도형 사기를 당해 12회에 걸쳐 2,825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구달서경찰서에 신고했으나 수사에 진전이 없고, 신고자가 모르는 사이에 대구성서경찰서로 이첩된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수사하고, 신고자에게 수사과정을 설명해 줄 필요 (이성권위원)

○ 검찰청 폐지 후에 마약수사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범죄에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 (이성권위원)

○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3.5배 피해자 수는 13배 증가했으며, 지역별로 납치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곳과 수치가 일치하는데, 이는 대부업법 위반 사건이 아닌 해외범죄 조직까지 끌어들인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중대범죄로서, 수사 공백이 생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외 캄보디아 감금·납치 범죄와 불법 대부업과의 연계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광희위원)

○ 경찰청 112 시스템상 불법 사채 관련 신고 유형은 별도로 분류·관리하지 않고 있지 않은데, 불법 사채 범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 패턴을 파악할 필요 (이광희위원)

○ 교제폭력 모니터링 대상자가 8,783명, 스토킹 모니터링 대상자가 11,576명으로 합쳐서 2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293명의 스토킹 담당 경찰관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1명이 평균 71건의 조치를 하고 있어 해결이 어려우므로 인력의 보강이 절실함에도 스토킹 담당 경찰관 현원은 증가했으나 증원이 되지 않음 (박정현위원)

○ 스토킹범죄, 교제폭력, 가정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젠더폭력의 경우 재범위험성과 위해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재범위험성과 위해가능성을 구속사유에 추가할 필요 (정춘생위원)

○ 교제폭력으로 10회 이상 신고한 354건으로, 10회 이상 신고할 때까지 분리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경찰에 대한 교육 및 중앙경찰학교에서 관계성 범죄 초동조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정춘생위원)

○ 2025년 1월~8월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건수 860건인 반면, 유치장 유치 신청 건수는 493건으로 57.3%에 불과하고, 주거 등을 공유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임시조치의 실질적인 이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 위반 시 유치장 유치 신청을 의무화하고, 경찰이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스토킹처벌법 등의 입법례와 같이 가정폭력처벌법 임시조치에도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할 필요 (용혜인위원)

○ 친밀관계폭력 관련 매뉴얼과 지침, 대책이 수립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지역경찰 역량을 강화하고, 친밀관계폭력 신고 시 친밀관계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배포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 (용혜인위원)

○ 1~8월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중에는 기소된 인원(28.1%)보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인원(36.8%)이 더 많고, 1~6월 처리된 가정보호 사건 중 접근제한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가능한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0.29%에 불과하므로, 위험성이 높은 가정폭력 사건 등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용혜인위원)

○ 방검형 패드,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사업의 혼란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교훈삼아 경찰장비 개발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 (용혜인위원)

○ 경찰청은 2024년부터 살인에 선행한 관계성 범죄 등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으나 해당 통계에는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살해된 경우도 포함되어 여성폭력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성별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계 시스템을 보완하여 정확한 범죄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며, 관계성 범죄 등의 주된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별해 젠더 기반 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 (이해식위원)

○ 경찰은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치표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5년 5월 동탄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서는 피해자가 1년에 걸친 피해사실 녹취를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납치·살해되었는데, 관계성 폭력 사건에 대해 위험성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 (이광희위원)

○ 부평 가정폭력 살인사건, 동탄 교제살인사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미흡하게 이뤄졌으므로 향후 개선계획을 마련할 필요 (용혜인위원)

○ 동탄 교제살인사건의 유가족이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동탄 교제살인사건에 부실 대응한 경찰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할 필요 (용혜인위원)

○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부평 가정폭력 살인사건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를 검토할 필요 (용혜인위원)

○ 2018년 10월 28일 광주 데이트 교제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문제 및 강압, 부실, 의도성 수사에 해당함에도 수사과오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람 (이광희위원)

○ 천안서북경찰서가 고 주리빈양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것은 수사경찰과 지역토호와의 유착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수사감찰을 실시할 필요 (박정현위원)

○ 스토킹담당경찰관의 겸업을 통한 인력증원은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을 통한 증원 필요 (박정현위원)

○ 전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대 출신, 여청수사팀 등 경찰이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해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것과 이에 대한 광고가 방치되는 것을 지적했고, 1년 2개월이 경과했으나 바뀐 것이 없으므로 광고 단속 및 전관예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정춘생위원)

○ 미성년자 유괴범죄가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1,244건 발생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입건, 수사 개시 이후 아이를 구출한 건수, 미제사건에 대한 통계자료, 유괴 피해자 보호·지원, 유괴범죄와 연계된 범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고, 아동 유괴 및 관련 범죄의 통계 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고동진위원, 이광희위원)

○ 급증하는 아동에 대한 유괴범죄에 대응해서 경보문자 발송 등 보호조치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광희위원, 이달희위원)

○ 아동 유괴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아동 유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획 탐문 내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학교 인근과 통학로 주변에 경찰을 배치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우범지대에 순찰차를 배치할 필요가 있음 (고동진위원)

○ 마약, 학교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범죄 예방과 선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성범죄와 도박범죄 등 신종범죄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박덕흠위원, 이성권위원)

○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0.7개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아동안전지킴이와 협력을 강화하며,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전문직위를 부여하여 장기근속 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이광희위원)

○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에 드러난 경찰의 부실한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성권위원)

○ 8월 초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감금된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서와 112에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돌아온 대답은 '팩스를 보냈으니 기다려' 였는데, 국민이 해외 범죄 조직에 납치된 상황에서 팩스를 보냈다고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님 (채현일위원)

○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탈출한 피해자가 감금, 특수협박, 대출사기 및 캄보디아에 다녀오라고 강요한 가해자를 노원경찰서에 신고했으나 노원경찰서는 변호사를 데리고 오도록 했고, 피해자가 부산 소재 경찰서에 인지수사를

요청했으나 2개월이 경과한 뒤 다른 큰 사건이 있어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으며, 부산지방검찰청에 직고소를 하자 연제경찰서에 배당이 되었으나 충남경찰청으로 이송되었고, 충남경찰청은 캄보디아 건은 받아들이지만, 사기, 감금, 협박 등 고소 취하를 종용했으며, 재고소를 할 때에는 사건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했고, 이후 범인의 주거지인 창원서부경찰서에 신고하니 고소장을 반송하여 노원경찰서에 고소하라고 했고, 현재 이 사건은 부산 금정경찰서에 가 있음 (김성회 위원)

○ 캄보디아 내의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건수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 2025년 330건으로 급증하는 등 국제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폐지된 외사국을 복원하고, 경찰청 내 재외국민안전 전담기구인 재외국민보호계의 설치가 필요하며, 전문성 있는 외사 점담 수사인력 및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복구할 필요 (신정훈위원, 위성곤위원, 정춘생위원, 한병도위원)

○ 외교부 등 정부 부처 간 상시적인 해외 공조 네트워크의 구축이 시급함 (신정훈위원, 한병도위원)

○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인근 국가로 확장되면서 국가가 아닌 동남아 전역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경찰의 국제협력 대응을 국가가 아닌 권역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공조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필요 (이광희위원)

○ 외사국을 국제협력관으로 개편 및 시·도경찰청 외사과 폐지로 국제범죄 수사 전문인력 경험의 단절 및 해외 국민 보호 공조 체계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위성곤위원, 이상식위원)

○ 캄보디아에 신속한 코리안데스크의 설치 및 협력관 증원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공동수사체계를 마련하고, 캄보디아 교민을 범죄조직의 보복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코리안데스크 설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기 대책도 함께 고민할 필요 (신정훈위원, 용혜인위원, 한병도위원)

○ 프린스 그룹이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열었고 캄보디아에서 얻은 범죄수익의 유통경로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취업사기, 감금 범죄집단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용혜인위원)

○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음 (서범수위원, 한병도위원)

○ 캄보디아 스캠범죄의 실질적인 배후조직인 프린스 홀딩스가 2022년 7월 12일 낸 보도자료에서는 한국 노동력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도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회장 이용만은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을 운영한 사람으로 프린스 홀딩스와 연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이해식위원)

○ 프린스 그룹이 현지에서의 범죄 활동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선화동, 강남 일대 사무소를 운영하며 ‘킹스맨’으로 명칭을 변경해 활동했다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바, 프린스그룹 및 계열사의 국내 활동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부동산 구입 내역, 자금 출처, 해외 송금 내역, 암호화폐 거래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엄정한 수사 촉구 (서범수위원)

○ 캄보디아 사태 이후에도 모집책들이 온라인에 게시한 구인·구직 공고, SNS 등 게시물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 같은 게시물과 광고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할 필요 (채현일위원)

○ SNS와 구직사이트 상의 의심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서 경찰이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용혜인위원)

○ 해외범죄조직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서 채널이 되는 불법도박 및 중개 사이트를 막을 필요 (모경종위원)

○ 캄보디아에 파견하는 5명의 인력을 선발할 때 영어 성적이 안 되거나 없으면 애초에 캄보디아 파견 인력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어학 성적이 부족하거나 없더라도 현지에서 한국인을 살리고,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베테랑 수사 인력 등이 파견 인력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 채널을 열어줄 필요 (모경종위원)

○ 캄보디아와 외사 협력이 2024년부터 부진해지기 시작했고, 송환율이 매우 높았다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범죄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와 협조를 잘 진행할 필요 (김성회위원, 이상식위원)

○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의 원조 1위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캄보디아와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 (권칠승위원)

○ 최근 5년간 경찰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5억~6억원 규모의 1건으로 베트남 등과 비교해서 적으므로, 우리나라 경찰과 캄보디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대한 ODA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윤건영위원)

○ 캄보디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 주재관을 통해 연락하면 5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핫라인을 개통할 필요 (윤건영위원)

○ 외무부의 재외교민 보호 활동은 사고 발생 이후 사후조치에 국한되어 왔으나 패러다임을 바꾸어 우리 교민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경찰을 해외에 파견해서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할 필요 (이상식위원)

○ 해킹, 불법 피싱 등 확장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 (이광희위원)

○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난 현재 유가족들은 경찰의 수사사항을 알 수 없어 답답해 하고 있으므로, 경찰 수사의 진행상황과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소통을 할 필요 (용혜인위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수사는 처음에는 200명이 넘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9명이 수사를 하고 있고, 참사 발생 이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송치된 사람이 없는 상황이며, 수사의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원본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유가족들의 염려가 크므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유가족을 직접 만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별개로 경찰이 독립적이고 책임있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 주시기 부탁드리며 블랙박스 원본 등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용혜인위원)

○ 경찰이 사건 처리 소요기간을 발표할 때 검찰에 송치한 이후 기간 및 경찰 재수사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사에 필요한

경찰의 인력에 대한 진단이 어려운 문제 등이 있으므로 통계 집계 방식을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기간 및 경찰 재수사 기간을 포함할 필요 (양부남위원)

○ 경찰의 무리한 법리 적용 및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이후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영장 신청을 기각하거나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된 경우에 대한 통계를 집계할 필요 (양부남위원)

○ 고소·고발 사건 수는 2024년도에 2023년과 비교하여 50% 이상 증가했고, 연간 약 70여만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고소 고발 사건의 송치·불송치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2025년 검찰 송치 건수가 10% 증가한 반면 불송치와 각하 건수가 86%, 155% 증가하였고, 사건 처리 기간은 80일에서 60일로 줄어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종결되는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 (박덕흠위원)

○ 전국의 범인 검거율은 2020년 81.2%에서 2024년 77.2%로 하락했고, 서울경찰청의 2024년 검거율은 71.5%, 세종경찰청의 2024년 검거율은 69.6%, 경기남부경찰청의 2024년 검거율은 74.8%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검거율 하락의 원인을 인력, 예산, 수사시스템 등 다방면에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검거율이 하락한 서울경찰청, 세종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치안역량 강화대책을 마련하며, 실질적 검거율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 (이성권위원)

○ 2023년 6월 한강 르네상스 아쿠아슬론(오픈워터 수영, 마라톤 결합) 대회의 수영 훈련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가 지연된 원인 등에 대해 진상을 확인할 필요 (채현일위원)

○ 현대자동차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구사대를 동원해서 노조원과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은 묵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일반시민이 부상당함 (박정현위원)

○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SNS 채널 오픈채팅방에 집회 참석자를 돈을 주고 모집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사가 필요 (이광희위원)

○ APEC 기간 중 혐중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필요 (채현일위원)

○ 청와대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경호가 한 치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한병도위원)

○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서와 공문을 통해 협의한 뒤 약 400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들이 표준규격으로 채택되지 않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는 경찰서와 경찰청의 소통부재와 정책 혼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표준규격, 표준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 (모경종위원)

○ 올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가 연말에 몰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생일 전후 6개월에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주시기 바람 (모경종위원)

○ 경찰이 2025년 5월부터 시범운영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효과성이 입증되는 경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지원 및 지원 근거의 법제화 필요 (고동진위원, 주호영위원)

○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갱신주기를 1~2년으로 단축하고, 시력·청력·반응 속도 등의 적성검사와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제대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고동진위원, 주호영위원)

○ 고령 치매 환자인 운전자에 대해 의사, 가족 등이 신청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주호영위원)

○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반납 시 교통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0만원을 지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 (고동진위원, 주호영위원)

○ 음주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주변인이 함께 음주운전을 막아야 하는 책임감 있는 문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적고, 음주를 함께 한 동료·주변인은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막을 이유도 없고 책임도 없는 현실인데, 음주를 함께 한 지인과 주변인이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므로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해 제재를 할 필요 (고동진위원)

○ 중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도로환경과 운전문화의 차이로 인한 혼란과 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중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균형성·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재고할 필요 (신정훈위원)

○ 중국 관광객의 운전 허용을 검토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이후 자국으로 돌아가면 수사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박덕흠위원)

○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보인력 강화에 대해서는 동의되지만 범죄와 관련된 정보에 한하여 강화되어야 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필요 (이광희위원)

○ 교통과 관계성 범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강화에 신경 쓸 필요 (이광희위원)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신설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우회전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원인의 하나로 복잡한 규정이 지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의 간소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이성권위원)

○ 스쿨존 탄력운영제에 대한 시범운영 실시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상식위원)

○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에 대한 교통규칙을 준용하므로 오토바이와 차이가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련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도입, 교육제도 신설, 운전자격 확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고동진위원)

○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에게 면허 인증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행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를 입건하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일 수 있고, 2020년 12월 법안소위에서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준비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여 우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적용하고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가 만들어지면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무리한 입건을 지양할 필요 (서범수위원)

○ 이종욱 의원이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상황실장인 A로부터 약 4,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상남도경찰청에 수사의뢰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함 (신정훈위원)

○ 산청 산사태 인명피해 관련 군수와 부군수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필요 (한병도위원)

○ 전공의들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입원 환자 428명을 대상으로 치료와 무관한 비타민제를 2억 4,000만원치 처방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에 대해 병원의 교수가 확인하고, 노원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전공의 4명의 자필 반성문 등 증거를 첨부했음에도 노원경찰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고, 서울경찰청은 문제가 없다고 넘어 갔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자 비급여 비타민은 포함되지 않은 채로 송치하여 결국 전공의들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었는데, 만일 리베이트 부분을

포함시켰으면 전공의는 자격정지 6개월, 병원은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수사 중에 병원이 교수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메일을 보내고 통화를 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원경찰서와 병원 간의 커넥션을 밝힐 필요 (김성회위원)

○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및 공소장 등에 따르면, 춘천경찰서에서 통일교 총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를 진행했으나 중단되었고, 기밀이 누출되었는데 이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동 사안의 첩보제공자와 내사진행자 명단을 특검에 알릴 필요 (양부남위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수사에 대해 흠결이 없다고 지난 7월에 보고했지만, 검찰은 최근 재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이 이에 착수함 (박정현위원)

○ 민중기 특검은 투자한 주식을 상장 폐지 전에 모두 매각해서 투자금의 30배 이상의 차액을 얻었는데 동 회사의 대표가 민중기 특검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였고, 일반투자자 7,000여명이 약 4,0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국민적 의구심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박덕흠위원)

○ 영등포경찰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8월 12일, 20일, 25일 3차에 걸쳐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 9일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에게 9월 27일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9월 9일(4차), 12일(5차), 19일(6차)에 4차~6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 27일 국회 무제한토론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하자 10월 1일에 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석 연휴가 시작된 10월 2일에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국민이 대응하기 어려우며 이에 국가수사본부 홍승우 총경 등 관련자들의 직무 태만 및 편파 처리, 허위 보고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 (박수민위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차, 2차, 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첫 번째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4차, 5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두 번째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9월 27일 불출석 하자 세 번째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듯이 체포영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서범수위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 27일 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27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9월 19일에 두 번째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서범수위원)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19조 출석요구에서는 출석요구를 할 때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 (이달희위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 결정문에서 법원은 소환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는 출석요구를 기피했으며, 체포의 적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여섯 차례의 출석요구 중 마지막 출석요구에 대해서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출석요구 이틀 또는 사흘 뒤에 출석하라고 한 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고, 두 달 동안 진행한 것은 속전속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9월 27일 출석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통보였으며,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은 수평 이동을 한 것으로 영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수사와 관련하여 영등포경찰서가 국가수사본부와 경찰청과 논의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요 사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장관급이기 때문에 통보한 것이고, 체포적부심 결과와 별개로 담당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피의자를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음 (한병도위원)

○ 통상적으로 여섯 번 출석을 요구한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가 당연함 (박정현위원)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임 (채현일위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할 때 수갑을 채웠는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수갑 착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이달희위원)

○ 3월 20일 발령받은 영등포 수사2과장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지 않고 10월 10일 중부서 형사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하는 단기인사에 해당함 (서범수위원)

○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달희위원)

○ 양평 공무원의 자필 메모에서는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규칙을 위반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경찰 수사에서의 잘못으로 30년 이상 옥살이를 한 뒤 무죄로 판결이 나온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인권의식을 제고할 필요 (이성권위원)

○ 양평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수사를 양평경찰서가 하게 되면 국민적 불신이 초래되므로 다른 부서가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이성권위원)

○ 양평 공무원의 경우 경찰에서 1년 5개월간 수사를 받고, 혐의없음 판단이 나왔는데 특검의 회유와 강압을 받은 사실이 메모에서 드러난바, 독직폭행 또는 수사 강요에 해당하므로 특검팀을 수사해야 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팀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권 조정을 재고할 필요 (서범수위원)

○ 양평공무원의 메모 내용에 따르면 양평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그 동안의 정치검찰이 기획수사, 표적수사를 해 온 것과 유사해 보이는데, 국민들이 신뢰하는 경찰조직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문화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경찰의 승진임용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강압수사 이력 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동진위원)

○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로 이관되는데 그 준비에 대한 보고가 너무 없음 (주호영위원)

○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이성권위원)

○ 국가정보원은 간첩 사건을 밝히기 위해 10년 동안 내사와 관찰을 진행했는데 이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대공수사 분야로 오랜 기간 근무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2024년 이후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고 있는데 근속연수가 짧은 측면이 있으므로 대공수사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승진제도를 만들어 대공수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 (박덕흠위원)

○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이 2023년 2만 9,000건에서 2024년 4만 7,000건으로 증가했고, 지난 5년간 경찰관은 1,40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의 30%는 내부 징계도 없었으며, 성범죄 관련자가 300명을 초과했는데, 내부적으로 감독, 견제가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외부적인 통제가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주호영위원)

○ 시도청 단위에 33명의 수사심의관이 있으나 중요 사건 등 일부만 담당하면서 민생범죄에 대한 내부통제가 어려운데, 내부통제 강화 및 법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사심사관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고, 수사경과자 및 전문·책임수사관으로 지정되면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수사자격 유지제도 등 역량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위성곤위원)

○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사관 기피 신청이 연평균 약 5,000건이고, 기피 신청 수용률은 55%을 기록했는데, 기피 신청의 사유가 공정성 의심, 수사 미진 등이라는 점이고, 최근 기피 신청 수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광희위원)

○ 국내 외국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매년 인명피해는 3천명 이상, 재산피해는 8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국의 국제범죄 수사인력은 149명이고, 수사인력 1명이 235건의 외국인 범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범죄 관련 통계 세분화, 전문수사팀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 (이광희위원, 이달희위원)

○ 2021년 이후 경찰은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등 토착비리와 관련하여 따로 수사나 감찰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박정현위원)

○ 평검사의 경우 지청 바깥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가 92% 이상인 것과 비교하여,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위·경감은 경찰서 내 인사가 많은데, 수사권이 확대되면 경찰청이 순환인사를 강화할 필요 (권칠승위원)

○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직무중 폭력행위로 기소된 경찰관이 21명이고, 감찰부서는 29건의 강압수사를 적발했는데, 더 큰 문제는 피의자 신문 전 과정의 영상 녹화제도, 변호인 참여, 인권 교육의무화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강압수사로 인한 기소와 징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문화로 전환할 필요 (이광희위원)

○ 2024년 경찰관의 징계건수는 536건이고, 시민감찰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수는 181건이지만 시민감찰위원회에서 실제 심의한 것은 6건에 불과하고, 2025년 1월~6월 기준 107건이 심의대상이었지만 심의회는 열리지 않았으므로 시민감찰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용혜인위원, 이성권위원)

○ 시민감찰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법조인, 교수 등 구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용혜인위원)

○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은 초기 진술 외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 피의자의 주장을 파악하거나 수사정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존에는 검찰에서 보완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에 대한 인지 및 반박 증거 제출이 가능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절차가 사라지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장 및 증거를 모른 채 불송치 결정을 들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의 수사정보 열람 및 복사 권한을 확대할 필요 (용혜인위원)

○ 피의자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사망 전까지 수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 및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강제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 (용혜인위원)

○ 경찰청은 4조 3교대 제도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동 제도는 건강권 침해, 현실적인 수당 삭감 등으로 직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전에 한번 운영했으나 문제가 있어서 폐지한 사례가 있으므로 일선 경찰과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 (이달희위원, 이해식위원)

○ 지역경찰의 4조 3교대 근무의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112상황실에 접수되면 지구대에 연락이 가므로, 사건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는 지구대가 제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 방식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 (박덕흠위원)

○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 송치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2021년 459명에서 2023년 5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위 경찰관의 검찰 송치 현황 뿐만 아니라 기소, 재판 등 최종 형사처벌 결과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위재발자에 대한 현황과 처벌 결과를 별도 관리하며 이들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 (이성권위원)

○ 최근 5년간 범죄 혐의 또는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상당수가 여전히 지구대·파출소 등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인사운영 규정상 배제 조항이 반복적으로 완화·유지되면서 제재 실효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운영 지침 개선이 필요 (위성곤위원)

○ 기소된 경찰관과 관련하여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소속, 처분연도, 위반법률 외에 간략한 위반사건 개요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박덕흠위원)

○ 경찰은 2019년 갑질의 예방·감시·처벌을 넘어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 등을 위해 경찰청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해당 방안에는 채용, 승진, 징계자 공개, 성과급 박탈 등의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성과급 박탈 외에는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령·직급 중심의 서열문화 등이 강하고, 경찰은 강한 위계와 상명하복, 폐쇄적 조직 문화 등으로 갑질이 만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이 마련한 갑질 근절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 (이해식위원)

○ 경찰의 내부비리신고센터에 2023년 기준 145건의 내부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것은 14건이고, 107건은 아무런 처분 없이 불문종결 처리되었고, 신고자 보호 조치가 부재하므로,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감찰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 조치의 결과와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이성권위원)

○ 경찰의 수사 과오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경우 해당 수사 사건의 범죄피해자, 유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 (용혜인위원)

○ 경찰청 유치장 내 안전사고가 2022년 10건에서 2023년 34건으로 증가했고, 부상 통계, 분리수용 준수율, 비상 대응 타임라인, CCTV 사각지대 현황 등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106개 유치장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5곳에 불과하여 대형재난에 대비가 부족하므로, 유치장 사고 통계 분류 기준을 신설하고, 분리수용 준수율 등 핵심 운영 지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타임라인 기록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CCTV 사각지대 및 노후 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를 100% 설치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 (이성권위원)

○ 경찰청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공석이고, 양성평등기획계장은 내년 계장 조직을 유지할지 여부가 미정이며, 4개 시도경찰청은 성평등 정책 담당인력이 없으므로, 경찰청에서 성평등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정춘생위원)

○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2025년 두 번의 회의 중 한 번은 서면회의를 하여 실효성이 낮으므로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대면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춘생위원)

○ 통합활용정원제를 통해 경찰 인력을 1% 감축하는 기준으로 인구수, 사건처리 수 등 정량지표를 활용하면서 지방의 인력이 928명 감축되고, 스토킹·성폭력 범죄, 전자발찌 등을 관리하는 범죄예방부서 등의 인력이 감축되며, 이로 인해 치안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량지표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시 수사인력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이달희위원)

○ 승진 TO의 본청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25년부터 각 시도청 주관으로 경정시험을 실시하면서 본청 독식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지방경찰의 사기 진작 및 도서지역 등 특수성이 반영된 지방 승진 TO를 확대하고 경정 시험을 전국시험으로 환원할 필요 (위성곤위원)

○ 홍보·감사·경무·미래치안·과학수사는 일반직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해당 분야에 경찰 7,800명이 근무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일반직 비율은 영국 37%, 미국 31.6%, 일본 11.3%로 우리나라의 일반직 비율 4.4% 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홍보·감사·경무·미래치안·과학수사 분야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을 늘리고, 동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가능한 치안과 수사 분야로 전환할 필요 (이광희위원)

○ 일반직은 5급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직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 (이광희위원)

○ 교통업무에서는 경찰공무원 7,292명과 일반직 공무원 681명이 공동대응을 하면서 특정업무경비(활동비)는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이광희위원)

○ 2023년 9월 실시된 경찰 조직개편으로 중심지역관서제,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를 운영한 이후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인력이 부족해지고 지역주민이 불편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광역 기동중심의 순찰체계인 기동순찰대와 중심지역관서제도를 폐지하고 지역경찰의 인력을 증원할 필요 (위성곤위원, 이상식위원)

○ 전 정부에서의 경찰 조직의 개악에는 교통기능과 생활안전기능의 국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든 것, 사이버 안전과 사이버 수사를 격하시킨 것, 정보국을 폐지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광역팀을 운영한 것 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 (이상식위원)

○ 2019년부터 실시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 시범사업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이 19.5% 감소하고, 112 만족도가 높아지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6개 학교에 경찰관이 상주하는 등의 효과가 있고, 자치경찰은 대면, 사전인지에 기반한 치안 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추진할 필요 (위성곤위원)

○ 경찰청이 2024년 배출한 온실가스를 18만 5천톤 중 건물 배출량이 99.7%를 차지하므로 건물부문의 대책으로 경찰청이 보유한 옥상, 주차장, 차고지 등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조사하고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보유차량의 전기화 등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 (위성곤위원)

○ 형사사법포털(KICS)에 인공지능(AI) 도입 시 텍스트 기반인 진술조서가 포함되지만, 사건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CCTV 영상, 현장 사진, 금융계좌 내역, 통화내역, 포렌식 데이터, 압수물품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CCTV 영상 등도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 (위성곤위원)

○ 경찰의 수사 능력 강화를 위해 사건 증거자료를 디지털화하고 폐쇄형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 (위성곤위원)

○ 도청 기술의 고도화로 기존의 이동형 탐지 중심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안의 강화를 위해 상시형 도청 탐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 (서범수위원)

○ 대형 플랫폼 및 핀테크 기업의 영장자료 회신이 40일 이상 지연되어 사건 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찰청

주관으로 전자영장 회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의체·정기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를 지원하며, 회신기한 명문화, 지연 통보 의무화 및 긴급 사건 우선처리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 (위성곤위원)

○ 경찰이 80주년이 되어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는 시점이고, 경찰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경찰의 날 변경 건과 관련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 (이광희위원)

○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은 판결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경찰의 법리검증 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큰 문제이고, 해당 문제는 인공지능 검색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할 필요 (권칠승위원)

○ 경찰청 홍보판에 인공지능 수사혁신과 관련해서 챗GPT와 제미나이 로고를 걸어두고 있는데, 수사기록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의 누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록을 챗GPT, 제미나이 등에 입력해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권칠승위원, 위성곤위원)

○ 경찰이 사용할 법률 지원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 큰 산업이기도 하므로,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관련 리걸테크 법안 등을 함께 살펴보고 추진할 필요 (권칠승위원)

○ 경기북부청이 암표 거래가 의심되는 업체(티켓베이)와 협업하여 암표 근절 캠페인 진행, 해당 홍보 진행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 (권칠승위원)

○ 화성특례시와 용인특례시는 경찰관 1인당 관할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 재배치 등을 통해 치안서비스 취약서비스 취약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권칠승위원)

○ 경찰공제회의 투자 자금은 5조 8,000억원을 초과하는데, 감사관리이사, 금융이사, 사업이사가 2020년부터 공석인 것은 문제임 (박덕흠위원, 주호영위원)

○ 경찰공제회는 시장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자산을 늘리라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단 한건의 자산도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다가 2024년 감사원이 시정통보를 내리자 2025년 6월에 공정가치 평가·검증 용역 발주 공고를 냈는데, 이 같이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정춘생위원)

○ 경찰공제회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으며, 직원들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 (박덕흠위원)

○ 경찰대학생이 지구대 현장실습 중에 만취하여 선배 경찰관(기동대 소대장)을 폭행하여 중상을 입혀 퇴학을 당한 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면접을 거쳐 2025년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에 합격을 한 것은 문제가 있음 (이해식위원)

○ 폭발물 협박은 대부분 허위로 판명되지만, 폭발물 협박이 있는 경우 다수의 사람이 긴급 대피하고, 특공 요원이 수색을 해야 하는 등 피해가 있으므로, 허위 신고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서버와 익명의 이메일을 통한 협박 추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 또는 비용청구를 고려할 필요 (채현일위원)

○ 노동조합이 주최한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 장비 등에 물적 피해가 상당수 있지만 경찰은 2017년 이후 불법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 같이 스스로의 권익을 포기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폭력을 동반한 불법집회로 인해서 경찰이 받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 (고동진위원)

○ 폭발물 협박 허위 신고를 한 사례는 청소년, 학생이 많으므로 학교나 지역사회로 예방교육 캠페인을 확대할 필요 (채현일위원)

○ 사전투표소 내 소란행위가 많지만, 경찰이 상주하는 사전투표소는 10%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전투표도 갑호 비상에 준하는 경계태세가 필요 (채현일위원)

○ 저위험권총에 대한 2022년 1차 검사에서는 총구 속도에 큰 편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고, 2025년 2차 검사에서는 이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항을 성능기준에서 제외했는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저위험권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 (용혜인위원)

○ 이전에는 경찰이 수갑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국민에게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이상식위원)

○ 경찰청이 적용중인 전자충격기의 성능 및 안전성 검사 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인체의 안전성을 담보하는지 확인할 필요 (박수민위원)

○ 제압용 전자충격기는 임상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후 도입을 결정할 필요 (박수민위원)

○ 2022년 전자충격기 R3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불량률 이슈가 있었고, R3 제조사와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전자충격기 구매 절차에 R3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경찰청이 경찰 장비의 개발사업에 관여하여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비개선에 투자해야 하는 시장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경찰은 시장의 제품 중 성능이 좋고 안전한 장비를 값싸게 구매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경찰청장이 내란에 동조했고, 서울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가 국회를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막아선 것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차장은 현재 경찰 총책임자로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해주시길 바라고, 조직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또는 개혁 TF를 구성하고, 일부 경찰이 내란에 동조하는 등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세울 필요 (윤건영위원, 한병도위원)

○ 국무조정실에 검찰개혁추진단에 경무관급 이상을 파견해서 수사권 관련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경찰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 (정춘생위원)

○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인사 등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할 필요 (윤건영위원)

○ 정보 부서가 광역 단위로 통합되어 지역 정보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 (윤건영위원)

○ 제2중앙경찰학교 대상지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람 (한병도위원)

○ 2024년 기준 경찰청 특수 건강검진 수검 대상자 7만 5,000명 중 28.3%가 유소견자이고, 47.2%가 요관찰자로 분류되어 2020년보다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의 1인당 검사비가 14만원 수준인데 검사비를 23만원으로 상향하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경찰관 전체로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약 200억원의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노력할 필요 (한병도위원)

○ 경찰복지 실태조사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사건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응답이 48.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 이후 상담·치료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마음동행센터의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강화할 필요 (이광희위원)

○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전화하는 112 상황실 인력은 줄이지 않을 필요 (박덕흠위원)

○ 지난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신뢰도 공정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3년 동안 경찰은 인사관리, 조직관리, 치안성과 및 국민들의 신뢰 획득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3년 동안의 운영 실태 전반을 돌아보고 불법·부당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 (신정훈위원)

○ 전북경찰청 1층에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해서 논란이 되자 반란을 사건으로만 변경하고, 내용을 그대로 둠으로써 경찰이 반성해야 할 민간인 학살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 왜곡이고 2차 가해에

해당하며, 부끄러운 역사는 반성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기술하고 역사에 남길 필요 (정춘생위원)

○ 청원경찰은 경찰과 비교하면 입직경로, 범죄현장의 빈도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근속 승진 기간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 (권칠승위원)

○ 청원경찰의 군경력 불인정 및 기지급 받은 수당에 대한 환수는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와 같이 우선 환수조치를 중단하고 군 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용혜인위원)

○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청원경찰의 직급체제 마련 필요 (권칠승위원)

○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1년, 2명에 3년까지 쓸 수 있음에도 경찰청에서는 육아휴직을 5개월에서 8개월 정도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달희위원)

○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해외범죄 포상금제도 기준을 정비할 필요 (윤건영위원)

○ 경찰은 2024년 경비업 관련 협회 사무검사를 통해 협회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 상황을 인지하고, 2024년 12월 9일 1차 요구사항에서는 직책수당 전액 환수를 요구했으나 2025년 2월 2차 요구사항에서 절차 준수 요구에 그쳤는데 이미 사업비 등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했으므로 법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필요 (윤건영위원)

○ 국립경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경찰관의 만족도가 높고, 의·한 협진을 통해 의료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한의진료과를 경찰병원 본원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서범수위원)

7. 소방청

○ 소방공무원의 정신질환 공상 불승인율이 24.4%에 달하는데, PTSD는 사고 직후뿐만 아니라 사고 후 장기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날 수 있음. 소방공무원의 공상 입증 지원을 위한 재해보상 전담팀 구성 등 제도적 보완 필요 (모경종위원)

○ 대형 재난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PTSD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담 이후에도 고위험 현장에 재투입되는 등 체계적인 인사 관리와 퇴직자 대상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임. 전문 상담사 1인당 담당 대원이 630명에 달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상담 인력의 고정 배치, 관련 예산 확충, 민간·타 기관과의 상담 연계 등 실질적인 심리 지원 체계 구축 필요 (이광희위원)

○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전국 소방서 내 심신안정실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심신안정실 표준 운영안과 달리 안마의자만 비치된 단순 휴식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음. 소방관의 정신건강은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력의 핵심 기반인 바, 실질적 치유가 가능한 표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환경 개선 조치 필요 (박덕흠위원)

○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5억 6000만 원의 42%를 부산 지역에서 사용하는 등 지역별 배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구급대원의 외상 사건 노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임. 진료비 지원 제도의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 및 구급 인력의 업무 가중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권칠승위원)

○ 소방공무원은 평균 수명이 일반직 공무원 대비 약 5세 낮고 PTSD 환자·자살자의 숫자도 심각한 수준이므로 독립적인 PTSD 센터 건립 필요 (주호영위원)

○ 고령 대원의 체력적 한계와 건강권을 고려하여 조기 퇴직 시에도 연금 불이익이 없는 '소방직 특화 퇴직 및 연금 제도' 도입과 같은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보호 대책 마련 필요 (주호영위원)

○ 이태원 참사와 제주 여객기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전원에게 심리상담이 이루어졌으나, 제주 여객기 사고의 경우 심리지원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병원 연계율도 이태원 참사 대비 현격히 낮은 실정임. 특히 이태원 참사 출동 대원들이 2년이 지난 시점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트라우마의 지연 발현 문제가 심각함. 극심한 충격을 겪은 대원이 사고 발생 수년 후까지 전문적인 치료와 추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심리 방역 체계 구축 필요 (이성권위원)

○ 소방대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동료상담사 양성 및 정규직 상담 인력의 관서별 배치 등 소방공무원 심리 지원 체계의 지속성 확보 필요 (이상식위원)

○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은 1년 단위 민간 위탁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고 업체에 따라서는 상담사가 주 1일만 출근하는 사례가 있음. 시도별로 상담사 1인이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도 차이가 나고, 상담사 교체도 잦아 트라우마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음.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을 보완·개선·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권칠승위원)

○ 국가보안시설의 배터리 위치 등 소방활동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에 위험물·기타 연소물질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김성회위원)

○ 화재예방안전진단 등 강제력 있는 조치명령과 처벌 규정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바,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데이터센터의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위한 입법 추진 필요 (이상식위원)

○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서버실과 ESS 배터리실이 불과 60cm 거리로 인접해 있어 서버 보호를 위한 가스 소화와 배터리 진압을 위한 주수(注水) 소화가 충돌하는 등 진압 작전에 혼선이 발생하였음.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ESS 설치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인 바, 서버와 배터리 공간의 물리적 분리를 의무화하고 랙별 자동수조시스템 등 최신 안전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특히 소방청은 데이터센터 전수조사 시 배터리 제조·공급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술적 안전 표준을 확립하고 현장 매뉴얼이 실무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동진위원)

○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물을 이용한 냉각 소화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의 주수 금지 요청에 따라 주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데이터센터와 같은 특수 시설 화재 시 지휘권자의 독자적인 판단권 확보와 명확한 주수 원칙 정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철저한 긴급구조 대응활동 평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용혜인위원)

○ 119구급대가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을 위해 병원 응급실에 수용 여부를 문의하면 거부당하는 비율이 73.7%에 이르는 등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함. 119구급대 등 소방이 병원 선택의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필요 (양부남 위원, 이해식위원)

○ 해외 주요국은 구급차 탑승 인력을 원칙적으로 응급구조사 자격보유자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응급의료체계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구급차에 탑승하는 간호사에게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을 의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박덕흠위원)

○ 소방시설 표준자체점검비의 면적 구간 설정이 광범위하여 소형 건물의 비용 과다 청구 및 대형 건물의 과소 청구 등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소방본부 청사조차 표준 대비 50% 미만의 가격으로 계약하는 등 제도 준수율이 매우 낮음. 소방시설 부실 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비 구간 세분화 및 현실화, 저가 계약 대상물에 대한 용역계약서 제출 의무화, 공공기관의 선제적 기준 준수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 (양부남위원)

○ 국내 아파트 거주 비율이 53.9%에 달하고 있고 국내 아파트 중 지어진 지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가연성 내장재로 인한 질식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실화재 실험 결과 방염처리에 따른 온도 억제 효과가 확연히 입증된 바, 고층 및 노후 아파트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염 처리 의무화 등 국민의 주거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적 보완 필요 (박정현위원)

○ 기도 확보용 의료기기(I-GEL) 등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멸균 구급 소모품이 현장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차례 재사용되고 있음. 안전과 직결된 기초 구급용품의 전수조사 및 소요 예산 추계를 통해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정춘생위원)

○ 소방청 R&D 예산 305억 원 중 약 70% 이상이 외부 용역에 편중되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지난 4년간 135억 원이 투입된 현장 활동 지원 기술 개발 역시 실질적인 현장 적용 사례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가 미비함. 현장 소방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안전 확보 기술을 개발하도록 R&D 구조의 재검토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역할 정립 필요 (서범수위원)

○ 전기차 화재 사고가 급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소방청의 형식승인조차 없는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대량 구매하고 홍보하는 등 보여주기식 대책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미검증 장비 유통을 엄격히 단속하고 질식소화포·상방향 살수장치 등 소방청 표준 지침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진압 장비 보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채현일위원)

○ 최근 철도 차량 내부와 승강장 등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사고가 속출하고 있음. 소방청이 철도차량·철도시설의 전기소화기 등 설치 기준 정비를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이해식위원)

○ 최근 발생한 어린 자매 화재 사망 사고 현장에서 19년 된 화재감지기와 31년 된 불량 소화전이 발견되는 등 노후 소방용품 관리 부실이 심각함에도 소방청은 지난 1년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음. 소방용품 내구연한 제도화 등 조속한 법령 개정 필요 (윤건영위원)

○ 소방관 순직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휘관의 역량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정작 현장 지휘의 핵심인 소방정급 서장들의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 이수율은 14%에 불과한 실정인 바, 지휘관 교육 이수 의무화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 필요 (윤건영위원)

○ 전국 위험물 시설의 대다수가 실효성 없는 육안 검사와 자가 점검에 의존하고 있어 대형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고,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된 방화복 세척 기준 또한 시도별로 상이하여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AI·IoT 기반의 지능형 점검 기술을 국가 표준으로 도입하고 제3자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방화복의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한 일률적인 세척 기준 및 위탁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대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위성곤위원)

○ 최근 국내 산불은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음. 현재 산불 대응체계는 산불 규모에 따라 기초차지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산림청장 등으로 지휘권자가 분산되어 있고, 산불 발생 시 소방청의 역할은 시설물 방어에 한정되어 있음. 산불진화를 소방청을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신정훈위원)

○ 소방시설의 설치는 설계를 바탕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감리까지 하나의 연속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시설공사만 분리도급하고 있음. 시설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도 분리도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서범수위원)

○ 주유소는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요 및 부대업무 외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 주유소 복합개발을 통해 편의시설 입점이 가능해지면 주유소의 수익성 개선과 인프라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주유소 부대시설 설치 제한 완화, 도심 내 주유소 부지의 복합개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채현일위원)

○ 2020년 10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유소 지하탱크 통기관에 화염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이를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2022년 10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2025년 10월 17일까지 모든 주유소 지하 탱크 통기관에 화염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됨. 이와 같이 기존 주유소의 화염 방지 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두 법령이 다르게 규정함에 따라 사업자의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주유소 안전관리 주무 부처인 소방청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채현일위원)

○ 소방설비 중 펌프는 스프링클러 설비와 옥내소화전 설비의 정상작동에 필요한 요소인데 펌프의 정상작동 여부는 유량계를 통해 점검함. 유량계는 현재 소방용품 ‘성능인증’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유량계를 ‘형식승인’ 필요 제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이상식위원)

○ 소방청은 대형화재 발생 시 후속대책으로 ‘긴급화재안전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안전조사 이후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채현일위원)

○ 소방청은 2025년 부산 공사장 화재 사고 이후, 각 현장에 “KFI 성능인증 방화포”의 사용을 지도하고 있음. 그러나, “KFI 성능인증 방화포”는 실제 불티관통시험에서 관통 및 발화 현상을 보였다는 진정이 있고, 소방산업기술원은 KFI 인증을 위한 성능시험 영상이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준 용접방화포 및 불티비산방지포와의 성능 비교시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KFI 시험기준은 실제 용접 불티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화재예방과 무관한 항목이 핵심평가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음. KFI 인증제도의 과학적·현장적 타당성,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고동진위원)

○ 2026년 6월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특수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의 직무상 고질병인 근골격계 질환과 지역 내 고령 인구의 의료 수요를 충족할 '한의 진료' 계획이 미비함. 한의과를 포함한 진료 과목 확대 등 국립소방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필요 (박정현위원, 서범수위원, 채현일위원)

○ 국립소방병원의 2026년 6월 개원을 위해서는 2025년 연말 시범 진료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운영 수탁기관인 서울대병원에 인력 확보 등 미이행 사항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고 당초 계획된 로드맵에 따른 조속한 개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광희위원)

○ 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의 핵심 원인이 부실한 소방시설과 허위 감리 보고서에 기반한 소방서의 완공 승인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8개월째 전국적인 재발 방지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대형 건축물

완공 승인 시 소방서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현장 확인 의무화, 소방공사업체·감리업체가 본인이 공사하거나 감리한 건물의 소방시설 최초점검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 대형 건축물에 대한 감리자 지정 시 PQ(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주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용혜인위원)

○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DB손해보험은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결과 대기, 블랙박스 미확보 등 보험 약관에 없는 사유를 근거로 약 125억 원 규모의 지연이자 지급을 거부하면서 기체 보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음. 특히 해외 중재(영국 법원)를 주장하면서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국내 법원 관할 원칙을 무시하고 금감원의 조정안마저 수용하지 않는 등 기업 이익만을 우선시하여 신규 소방헬기 도입 등 국가 재난 대응력 강화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바, 지연이자를 포함한 보험금의 즉각적인 지급과 전향적인 태도 변화 필요 (박정현위원)

○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소방서·본부·중앙통제단 가동 시점이 실제 무전 녹취 및 상황 보고와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임이 당시 상황담당관의 증언으로 드러남. 특히 대응 3단계 발령 이후에야 통제단 가동이 검토되었음에도 참사 직후부터 가동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여 약 1시간의 긴급구조 지휘 공백을 은폐하려 했음. 대통령 주재 회의 영상 등 증거를 통해 지휘부의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와 감사원 보고서의 오류를 철저히 규명해야 함.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의결을 요청함 (용혜인위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큰 혼란이 있었음. 참사 이후 소방청은 다수사상자나 중증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구급활동을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급지휘대'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음.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역별 여건과 소방서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구급지휘대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춘생위원)

○ 소방서장의 최고 직급이 4급(소방정)에 머물러 있어 인사 적체가 심각함. 대도시 소방서장의 직급 상향(3급 신설), 중앙-지방 간 순환보직 활성화 등 인사 시스템 개혁이 필요함 (이달희위원)

○ 소방 조직의 중간 지휘 라인이 부재하여 현장 지휘 체계의 혼선과 인사 적체 문제가 심각하므로 재난 현장의 일사불란한 지휘 통솔을 위해 소방준감 등 중간 직위 신설 필요 (이상식위원)

○ 대전과 광주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이 여전히 소방준감에 머물러 있어, 타 대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고도화되는 재난 대응 지휘에 한계가 있음.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 (박정현위원)

○ 소방 피복에 대한 대원들의 불만족도가 80%에 달하고 있음. 통풍과 신축성이 없는 기동복 등 현장 활동성을 저해하는 저품질 피복 문제의 핵심은 지역별로 최대 3배에 달하는 피복비 예산 편차와 특정 업체의 독점 구조에 있음. 복제 규칙을 재검토하고 피복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는 등 현장 대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복 개선 대책 마련 필요 (한병도위원)

○ 소방공무원 범법행위가 최근 5년간 약 1,000명에 달하고, 특히 기소된 성범죄 사건조차 징계 양정이 지역별로 해임부터 불문경고까지 천차만별임.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유형별 일관된 징계 기준을 재정립하고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 필요 (위성곤위원)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지휘권이 평상시와 비상시에 따라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으로 분산되어 현장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큼. 또한 전체 소방 예산 중 소방청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6%에 불과해 대원들의 PTSD 지원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음. 조직·인사·재정 전반을 재설계하여 명실상부한 '온전한 국가직화'를 완수하고 글로벌 수준의 소방 안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적 로드맵 마련 필요 (정춘생위원)

○ 소방대원의 구조구급활동비가 일부 지역에서는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소방대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음.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소방대원에게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이광희위원)

○ 대한소방공제회의 회원 기반은 소방공무원인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증가 회원이 143명에 불과함. 또한, 대한소방공제회 회원자격이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소방 관련 관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소방공제회 회원가입 자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병도위원)

○ 최근 소방분야 OD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해당 업무를 전담·총괄하는 부서가 소방청에 부재한 실정임. 향후 소방청에 ODA를 전담할 국제협력과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양부남위원)

○ 이태원사고 이후 경찰-소방 간 협력관 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현재 경찰에 파견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비에 편성·집행되고 있으나 소방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인건비는 각 시·도에 설치된 소방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에 편성·집행되고 있음.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이 있으므로 인건비는 인건비계정에서 지출되어야 하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에서는 소방분야 사업비만 지출될 필요가 있음 (양부남위원)

○ 현재 119종합상황실 업무는 신고접수-판단-지령의 전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 매뉴얼 부재, 반복된 인사이동에 따른 숙련도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음. 119상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 및 119상황실 근무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광희위원)

○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예산과 인사 권한은 여전히 시·도에 있고, 시도별로 인력과 장비의 편차가 있어 소방행정의 질이 시도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미완인 국가직화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소방예산의 국비 전환이 필요함 (채현일위원)

○ 현재 시도 소방본부별로 복지포인트의 운영 방법이 상이함. 소방 복지포인트 사용 만족도 조사와 소방 복지포인트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권칠승위원)

○ 2019년~2023년에 소방정 계급의 현원 대비 비위·범죄 발생 비율은 21.1%로 타 계급에 비해 월등히 높음. 소방정에 대한 전보·징계권을 소방청으로 이관하고 소방 고위직 간부에 대한 비리행위 신고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용혜인위원)

○ 대형산불 당시 소방정 계급 간부들의 부적절한 지시와 미흡한 대응역량이 문제되었는 바, 소방서장 등 소방정 계급 간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용혜인위원)

○ 현재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31개 교정 시설에서만 이뤄지고 있음. 대체복무제를 소방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용혜인위원)

○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2023.08.18.)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을 대응단계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지휘관이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영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지휘관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 책임을 회피하고자 통제단 가동을 줄일 우려가 큼. 올해 집중호우 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통제단 가동이 이뤄지지 않는 등 소방의 재난 대응 역량이 위축되었음. 지역통제단 가동 여부를 자연재난·사회재난 모두 기상특보, 재대본 비상1단계 발령, 위기경보 등 객관적 기준과 연계하여 의무적이고 선제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용혜인위원)

○ 인천 부평소방서 부흥119안전센터는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어 재건축이 원활하지 않음. 부흥119안전센터의 재건축을 위한 소방청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 필요 (박정현위원)

○ 2025년 7월 경기도 광명시 오크팰리스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층 주차장 천장 배관에 설치된 '정온전선(定温电线)'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식결과를 발표하였음. 과거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청주 산부인과 화재 등에서도 미인증

정온전선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음. 소방청은 불법 미인증 정온전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및 전국 유통망 전수 조사, 광명소방서 등 관계관에 대한 합동감찰 및 책임자 문책,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시스템 인증제품 사용 여부 확인 의무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서범수위원)

○ 강원도에는 대형재난 대응에 필요한 화생방 대응차는 2대, 소형사다리차는 9대, 배연차는 13대로 턱없이 부족하고, 소방헬기는 2대에 불과한데 이 중 한 대는 도입된 지 16년이 지난 노후 헬기임. 강원도는 매년 대형 산불과 재난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소방장비 확충과 항공 전력 강화가 필요함 (이상식위원)

○ 2025년 10월에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사고 후 100여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하였음. 이는 경남 응급의료체계가 시스템은 갖췄지만실제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실패임을 보여주는 사건임.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도-소방 협업 강화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이상식위원)

8. 지방자치단체

가. 서울특별시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씨 발언 관련 진실여부 및 입장에 대한 질의 (권칠승위원)

○ TBS 방송국의 출연기관 지정해제 및 민영화에 대한 질의 (권칠승위원)

○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중 상당부분을 소비쿠폰 발행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서울특별시의 채무가 증가한 부분에 대한 질의 (주호영위원)

○ 한강 수상버스 사업 시행 점검 미비에 대한 지적, 해당 사업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 (주호영위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서울특별시의 신속통합기획 등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 (서범수위원)

○ 한강 수상버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당초 제시한 속도와의 괴리, 운항속도로 인한 대중교통으로서의 경쟁력 유무, 안전점검 미비, 후속 물량에 관한 조사 중단, 운항시기의 적절성 (양부남위원)

○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조합 재정 지원 부족, 마을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대안 및 마을버스 공영제 논의에 대한 질의 (용혜인위원)

○ 한강 수상버스의 부족한 공정률에 따른 기계적 결함, 수상버스 4척의 인도 지연 지적 (윤건영위원)

○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집값에 미치는 영향 및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한 질의 (고동진위원)

○ 서울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서 외국발 자본의 영향 여부 및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부재 대한 질의 (고동진위원)

○ 서울 토지 매수 외국인의 국적 분포에 대한 질의 (고동진위원, 위성곤위원)

○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급 대책 부족,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지적 (위성곤위원)

○ 서울 AI챗 관련 공공데이터 보호책임, 공공데이터 보호 인식 미비에 대한 지적 (위성곤위원)

○ 한강 수상버스 사업을 통한 도시 변화, 비전, 특정업체 특혜 시비, 수상버스 활용도에 관한 질의 (박덕흠위원)

○ 서울교통공사가 감사원 지적 및 행정안전부의 행정처분 요청을 받은 무면허 건설업체인 ‘21그램’와 계약을 체결하여 연신내역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지적 (모경종위원)

○ 성동구의 연신내역 리모델링 공사업체인 ‘21그램’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유권해석요청 및 재요청에 관하여 공식적인 대응이 미비하였다는 지적 (모경종위원)

○ 한강 수상버스 사업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시성, 집중호우시 운항 가능성에 대한 지적 (박정현위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국가 및 지방재정, 양극화, 부동산 규제 완화, 복합 개발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구 안전관리 우수사례 대상 수상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 (채현일위원)

○ 한강 수상버스가 타 교통수단에 비해 시간적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 (채현일위원)

○ 서울링 사업 관련 예산 증가 및 착공시기에 대한 지적 (채현일위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사 입주 및 기존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퇴거 등 운영에 대한 지적 (한병도위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사 입주 후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질의 (한병도위원)

○ 노들섬 개발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이달희위원)

○ 한강 수상버스 선착장 관련 지적: 선착장 내부 착석을 위한 의자의 부재, 내부 스크린의 승선 관련 정보 제공 미비 (정춘생위원)

○ 한강 수상버스 사업의 서울 기후와의 적합성,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지적 (정춘생위원)

○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물량 감소 원인에 대한 질의 (이성권위원)

○ 부동산 전세 물량 감소에 따른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미리내집 사업의 내용, 경쟁률 및 정부의 대출규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에 대한 질의 (이성권위원)

○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 관련 공법심사 규정 변경, 실적점수 부여, 공법의 적정성 및 공사의 안전성 등 업체선정 특혜 여부에 대한 지적 (이광희위원)

○ 서울시 부동산 정책 관련 신속통합기획 사업장 중 시행계획 인가 사업장의 부족, 토지거래허가제 철회의 특정 지역 특혜 여부에 관한 지적 (이상식위원)

○ 서울특별시 내 육군사관학교 부지를 이용한 부지 확보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대규모 토지 확보에 대한 질의 (이상식위원)

○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사건 관련 서울교통공사의 매뉴얼 대응 미비에 대한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 (김성회위원)

○ 지하철 운행 관련 1인 승무제, 승무원 인력관리에 대한 지적 (김성회위원)

○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소유 편중,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역 편중 등 부동산 시장 수요관리에 대한 지적 (신정훈위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유 주식 백지신탁 이행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 (신정훈위원)

○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및 입장에 대한 증인 신문 (권칠승위원)

○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학교 인사 특혜의혹에 대한 질의 (이해식위원)

○ 한강 수상버스 제작 업체의 전문성 검증 및 해당 사업이 중소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인 신문 (서범수위원)

○ TBS 방송국 출연기관 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여부, 민영화 진행 및 재정지원 관련 증인 신문 (채현일위원)

○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여론조사 제공, 여론조사 비용 문제 및 사례제공 약속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인 신문 (윤건영위원)

○ 한강 수상버스의 1척당 가격 인상 이유, 계약한 수상버스 운항 속도 저하로 인한 보상금 수령 여부에 대한 증인 신문 (양부남위원)

○ 한강 수상버스 계약업체의 인도지연 이유, 타 업체와의 이중계약에 대한 증인 신문 (양부남위원)

○ 한강 수상버스 사업 관련 설계 안전성, 재정 문제, 특정 업체 수주 의혹에 대한 지적 (양부남위원)

○ 명태균 씨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및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증인 신문 (위성곤위원)

○ 강남구에서 발생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리운영권 만료 관련 임차인 보호 대책 미비, 사전 고지 의무 이행 여부, 강남구청의 사후 관리 책임에 대한 지적 (위성곤위원)

○ 서울 영테크 사업 참여 청년의 해당 사업 상담사로부터 받은 사기 피해 관련 전수조사 실시범위에 대한 지적, 해당 사업에 위촉된 상담사들의 상품판매 금지 조항 이행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용혜인위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재임 중 공사 예산 사적 유용 의혹에도 불구하고 연임이 결정된 경위에 대한 지적 (김성회위원)

○ 2025년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 관련 4자 합의 재검토 의사여부에 대한 질의 (모경종위원)

○ 한강 수상버스의 구명조끼, 구명조끼함 및 소방도구의 비치 문제, 운항시 안전방송 부재 등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 (권칠승위원)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시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질의 (이달희위원)

○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적자로 인한 사업소 및 정비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 (정춘생위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절차 관련 지방정부의 자치권 문제 및 서울시의 경우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건에 대한 입장 질의 (이성권위원)

○ 한강 수상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SH공사의 채무상환보증 및 조례 개정 전 사업 결정의 법적 정당성과 「지방공기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적 (이광희위원)

○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강남3구만을 지정취소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에 대한 질의 (이상식위원)

○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미이행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과 서울시의 관리·감독 소홀 및 책임 회피에 대한 지적 (이상식위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식 백지신탁 처분 명령 불복, 행정심판 기간 중 처분의무가 정지됨에 따라 발생한 지속적인 주식 거래 행위의 「공직자 윤리법」 취지 위배 여부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 소홀에 관한 지적 (신정훈위원)

○ 한강버스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한 수상안전상황실 인력 운용, 선박 간 통신 체계의 실효성 부족, 형식적 사고대응훈련 등 안전관리 전반의 부실 실태 지적 (이해식위원)

○ 한강 수상버스 운항안전 확보, 수상안전보안관 처우 개선을 위한 안전 관리 개편에 대한 질의 (이해식위원)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보편적 복지의 경제적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입장 질의 (서범수위원)

○ 서울시설공단의 지하도 상가 입찰 방식이 전체 단위에서 점포 단위로 변화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상인들의 협상력 약화 및 임대료 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질의 (채현일위원)

○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 이후 시민 통행권 확보 필요성에 대한 지적 (채현일위원)

○ 광명·서울 고속도로 개통 지연에 따른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중단 결정의 적정성, 우회도로 미확보로 인한 교통난과 주민 편의 시설 조성 중단 대책에 대한 질의 (채현일위원)

○ 채무 법인 청산 시 서울시와 수행기관 간 상이하게 적용되는 채권 소멸 기준에 대한 지적 (용혜인위원)

○ 한강 수상버스 사업의 출자 지분율 대비 과도한 민간 수익 배당 비율 설정에 대한 지적 (용혜인위원)

○ 구로1동 지역의 버스노선 부족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 필요성 및 소극적인 민원 대응 태도에 대한 지적 (윤건영위원)

○ 서울교통공사가 지방공기업 금고 지정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칙적 협력사업비 제공받은 실태와 금리 경쟁 중심의 투명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 (한병도위원)

○ 서울시 교통문화지수의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기록에 따른 교통안전 행정 실태 점검, 자치구별 예산 및 인력 격차 해소를 위한 시 차원의 총괄 대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지적 (김성회위원)

○ 한강 수상버스 사업의 수익 구조에 대한 질의 (박덕흠위원)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사후 대책, 사업 초기 설계 부실 책임에 대한 지적 (모경종위원)

○ 한강 수상버스 사업에 대한 SH공사의 재정지원에 따른 실질적 공공사업화 지적 (양부남위원)

○ 한강 수상버스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 명분과 사업 목적의 불일치 지적 (양부남위원)

○ 탄소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친환경 건물을 위한 투자 부족에 대한 지적 (위성곤위원)

○ 서울시 채무 감축 발표의 통계적 왜곡 가능성 지적 (정춘생위원)

○ 명태균 씨의 증인 신문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에 대한 질의 (이성권위원)

○ 서울시 싱크홀 발생에 대비한 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을 위험 지역별로 차등화하지 않은 채 시행, GPR 지하탐사레이더 전수조사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 로드맵을 비공개하였다는 지적 (이광희위원)

○ 빗물펌프장 처리능력 저하 및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적 (이광희위원)

○ 현행 「지방계약법」상 입찰 방식 중 '2단계 입찰(최저가 입찰제)'를 고수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 (고동진위원)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현행 '최저가 입찰제'보다 시민 편의성 및 질적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견해에 관하여 서울시의 입장 및 계약방식 변경 가능성에 대한 질의 (고동진위원)

○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로 진행중인 용역 결과에 대한 질의 (고동진위원)

○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사업 관련 위치추적 기능과 112 신고 기능 유무, 해당 기능들의 탑재가능성 및 내구성 부족에 대한 질의 (고동진위원)

○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 목표 달성에 실패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원인에 대한 질의 (모경종위원)

○ 폐기물 관리 실패로 인해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폐기물 부담이 전가된 바 이러한 인천 시민들에 대한 책임 관련 질의 (모경종위원)

○ 서울교통공사의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인해 납품지연,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바 이에 대한 입장 및 제도 개선 계획 유무에 대한 질의 (박덕흠위원)

○ 선진국형 '기술·가격 종합평가 낙찰제'를 미도입한 채 현행 계약방식을 유지하는 서울시의 입장 질의 (박덕흠위원)

○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의 처우개선,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계획 중인 내용, 한시적 조정수당 지급 후속대책 관련 노동자들과의 협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대상 재무건전성 점검 관련 구체적인 점검 방법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실태 정기점검 및 임차인대표회의 설립지원 등 사고예방책 마련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청년안심주택 외 전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대상 운영실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현행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세대수 증가 제한 등의 규제가 주택공급 확대를 억제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서범수위원)

○ 과도한 리모델링 규제 완화·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할 계획에 대한 질의 (서범수위원)

○ 서울에너지공사 서남 2단계 사업 관련 질의: 본래 공사 주도로 추진하였음에도 SPC 사업추진 방식으로 변경한 점, SPC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이 현재 진행중이나 해당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SPC 사업추진을 확정한바 절차적 하자의 유무 및 사업추진 확정 사유, 사업확정시 취약계층 요금할인 등 공익적 부분에 대한 검토 유무, SPC 사업의 공공성 약화에 대한 고려 유무, 채원의 상당부분을 PF로 확보하는 점, SPC에 기반한 운영시 서울시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한지 여부 (신정훈위원)

○ 최근 3개년 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냉매재생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하지 이유 및 근거에 대한 질의 (신정훈위원)

○ 서울교통공사 경영효율화 명분 하 2,212명의 인력감축 재고에 대한 입장 및 대책 질의 (신정훈위원)

○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의 필요성 및 지원가능성에 대한 질의 (양부남위원)

○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불법전대 관련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질의: 불법전대 적발 임차인 및 점포에 대한 향후 제재 조치 계획, 계약 해지 상태인 임차인의 영업 허용이나 임차권 유지 등 부적절한 관리 사례 유무, 2023년 11월 고가 입찰 없는 임차권 승계 경위 및 당시 불법전대

실태조사 여부, 위수탁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차인 고발 파악 여부 및 향후 적발 계획, 공식 승인 점포 현황,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실제 임차인 불일치 점포수 및 행정조치 여부, 최근 10년 간 불법전대 및 매매 점포 관련 제보 접수 사례와 조사 및 처리 결과, 10년간 공단 직원과 위수탁법인 간 금전적·인적 유착에 따른 징계·수사 사례, 불법전대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용혜인위원)

○ 수행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이 청산을 완료한 경우 해당 융자금에 대한 수행기관의 책무 탕감에 대한 입장 질의 (용혜인위원)

○ 수행기관 상대 상환기한 연장시 최초 약정한 무이자 적용에 대한 입장 질의 (용혜인위원)

○ 연체에 따른 가산금리 적용시 대부업과 같이 법정 최고한도인 3%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용혜인위원)

○ 서울AI챗 운영시 공공데이터의 보호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증가 관련 주간작업 전환 및 안전형 청소차 보급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양치승 사태’ 관련 강남구 논현1주차장 협약에 ‘임차인 고지’ 혹은 ‘재무 점검’이 부재한바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한강버스 운영과 관련해 SH 공사를 통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적은 원인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책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서울런이 단기 복지형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공교육 학습복지로 전환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주택 공급 실적 부진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신속통합기획 관련 사업성 부족 문제가 주택 공급속도를 증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신속통합기획의 정책 효과 부진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민간 중심의 공급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관리보다 공급에 집중하는 이유 및 이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여의도 선착장 관련 도교 방식의 안전성을 이유로 체인 삭제를 추진한바 이와 관련한 근거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사업기간 분야별 종사 인력 및 지역별 인력 차원에서의 성과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가사관리사 계약 연장 감소 원인 관련 분석자료 및 대안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임금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지속 의지 및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노숙인 복지사업의 재정상 지속가능성 및 중앙정부 간 소통여부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노숙인 복지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노숙인 시설과 타 복지시설 간 발생하는 운영비 단가 차액 보전 관련 대책 여부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중단 관련 질의: 중단사유, 공사착공 후 교통 침체를 예상했는지 여부, 의견 반영 부족 가능성, 지하도로의 구조적 요인 검토 필요성, 사업 중단이 매몰비용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 가능성 (이성권위원)

○ 서울런 관련 질의: 사업의 내용, 사업성과, 성과 증빙자료, 사교육 의존도, 예산의 사교육 집중,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학생 상대 대책 (이성권위원)

○ 청년안심주택 관련 질의: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의 진행 현황, 보증금 지급 외 거주 희망 임차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여부에 대한 질의, 후순위 피해자가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대책에 대한 질의, SH 매입 통한 구제 가능성, 선순위자 보증금 지급 현황, 청년안심주택 관악구 승인 지연 대책으로서 타 공공임대 사용 가능성 및 입주 가능 물량 (이해식위원)

○ 불법하도급 문제 관리에 대한 질의 (이해식위원)

○ 불법 하도급 특별 점검 효과에 대한 질의 (이해식위원)

○ 하도급 전수조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소당 일부 공사만을 확인한 이유에 대한 질의 (이해식위원)

○ 하도급 공사 전수조사할 의향에 대한 질의 (이해식위원)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관련 질의: 주요 시설의 설계 관련 다수의 민원, 형식적인 공고절차로 인한 의견 수렴 부족 우려, 동대문구와의 협의 여부 및 향후 검토 계획, 월릉IC 진입 시설 예정 지역의 홍수예방 구조의 안정성과 기능 및 홍수피해 우려, 굴착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 우려, 공사차량의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정차 및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기존 무장애 보행로가 공사로 소실된다는 우려, 공사 이후 녹지공간이 사라지는 생활 환경 악화 우려, 해당 사업 일부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유, 특정지역이 장기간 공사장이 된다는 우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진행하였는지 여부, 경제성·수익성과 공익적 가치 간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 건설보조금 지원 등 수익성 부족 우려, 선정업체 재정적·비재정적 특혜 의혹, 월릉IC 구간 공사 착수 예정 기간 (이해식위원)

○ 건설기계 임금 체불이 많은 이유에 대한 질의 (정춘생위원)

○ 서울시, SH공사, 광진구, 용산구 등의 임금체불 지속에 대한 질의 (정춘생위원)

○ 임금체불 관련 지도감독 여부 및 해당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 (정춘생위원)

○ 통합지원협의체 및 조례 부재와 같이 통합돌봄사업의 준비 미흡에 대한 질의 (정춘생위원)

○ 서울 아동복지센터 관련 질의: 민간위탁 변경 계획 및 해당 센터 주요 업무 중 아동 일시보호 및 치료 기능을 삭제하는 계획 유무 (채현일위원)

○ 지하도 상가 관련 질의: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상인의 의견수렴에 미비하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시 또는 공단의 요구로 리모델링한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10년 이상 보호해달라는 상인회의 요구 관련 입장, 지하상가 입찰방식을 상가 단위에서 점포 단위로 변경할 경우 임대료 상승에 대한 우려, 점포 단위 입찰 시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정 마련 여부, 영등포역 지하상가 상인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포단위 입찰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 점포단위 입찰의 문제를 보완할 대책 (채현일위원)

○ 현행 자율주행 시범사업 차량 중 약 35%만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바 향후 자율주행차 추가 도입 또는 UAM 시범운항 추진 시 교통약자 탑승 기준 의무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한병도위원)

○ 서울시 싱크홀 발생 관련 질의: 5년간 관내 발생한 싱크홀 사건 건수 및 피해 현황,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우선정비구역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 노후화 상하수관의 비중 및 위치 파악 여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 예방 관련사업과 예산의 규모, 싱크홀 대비를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 (이성권위원)

○ ‘외로움 없는 서울’ 관련 질의: 5년간 관내 발생한 고독사 현황, 고독사 피해자들의 특징, 고독사 피해자 중 취약계층 비율, 취약계층 대상 서울시 지원 사업 현황, 시 차원의 정신건강지원 관련 사업 유무, 세부사업 내용,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 유무 (이성권위원)

나. 대구광역시

○ ‘세이브코리아’가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의 동대구역 광장 사용 신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광장 사용을 허가한 건에 대한 지적 (윤건영위원)

○ 대구시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취수원 확보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요청 등과 같은 적극적인 관철 의지 미비에 대한 지적 (이성권위원)

○ 대구시의 저조한 경제지표의 원인으로서 행정의 보수성에 대한 지적 및 극복을 위해 다양성이 있고 발전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 (이상식위원)

○ 대구시 뉴미디어팀장 채용 비리 논란에 대한 질의 (이상식위원)

○ 지역기후대응기금 미설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미도입,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청년위원 미위촉 등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수준 미비에 대한 지적 (위성곤위원)

○ 태양광 산업단지 계약률의 목표 대비 저조한 수준에 대한 지적 (위성곤위원)

○ 도심지 내 전투비행단 이전사업을 대구시 재정으로 진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한 지적 (주호영위원)

○ 석유산업 쇠퇴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관련 구체적인 계획 수립 미비에 대한 지적 (주호영위원)

○ 대구·경북 지역통합의 필요성, 구체적인 통합효과 관련 홍보부족에 대한 지적 (주호영위원)

○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당시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미비에 대한 지적 (권칠승위원)

○ 청년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일자리, 주거지원 사업에 비해 프로포즈 지원사업의 과도한 예산 등 적실성 있는 청년지원 정책 부족에 대한 지적 (이광희위원)

○ 해평 취수원과 안동댐안 관련 맑은 물 공급에 대한 협정서의 효력 및 일방적 해지에 대한 지적 (양부남위원)

○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 한계와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 지적 (양부남위원)

○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춘 로봇, 메디컬, 바이오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 (이달희위원)

○ 2023년 퀴어문화 축제 관련 손해배상소송 등 증가한 행정소송 건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소송비 부담분의 대구시 자체적 부담 요구 등 재정의 낭비적 운용에 대한 지적 (용혜인위원)

○ 대구시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 질의 (서범수위원)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매칭 등 지방재정부담에 대한 질의 (서범수위원)

○ 정보공개청구 관련 지적: 과도한 비공개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결정에도 지속적인 정보 비공개,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 상대 소송비용 미회수 (윤건영위원)

○ 재정문제에 대한 지적: 재정자립도의 지속적 하락, 사회복지 관련 높은 부담률, 재난보호기금 차입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구시 부담분 충당 등 (이성권위원)

○ 대구·경북 지역통합 현안에 대한 질의 (이상식위원)

○ 군위군 편입 이후에도 지속되는 일원화된 행정체제 구축 미비에 대한 지적 (이상식위원)

○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언론 대응에 대한 지적: 대구MBC 출입 거부 및 광고비 미집행, 신동아에 지급한 광고비 의혹 등 (위성곤위원)

○ 공군 비행장 이전 관련 구체적 재정 지원 계획 필요성에 대한 지적 (주호영위원)

○ 중앙정부와의 교류 부족에 대한 지적 (주호영위원)

○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대한 질의 (주호영위원)

○ 종전 위기관리병동 폐쇄 이후 현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병원 정신응급병상의 종전 운영과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 해당 사업 민간위탁 전후 운영 관련 비교평가 부재에 대한 지적 (권칠승위원)

○ 대구의료원 채용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미위촉 등 운영의 절차적 미숙에 대한 지적 (권칠승위원)

○ 난임센터 인력 이탈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질의 (권칠승위원)

○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 관련 국가철도공사와 대구시 간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 분쟁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센터장 선임과 관련하여 기획조정부장이 센터장으로 지원하는 등 채용 공정성 부족에 대한 지적 (양부남위원)

○ 과거 대구 문화예술 분야 예산 감축에 대한 질의 (이달희위원)

○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직 및 예산의 감축 등 위축된 대구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지적 (용혜인위원)

○ 동대구역 광장 사용 신청 기한 미준수 사례에 대한 질의 (서범수위원)

○ 업무 효율화 및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대구시 산하 공단 9개와 출연기관 3개의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의 예산과 인원이 증가한 바 소기의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지적 (서범수위원)

○ 반구천 암각화의 침수 방지와 대구·경북권의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중재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대책 마련의 필요성 지적 (서범수위원)

○ 대구MBC 취재거부 및 기자실 부스 회수 등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에 관하여 사과할 의향 여부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편차를 둠으로써 공적예산을 통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홍보비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광고비 선정기준의 법규·조례 명문화 및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대구TV에 업로드된 61건의 홍준표 전임 시장 영상이 공적인 시정 홍보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대구시 예산 3억원씩 지출되는 유튜브가 홍준표 전임시장의 대통령 선거를 위한 유용이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대구TV「공직선거법」위반 사안에 관해 수사와 관계없이 자체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발생시 수사와 관계없이 자체 내부감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할 의향 여부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향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공공사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의견 수렴방식을 개선할 계획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 등에 투입된 행정비용 및 비용발생에 관한 집행부 책임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동대구역 동상 문제 관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행정 신뢰도 회복 전략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홍준표 전임시장의 미만료 사퇴로 인해 발생하는 대구시민의 투표권 등 참정권의 제도적 제약 상황 등에 대한 평가 질의 (위성곤위원)

○ 민선8기 주요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바 이러한 우려에 대한 시각 및 시정의 연속성, 행정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조치 계획 질의 (위성곤위원)

○ 대구미술관 홍준표 전임시장 초상화 전시 경위 및 대구시 관여 여부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대구미술관장 선임 정보 비공개 관련내용의 즉시 공개 의향 여부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청년작가 전시회 폐쇄 결정 과정에 정치적 판단 혹은 외부의 압력 개입 여부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청년작가 전시회 폐쇄의 정당성 재검토 및 예술의 자유 침해 논란 관련 재발 방지책 마련 의향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전기차 보조금이 타 시·도 평균보다 부족한 상황임에도 시민들의 전기차 수요는 매우 높아 수요예측 실패로 보이는바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부족한 대구시의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대구 산업단지 태양광 산업 중단에 따른 보완대책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노숙인 복지사업 지방 이양으로 관련 대구시 재정 여건상 감당 가능성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자활시설의 사회 복귀 지원 기능 약화 여부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자립정착지원금이 감소한바 이러한 지원감소의 영향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이직률, 직업 만족도 및 해당시설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재활·요양시설 및 자활시설의 장애인 입소자 현황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노숙인 시설의 운영비 단가 차액 보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대구 취수원 확보 차원에서 대구와 구미 간 합의 불발 이후 현재까지 이전지가 미확정된바 향후 대책 유무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구미 해평 이전은 구미시의 반대, 안동댐 이전은 상주·의성군의 반대 등으로 어려운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대구 취수원 확보를 위해 구미시와의 협의 재개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의 입장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대구지하철화재참사 관련 현재 유족와 갈등에 대한 질의 (이달희위원)

○ 대구지하철참사 관련 특별법이 부재한바 해당 참사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이달희위원)

○ 대구지하철참사 추모사업 관련 유족 및 인근 주민인 팔공산상인회와의 갈등 해소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 (이달희위원)

○ 2001년 대구 자연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변경한 근거, 기본설계정책 변경을 야기한 생태환경 변화유무, 보행교설치에 대한 민원 유무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자료의 정보공개 가능성에 대한 질의 (용혜인위원)

○ 대구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디아크 문화관광활성화사업을 지금이라도 실시설계를 변경하여 조명 및 분수의 제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용혜인위원)

○ 홍준표 전임시장의 대구MBC 취재거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용혜인위원)

○ 대구MBC 관련 취재거부 지시가 없었던 경우 공보관실에서 취재거부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경위, 해당 공문을 발송한 담당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 (용혜인위원)

○ 대구MBC 소송 관련 공개대상인 정보임을 인지하고도 비공개하여 손해배상금을 발생시킨 담당자 상대 감사 및 구상권 청구 진행에 대한 질의 (용혜인위원)

○ 정보공개심의회 대면회의 원칙, 민간위원 비중 확대 필요성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질의 (용혜인위원)

○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한 사유 및 향후 공개 계획에 대한 질의 (용혜인위원)

○ 홍준표 전임시장의 대통령 선거 전 미국 출장비 세부내역을 비공개한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용혜인위원)

○ 홍준표 전임시장의 미국 출장비 세부내역 정보공개청구소송 관련 소송비 지출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질의 (용혜인위원)

○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을 철회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용혜인위원)

다. 인천광역시

○ 인천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인사 전반 재검토 필요 (한병도위원)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에서 문화공연 위주 지출을 조정하고,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평화교육 강화를 통해 기념·추모·교육 기능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 (한병도위원)

○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기간 중 발생한 정치적 성격의 집회 및 협력단체 활동을 점검하여, 행정의 중립성과 시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력단체 지정·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 (한병도위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인천시의 대응 및 청사 폐쇄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질의 (고동진위원)

○ 인천발 KTX 사업 지연 경위를 점검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고동진위원)

○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된 부정·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고동진위원)

○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잔여부지 추가 사용 규정 등 4자 합의의 타당성 검토 및 관할권 이관 등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 (모경종위원)

○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관련 시장의 입장변화 경위에 관한 질의 (김성회위원)

○ 이전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자의 정무직 임용 적정성에 대한 질의 (김성회위원)

○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 선거운동 동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 진행 상황에 등에 대한 질의 (김성회위원, 정춘생 위원, 이해식위원)

○ 4자 합의에 따라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수도권 매립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 (박덕흠위원, 박수민위원)

○ 수도권매립지 부지를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 (박덕흠위원)

○ 검단구·제물포구·영종구 신설 및 조정에 따른 재정 확보와 행정절차 정비를 위해 인천시가 적극 지원할 필요 (박정현위원)

○ 송도 국제도시 R2지구 개발사업의 특정 기업 특혜 의혹 및 반복적인 중단 경위에 대한 질의와 감사 필요성 제기 (박정현위원)

○ 내항 개발 및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현황에 관한 질의 (박수민위원)

○ 정치적 논란 소지가 있는 의견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발표한 행위가 선거중립 의무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 (신정훈위원)

○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투자 약속액 대비 실제 유입액 차이를 줄이기 위해 조기 자금 유입을 독려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기능 통합 및 전담 조직 구성 등을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 (고동진위원)

○ 신혼부부 대상 '천원 주택'의 도입 취지 및 정책효과에 대한 질의 (고동진위원)

○ 옹진군 단체장 관사 부활 및 운영비 지원 실태를 인천시 차원에서 관리하고, 관사 폐지·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조례 등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한병도위원)

○ 인천관광공사가 금고은행으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를 임직원 대출금리 우대 등 내부 편익이 아닌 공익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필요 (한병도위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의 실질적 재정 효과와 4자 합의로 인한 매립지 종료 지연 등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질의 (모경종위원)

○ 검단구에 대한 재정 지원과 북부권 종합계획 등 검단지역 발전을 인천시가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필요 (모경종위원)

○ 북부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북부권 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 재검토 필요 (모경종위원)

○ 연수구청 데이터센터의 전산실과 배터리실 공간 분리 및 화재대응 설비를 확충할 필요 (김성회위원)

○ 관내 공공·민간 데이터센터의 리튬이온배터리 및 소화설비 현황을 조사하고, 리튬이온 특성에 부합하는 소화시스템으로 교체를 유도하는 등 민·관 합동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김성회위원)

○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를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할 필요 (박덕흠위원)

○ F1 그랑프리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타당성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 (박덕흠위원)

○ 인천시 출생정책 6종, 만18세까지 1억원 지원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 (박덕흠위원)

○ F1 그랑프리 유치로 인한 재정 부담 및 환경 문제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 (박정현위원)

○ 2026년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인천시 및 10개 군·구에 전담 부서와 관련 조례, 민관협력 통합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하고, 조직·인력·예산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 (정춘생위원)

○ 인천의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도시철도 1·2호선 추가 연장, 3호선 신설, GTX 확충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포함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향에 대해 질의 (박수민위원)

○ 고위기 청소년·신취약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반영한 세대·계층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 (박수민위원)

○ F1 그랑프리 유치와 관련하여 도심형 서킷(인천)과 별도 경기장 서킷 간의 차이와 경제성을 포함한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 (박수민위원)

○ 인천시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크루즈 관광객 유치 정책 기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중국 관련 정치권 발언이 관광·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 (이해식위원)

○ 제물포 르네상스 항만 재생 사업의 주요 랜드마크 설계가 해외 사례와의 유사성 논란을 감안하여, 제물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이해식위원)

○ 최근 발생한 맨홀 질식·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 조치 및 재발 방지를 포함한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 (신정훈위원)

○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검단 등 매립지 직접 영향권에 우선 사용되도록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성 취지에 맞게 집행할 필요 (모경종위원)

○ 부흥119안전센터와 공항119안전센터의 근무여건 개선 및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건축 등 대책 마련 필요 (박정현위원)

○ 인천도시공사 등 시 산하 공공기관의 관급공사에서 임금·대여대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 관리 강화 및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정춘생위원)

○ 인천시가 특정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규모와 비중이 타 기관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와 관련 예산 집행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이해식위원)

○ 검단신도시 다목적체육관이 주민 체감형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LH·서구청이 협력하여 추가 재정 확보 및 주민 참여 기반의 설계 보완안을 마련할 필요 (모경종위원)

○ 상상플랫폼의 운영 및 재정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임대·입주 계약의 공정성 감사, 안전 개선 및 방문객 접근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개선 조치를 시행할 필요 (모경종위원)

○ 인천관광공사 직원 부당징계 확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 (모경종위원)

○ ‘도도하게 살아보기’ 사업이 체류형 섬 관광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특정 단체 중심 운영을 지양하고 사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 (모경종위원)

○ 인천시 공공기관장 후보자 검증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기준 정비 필요 (모경종위원)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시 들개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모경종위원)

○ 인천환경공단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퇴직 공무원 중심 인사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조직문화 개선 및 내부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모경종위원)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 신설 및 외부 독립 감사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 (모경종위원)

○ 검단지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과 하천 정비사업을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 체계를 수립할 필요 (모경종위원)

○ 청년 대상 국제협력사업 추진 시 참여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안전 관련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 (모경종위원, 이해식위원)

○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용지 및 물류유통시설용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 (모경종위원)

○ 검단 교통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확충 및 연결성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 (모경종위원)

○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모경종위원)

○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하여 해상풍력 인허가 기록 관리를 체계화하고, 중앙정부 및 권역 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 (박정현 위원)

○ 영흥 화력 부지를 '석탄-암모니아 혼소'가 아닌 재생에너지 인프라 허브로 전환할 필요 (박정현위원)

○ 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 (이해식위원)

○ 청년 해외활동 사업에 대해 사전 안전심사제 도입, 외교부·행안부 협의 절차 의무화, 위험지역 활동 제한 가이드라인 신설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 (이해식위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긴급 심야 운행 복원, 앱 활용 배차 시스템 시범 운영, 이동권 관련 예산 상향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한병도위원)

○ 인천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시행사가 약속한 공공기여금 중 일부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에 사용된 경위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질의 (한병도위원)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입주 기업들의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 사업 추진 필요 (고동진위원)

○ 섬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예산 확충 및 의료시설 접근성 개선 필요 (고동진위원)

라. 대전광역시

○ 비상계엄상황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공식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 및 충청권 시도지사 시도당위원회 결의문에 대한 대전광역시장에 입장에 대한 지적 (정춘생위원)

○ 대전광역시 도심을 통과하는 3개의 국가하천의 준설 시 시민들과의 소통 및 친환경 준설 필요성에 대한 지적 (박수민위원)

○ 지방재정에 대한 소비쿠폰의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의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질의 (박수민위원)

○ 비상계엄 당일 청사로 출근하지 않은 점 및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면회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지적 (이해식위원)

○ 지방언론에 대한 편향된 시각 및 편향된 언론관에 따른 광고비 등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 (이해식위원)

○ 비상계엄에 대한 동의여부 및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공무원 헌법상 정치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지적 (채현일위원)

○ 보수집회 참석 시 관용차 사용여부에 대한 지적 (채현일위원)

○ 소위 대전판 리박스쿨이라 불리는 넥스트클럽에 대한 내부감찰 필요성 및 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 (채현일위원)

○ 취임 이후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축소에 대한 지적 (채현일위원)

○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전광역시만 공약이행평가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지적 (채현일위원)

○ 대전광역시장이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한 발언 및 비상계엄 당일 출근하지 않은 행적에 대한 지적 (모경종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신고된 전기공사업 업체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고동진위원)

○ 대전광역시 0시축제의 방문인원 추정 방식(무인계수기 방법)의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정확한 추정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 (김성회위원)

○ 0시 축제의 공동주관기관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기존에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던 기부금을 0시 축제 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 (김성회위원)

○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예타 중간 결과가 초기 예측치와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지적 (박덕흠위원)

○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복지사업 예산이 0시 축제 지원과정에서 감소된 상황에 대한 지적 (한병도위원)

○ 대전광역시 채무 및 지방채 발행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적성 홍보예산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 (신정훈위원)

○ 소극적인 예산추계에 따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추경예산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편법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 (신정훈위원)

○ 대전광역시가 법적 의무사항인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지적 (정춘생위원)

○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및 D-도약 펀드 등 벤처기업 활성화 전략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지적 (박수민위원)

○ 예비타당성조사가 철회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의 생산유발효과 추산의 부적절성 및 미분양 시 100% 매입보증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 (이해식위원)

○ 대전광역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사업예산 및 사업계획 적절성에 대한 지적 (이해식위원)

○ 대전 서구의 전임·후임 비서실장과 관련된 입찰비리,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감찰 필요성에 대한 지적 (채현일위원)

○ 대전광역시 0시축제와 관련된 시민들의 만족도 및 주민불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채현일위원)

○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관 선정 시 기관 평가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 (모경종위원)

○ 도시철도 2호선 신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고동진위원)

○ 최근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다하게 귀속되게 설계된 대전시 안산첨단 국방산업단지 사업구조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 되었는데,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고동진위원)

○ 대전광역시의 소방대원 피복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므로 이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병도위원)

○ 대전광역시장의 국회해산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 (박정현위원)

○ 넥스트클럽의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의 적절성 및 재위탁 제한 필요성에 대한 지적 (박정현위원)

○ 폐지된 NGO 지원센터 조례,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의 복원 필요성에 대한 지적 (박정현위원)

○ 대전광역시 채무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전광역시장의 입장에 대한 지적 (박덕흠위원)

○ 옥천 광역철도 등 정책결정이 완료되어 이행 중인 SOC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박덕흠위원)

○ 도로변 가설건축물의 안전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성회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시 대전광역시장의 현장 대응과 관련한 지적 (채현일위원)

○ 대전광역시가 발주한 건설사업의 임대료 체불에 대한 점검 필요성에 대한 지적 (정춘생위원)

○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위탁관리하는 하나시티즌에 대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음 (모경종위원)

○ 유등교 가설교량의 중고 복공판 문제에 대한 대책 관련 질의 (모경종위원)

○ 디트뉴스24 광고비 지급 중단 관련 질의 (모경종위원)

○ 보문산 옛 케이블카 캐빈관리 관련 질의 (모경종위원)

○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발주용역 및 공공계약 노동자 대상으로 포함하고,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생활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한 입장 및 예산소요 관련 질의 (박정현위원)

○ 대전광역시의 조직 및 산하기관에 대해 재량지출 사업비를 10% 이상 삭감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10% 이상 삭감된 사업 목록·예산·삭감률·삭감사유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대전 도시공사 재정 건전성 제고방안에 관한 질의 (박정현위원)

○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관한 질의 (박정현위원)

○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인 넥스트클럽이 리박스쿨과 연관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특정감사 필요성 관련 질의 (박정현위원)

○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건립 관련 자료(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마스터플랜 우수작 및 선정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기업입주 수요를 확보할 구체적 방안에 관한 질의 (이해식위원)

○ 제2문화예술복합단지에 대한 대전시민, 지방의회 등의 여론과 여론수렴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노력에 관한 질의 (이해식위원)

○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건립사업의 구체적 향후 계획에 관한 질의 (이해식위원)

○ AI·데이터 직렬 공무원 충원 필요성에 관한 질의 (한병도위원)

○ 임기제공무원제도의 상시직화 문제에 관한 질의 (한병도위원)

○ 유등교 가설교량의 안전성 우려에 대한 대책 관련 질의 (한병도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일성계전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조치 및 점검 필요성에 관한 질의 (고동진위원)

○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28년간 지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업비 폭증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 관한 질의 (고동진위원)

○ 민주당 시정동안 사업방식이 민관개발에서 LH공영개발으로 변경되고 다시 SPC민관합동개발로 변경된 사안에 관한 질의 (고동진위원)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 시절 설립된 SPC에 대전시·대전도시공사가 공공출자자로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사례가 맞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고동진위원)

○ 전임시장의 사업 추진력·방향성 설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고동진위원)

○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질의 (고동진위원)

○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의 발생원인에 관한 질의 (정춘생위원)

○ 건설기계 임금 체불에 대한 대책 관련 질의 (정춘생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집행 문제점에 관한 질의 (정춘생위원)

○ 대전충남세종항운노조의 하역비 인상 요구에 대한 대전중앙청과 대표의 거부의 적절성에 대한 증인 신문 (김성회위원)

○ 하역비 인상을 요구하며 하역을 중단하고 집회를 개최한 항운노조를 견제하기 위하여 노은물류를 설립한 행위 등에 대한 지적 (박정현위원)

마. 세종특별자치시

○ 하천변 진입 차단 시설이 낮게 설치되는 등 형식적인 통제로 인해 인명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 (권칠승위원)

○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종형 상권분석 시스템 구축 계획이 없는 등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서범수위원, 이광희위원, 용혜인위원)

○ 수해 실종사고 당시 소방·경찰과의 정보 공유 미흡으로 재대본이 사고를 23시간이나 늦게 인지했다는 지적 (양부남위원)

○ 실종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외 출장을 강행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양부남위원)

○ 시장의 행보를 비판한 언론사에 대해 광고 중단 압박을 가하는 등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 (양부남위원)

○ 수해 실종사고와 관련하여 대책본부 구성 단계에서부터 소방이 참여하여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한 지적 (양부남위원, 이광희위원)

○ 세종보가 정치 논리에 따라 멈췄다가 재가동을 위해 30억 원을 들여 수리했음에도 여전히 가동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세종시민의 재가동 요구를 반영한 추진 여부를 질의 (이달희위원)

○ 세종시 안에 위치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추진과 관련해, 국유지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질의 (이달희 위원)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계약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성과평가 결과가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여 부결을 초래했다는 지적 (용혜인위원)

○ 계엄 직후 '탄핵은 과도하다'는 등의 발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 세이브 코리아 집회 참석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와 집회 참석 시 관용차를 사용하고 직원을 동원한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이광희위원)

○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지 않는 등 탄소중립 정책이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 크린넷 내구연한 만료 시점에 맞춘 단계적 철거 및 시스템 전환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지적 (위성곤위원)

○ 세종시 전역 상권을 공식·매출·순이익 기준으로 분류하여 하위 20% 구역은 진입 경보지역으로 지정하고 예비창업자에게 알려주는 방안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근 대전이나 조치원 등으로 이동하는 탓에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 K-마이스터·그린랩 산업단지 추진 과정의 이해충돌 및 인사관리 책임 문제에 대한 지적 (윤건영위원, 위성곤위원, 이광희위원)

○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 및 임용 시 블랙리스트 관여 전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자기검증기술서를 심사위원에게 미제공하였다는 지적 (윤건영위원, 이광희위원)

○ 세종시에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 폭우로 급류에 휩쓸린 사고를 극단적 사고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세종보의 목적이 오리배를 띄우는 등 단순 경관용이며, 철거하는 것이 경제성·환경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지적 (이광희위원)

○ 2024년 산업재해가 16건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안 검토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 (이광희위원)

○ 수해 실종사고와 관련하여 재해대책본부에 소방인력을 참석시켜 상황 보고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지적 (양부남위원)

○ 문화관광재단 대표 공모 관련 감사원 결과(중징계)와 다르게 경징계 처리한 이유에 대한 지적 (이광희위원)

○ 국회에서도 감사원을 국회 소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관으로 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테니스팀의 성적 유지에도 불구하고 해체한 것이 단순히 재정문제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체육진흥기금 기부 약정서 관련 설립되지 아니한 유도팀의 유도선수 육성과 운영을 위한 기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기부자가 기부한 해에 관급자재 계약 현황이 급등하였는데, 해당 현상이 기부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기부금 모금 시 기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및 체육회가 기부금 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체 이사회 의결로만 사용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중대재해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연평균 6~7건이던 산업재해가 2024년 16건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의 추진사항 여부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세종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산의 작년 집행률이 안전보건 분야는 상대적으로 집행이 저조한데, 예산 과다 편성인지 사업률 저조인지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심사위원에 특정 정당 당직자들을 위촉하여 전문성 없는 특정 정치성향의 단체가 선정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 (용혜인위원)

○ 노숙인 복지사업 지방 이양 이후 세종시 부담 예산 급증에 대한 대책 지적 (이광희위원)

○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이직률이 급증하고 운영비 단가가 타 복지시설 대비 낮아 운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 (이광희위원)

○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한계로 인한 세종시의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주호영위원)

○ 정권에 따라 세종보 개방·가동 방침이 바뀌면서 세금이 낭비되고 지역 농민들이 용수 확보에 고통받고 있으므로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 (주호영위원)

○ 사업수요 증가세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의 조속한 개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주호영위원)

바. 경기도

○ 외국인 혐오·차별 및 부정선거 관련 시위가 확산되는 문제에 관한 대책 및 방지 방안 질의 (정춘생위원)

○ 북한 오물풍선 살포 및 확성기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 피해지원 및 주민 보호방안 질의 (정춘생위원)

○ 과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입, 기금 차입에 따른 융자 부담 등으로 인한 경기도 재정부담 우려 지적 (이달희위원, 주호영위원)

○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정부담 우려,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사업 집행 필요성 지적 (이달희위원, 주호영위원)

○ 경기도 탄소중립목표 이행 부진 관련 수송부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필요, 건물부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물 에너지 열 부분 탄소중립정책 마련 필요 (위성곤위원)

○ 2026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의향 질의 (이상식위원)

○ 2026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선거구 획정시 인구비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수가 책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결정할 필요 (이상식위원)

○ 경기도 소방인력·장비 현황 질의 (이상식위원)

○ 경기도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 지적 및 소방관 처우 개선 필요 (이상식위원)

○ 불법 사금융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전담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에서 관련 범죄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경찰 신고 건수가 저조한 문제 지적 (이광희위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시 당초 지방비 부담비율(20%)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 지적 (이성권위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매칭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타 사업비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문제 지적 (이성권위원)

○ 경기도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관련, 사업 진행시 의견수렴 확대, 은둔형 청년 참여 고취, 지능검사 결과를 사업참여자 조건으로 요구하는 진입장벽 해소, 도 산하기관·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한 경계선지능인 일경험처 제공 필요 (권칠승위원)

○ 화성시 소방서당 관할 인구는 약 100만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소방 수요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가하는 문제 지적 (권칠승위원)

○ 경기도 전산실 내 UPS 배터리 노후화 지적 및 관리 필요 (이해식위원)

○ 경기도 전산실 내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및 재난복구시스템 구축 미흡 지적 (이해식위원)

○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UPS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 (이해식위원)

○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경기도 차원의 감사 실시 및 개발부담금 부과 방안 검토 필요 (이해식위원)

○ 양평 공흥지구 특검 수사 관련, 단월면장 사망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 (주호영위원)

○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부담금 부과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아닌 부담금 부과 제도 자체의 문제로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 (박덕흠위원)

○ 경기도지사 관련 인사혁신처장의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 중 한명이라는 공공연한 악평은 공직 사회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 (서범수위원)

○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이 경기도 공무원 근무 시절로 추정되는 시기에 선거 자금 모금과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되었으므로 공무원 중립성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필요 (서범수위원)

○ 경기국제공항 유치 자문위원의 경기국제공항 전략수립 연구용역 낙찰 관련 입찰비리 의혹 및 연구용역 객관성·공정성 저하 우려 지적 (용혜인위원)

○ 대북전단 살포 관련 특별사법경찰단의 순찰 활동 현황 및 대북전단 순찰 활동 상황 허위 보고 의혹 질의 (윤건영위원)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가동을 위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 필요성 지적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공급 계획의 부적절성 지적 (고동진위원)

○ 용인 반도체공장 설립에 따른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의 시도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 지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대응 차이 지적 (한병도위원)

○ 경기도 기후보험 도입의 취지 및 현황, 전국적 확대 필요성 및 방안 질의 (한병도위원)

○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으로 인한 공사중단 문제 해결 방안 질의 (김성회위원)

○ 고양시장의 고양시 신청사 건립 계획 백지화 및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 추진 정책 지적, 경기도의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 반려 입장 확인 (김성회위원)

○ 의정부에 지방법원이 위치하여 있으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기 북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지적 (김성회위원)

○ 동탄 연인 납치·살인 사건 관련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 현황 및 성과 질의, 젠더폭력 통합대응단과 경찰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필요성 지적 (신정훈위원)

○ 극저신용대출사업의 현황 및 언론 비판 내용에 대한 질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지적 (신정훈위원, 한병도위원, 김성회위원)

○ 극저신용대출 연체자 등에 대한 탕감 필요성 지적 (박덕흠위원)

○ 경기도 RGDP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고 고용률은 하락하며 실업률은 상승하고, 소상공인 생존율 하락, 부채는 증가하는 추세 지적 (박수민위원)

○ 정부의 부동산 10·15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악영향 우려, 취득세 감소로 인한 경기도 지방재정 여건 악화 우려, 10·15 대책의 한계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경기도 내 지반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위험지역 관련 안전지도 제작 필요 지적 (모경종위원)

○ 경기도 내 침수흔적, 지진발생이력, 홍수위험, 하천범람, 가뭄취약 등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활용·취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지적 (모경종위원)

○ 경기도 RE100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3종 세트 관련, 경기도 기후보험에 대한 평가 및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보험과의 연계 질의 (박정현위원)

○ 경기도 기후보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경기 북부 산불 관련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경기도 내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 심화 문제 지적, 119구급대 등이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 (양부남위원)

○ 119구급대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 지적 (정춘생위원)

○ 2026년 3월부터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나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이 미흡한 상황에 대한 지적 (정춘생위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외에도 이중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 (정춘생위원)

○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업무 과다 문제, 처우 개선 필요성 지적 (이달희위원)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관련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 지적 (이달희위원)

○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도내 정책 현황 질의 (이달희위원)

○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현황 및 2026년도 예산액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및 평가, 전국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충남 부여군의 사례와 같이 지역화폐를 1회성 결제 외에도 가맹점 간 재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내 화폐로서 기능하고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위성곤위원)

○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하여 철도망·도로망 건설이 필요하므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및 경기남부 반도체선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예산 당국과 협조 필요 (이상식위원)

○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국도 45호, 국지도 57번, 국지도 82번, 지방도 321번 확장 또는 신설 필요 (이상식위원)

○ 용인시 이동·남사읍 일대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변동 우려 지적 (이상식위원)

○ 용인 반도체공장 설립에 따른 전력 공급 문제, 주한미군 공여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박수민위원)

○ 미국 관세협상으로 인한 경기도 내 기업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내 관련 정책 현황 및 대책 질의 (이상식위원)

○ 주 4.5일제 도입 관련 경기도 시범사업 현황 질의, 시범사업 참여 공공기관 확대 필요성 지적 (이광희위원)

○ 주 4.5일제 도입 관련 경기도 시범사업 참여 기업의 대표성, 성과지표, 환류방안에 대한 질의 (양부남위원)

○ 거북섬 사업의 공실률, 방문객, 유동인구 통계 및 활성화 대책 관련 질의 (이성권위원)

○ 양평 공흥지구 하수처리장 특혜의혹 관련 질의 (권칠승위원)

○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이전 필요성 지적 (권칠승위원)

○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는 별개로 신속하게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 지적 (이해식위원)

○ 노동자 산재사고 사망 감소를 위하여 근로감독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질의, 경기도 내 시범사업 필요성 지적 (이해식위원)

○ 경기도지사가 기재부 장관 재직 시절 재난지원금의 소비 연결 계수가 높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 현금 살포식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만큼 재난지원금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 (서범수위원)

○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공공기관 이전 관련 반대 여론, 이전 시 기존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 (서범수위원)

○ 하남 유니온파크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노동 환경 실태조사 현황 질의 및 대책 마련 필요성 지적 (용혜인위원)

○ 환경기초시설 지하화 계획에 대한 우려 및 재검토 필요성 지적 (용혜인위원)

○ 경기북부 접경지역 내 말라리아 환자 증가 문제 및 남북 공동 방역 필요성에 대한 질의 (윤건영위원)

○ 경기도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관련 분양가, 인프라 조성 방안에 대한 질의 (고동진위원)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질의 (한병도위원)

○ 경기도 기회소득의 현황에 대한 질의 (박덕흠위원)

○ 경기도 채무 증가의 원인에 대한 질의 (박덕흠위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도비 투입에 대한 질의 (박덕흠위원)

○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서울-경기-인천-환경부 간 4자 협의체 합의 내용 질의 및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지적 (모경종위원)

○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 과로사, 업무량 증가 등 인력난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관리지침의 공공기관 총정원 관리기준을 공무원 정원 증가율과 연동하고 있으므로 적정 인원 산출이 필요하다는 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경기도 채무 증가 관련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급공사 건설기계 조종사 임금체불 현황 지적 (정춘생위원)

○ 공공행정 AI 활용 관련 AI 활용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경기도 AI 책임관 지정 필요성 지적 (위성곤위원)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대상 및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질의 (이광희위원)

○ 고양 K-컬처밸리 조성 사업 지연, 민간사업자 재공모 현황에 대한 질의 (서범수위원)

○ 안산 ITS 구축 사업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청탁 의혹,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의 (용혜인위원)

○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부실운영, 수익 편취, 횡령 의혹 및 운영대행사 선정 이유, 운영대행사 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 (고동진위원)

○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운영대행사 입찰 과정·방식, 직불카드 수수료에 대한 질의 (박덕흠위원)

○ 지역사랑상품권의 관리업무를 한국조폐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 (고동진위원)

○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단지 조성 관련 상생협약 현황, 하천·도로망·농산물 납품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양부남위원)

○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송전선로 설치 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 (양부남위원)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시 전력 공급, 송전 선로 및 변전소 등 송전 문제, 국토균형발전과의 부합 가능성, 지방 이전 필요성에 대한 지적 (신정훈위원)

사. 강원특별자치도

○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강원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여부, 아파트 과잉 공급 우려 관련 질의 (이광희위원, 이성권위원, 권칠승위원)

○ 강원도 내 인구감소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관련 재정 지원 확대 필요 (용혜인위원)

○ 강원연구원 승진 비리 등 불공정 인사 관련 질의 (용혜인위원)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질적인 규제 해소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필요 (이달희위원)

○ 현재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에 대한 강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관리 방안 및 운영 노하우 공유 필요 (서범수위원)

○ 전국 케이블카 시장 포화 상태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고려, 오색케이블카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 지적 (양부남위원)

○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및 금융 시장 혼란 관련 질의 (양부남위원, 윤건영위원)

○ 명태균에 대한 도정 자문·협의 여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질의 (양부남위원, 윤건영위원)

○ 강원도 내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 문제 인식 및 대책 관련 질의 (이성권위원)

○ 망상1지구 개발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의혹 관련 질의 (이상식위원)

○ 시멘트 공장 오염물질 배출 및 주민 피해 관련 대기오염 방지 시설 의무화 필요 (위성곤위원)

○ 영동 지역 가뭄 반복에 따른 근본적인 대체 수원 확보 대책 필요 및 물재이용량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 강구 필요성 제시 (서범수위원, 권칠승위원, 용혜인위원, 윤건영위원)

○ 강원도 내 공공의료시스템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의료진 이탈 가능성 관련 질의 (이광희위원)

○ 민생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비 매칭 문제 관련 질의 (이달희위원)

○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하락 관련 대책 마련 필요 (양부남위원)

○ 대형 산불 발생시 대응을 위한 소방헬기 도입 필요성 관련 질의 (이상식위원)

○ 산불 발생 시 지휘체계 공백 사태 관련 질의 (위성곤위원)

○ 도민의 건강을 위한 시멘트 공장 대책 관련 질의 (위성곤위원)

○ 정치·행정 분리원칙의 선택적 적용 여부 및 엄중 처벌 표현의 근거 관련 질의 (위성곤위원)

○ 출자·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운용 관련 질의 (이광희위원)

○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한 견해 관련 질의 (이성권위원)

○ 정주인구 150만 명 유지, 생활인구 45만 명 유치, 우수외국인 5만 명 유치 전략 관련 질의 (이성권위원)

○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 강원도 청년정책 중 중점 추진사업 관련 질의 (이성권위원)

아. 충청남도

○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충남도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충남도지사가 이 시기에 해외 출장을 가야 했던 이유를 도민에게 설명할 필요 (한병도위원, 박정현위원, 채현일위원)

○ 충남지역의 만성적인 물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천댐' 건설을 추진할 필요 (박덕흠위원)

○ 아산만 일대 베이밸리 개발사업 및 충남의 주4일제 근무제 운영상황에 대한 질의 (박덕흠위원)

○ 충남도지사의 해외 출장비용이 다소 과도하게 보일 소지가 있다는 지적 (김성회위원)

○ 충남도지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에 광고비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박정현위원, 김성회위원, 이해식위원, 모경종위원, 채현일위원)

○ 충남도가 정책결정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정무수석 보좌관 2급 상당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한 사실에 대한 지적 (이해식위원)

○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대한 충남도지사의 견해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충청남도 내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역소멸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충청남도의 스마트팜을 통한 월 500만 원 수익 보장 및 고령은퇴농 연금 제도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12.3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에 대한 충청남도 도지사의 견해 질의 (정춘생위원)

○ 정부가 추진하려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충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 지적 (고동진위원)

○ 충남도 민간폐기물매립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모경종위원)

○ 해외 출장중 사적인 자리에서의 충청남도지사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지적 (채현일위원)

○ 충남도지사가 지천댐 관련 청양군과의 갈등으로 인해 청양군 추가경정 예산을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안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 도의회에서 부결되자 담당 보건복지국장을 즉각 대기발령 사안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 (채현일위원)

○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인 신청을 전체로 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신정훈위원)

○ 충청남도의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및 임신·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100%까지 특별공급 정책 등에 대한 질의 (박덕흠위원)

○ 충청남도의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및 금강수목원의 민간매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김성회위원)

○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해식위원, 박정현위원)

○ 충남 국립의대 설치 계획 및 충청남도의 스마트팜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충남연구원장으로 임명한 인사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 (정춘생위원)

○ 충남-대전 행정통합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론화 과정상 절차적인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필요 (고동진위원)

○ 폐기물처리시설 및 매립장과 같이 폐기물반입 처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논의에 충청남도도 적극 동참할 필요 (모경종위원)

○ 응급시설인 달빛어린이집 확대 및 금강수목원 재개방 필요 (모경종위원)

○ 충남연구원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특정 정당의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 (채현일위원)

○ 서산중앙도서관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고 주차장 사업으로 뒤바뀐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신정훈위원)

○ 충청남도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 돌봄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할 필요 (정춘생위원)

○ 충청남도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통해 지역산업발전을 촉진할 필요 (고동진위원)

자.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로 변화함에 따라 나타난 정책, 제도, 예산 등의 변화에 대한 질의 (정춘생위원)

○ 고창·정읍 등 인구감소지역 관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저조한 집행률 및 해당 기금 활용을 위한 사업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 (정춘생위원)

○ 부족한 송전망 전력계통에 대한 지적 (고동진위원)

○ ESS 배터리 관련 유지·관리 매뉴얼 및 전문관리인력 부재에 대한 지적 (고동진위원)

○ 5극3특 전략의 의의에 대한 질의 (모경종위원)

○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유출 관련 대책에 대한 질의 (모경종위원)

○ 인구유출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지적 (모경종위원)

○ 청년층의 정주 여건 확보, 의견 수렴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 (모경종위원)

○ 2036년 하계올림픽 후보지로서 전주시에 대한 질의: 개최의 의미, 타 후보지와의 차별성 및 경쟁력, 부족한 교통 및 숙박 인프라에 대한 대책, 재정 확보 방안 (채현일위원)

○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 관련 진행 부진에 대한 지적 (채현일위원)

○ 전북의 재정분권 확대에 필요한 정책, 제도개선에 대한 질의 (채현일위원)

○ 주 4일제를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질의 (박덕흠위원)

○ 새만금 신공항 추진 기본계획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된 사안에 대한 질의 (박덕흠위원)

○ 새만금 신공항 추진 사업 관련 재판과정에서 지적받은 서천갯벌 및 수라갯벌이 대한 악영향, 경제성 부족 등에 관한 보완방안 질의 (박덕흠위원)

○ 남원 오리정 개발사업, 무주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의 관광객 부족 등 동부권 특화발전 산업 성과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 (박정현위원)

○ 전북 내 균형성장 관련 서남권 개발 부족에 대한 지적 (박정현위원)

○ 관계인구 확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주인구가 감소하는바 해당 현상 관련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 (신정훈위원)

○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 관련 질의: 원고적격 인정범위, 조류 충돌 위험성, 경제성 부족 여부 (한병도위원)

○ 전주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해당 준비사업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미포함된 점에 대한 지적 (박수민위원)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이 전주로 이전한 이후 높은 이직률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지적 (박수민위원)

○ 지방재정 확충 문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권 부족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선정 관련 진행현황에 대한 질의 (이해식위원)

○ 5극3특 전략 관련 전북이 광주·전남과의 융합이 아닌 독립적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 (이해식위원)

○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후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가 방치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지적 (김성회위원)

○ 새만금 대규모 관광레저용지 개발 지연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 (김성회위원)

○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됨에 따라 나타나는 행정의 불연속성에 대한 지적: 남원시 모노레일 테마파크 사업 중단, 순창군 추모공원 부지 선정 번복 등 (신정훈위원)

○ 식품사막화 현상 관련 지원대책에 대한 질의 (정춘생위원)

○ 지역사회 돌봄 관련 조례 및 전담부서 미비 등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 (정춘생위원)

○ 익산시 로컬푸드협동조합 운영권 계약해지 요청 관련 증인 신문 (박덕흠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전북연구원에 재난 관련 연구 전담부서 부재 등 재난관리 미비에 대한 지적 (고동진위원)

○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 수립 지연에 대한 질의 (고동진위원)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의 부진한 평가 지속, 도 내 공무원 및 기관 뇌물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10건이 넘어가는 등 공직 기강에 대한 지적 (모경종위원)

○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에 대한 질의 (모경종위원)

○ 완주·전주 통합 관련 전북의 입장에 대한 질의 (채현일위원)

○ 기본소득 관련 도정철학,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 등에 대한 질의 (채현일위원)

○ 높은 화재 발생건수가 나타남에도 구조구급과, 교육훈련과가 부재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조직규모가 과소하다는 지적 (박정현위원)

○ 소방관 피복비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적: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소한 피복비, 특정 업체의 과도하게 높은 계약 점유율, 피복 품질 문제 등 (한병도위원)

○ SMR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전북특별법 개정안 관련 전북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전북사랑도민증 사업에서의 과도한 목표설정에 대한 지적 (이해식위원)

○ 전주시설관리공단 채용시 정규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최종 합격자 선정, 응모자격 미달 공단본부장 임명 등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적 (이해식위원)

○ 침수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중점관리구역 지정 미비에 대한 지적 (김성회위원)

○ 지방소멸지역 내 추가적인 재정에 대한 자부담 능력 증진 사례에 대한 질의 (신정훈위원)

○ 도내 배전계통의 여유용량 활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제한 완화와 지역별 여유용량 반영에 관하여 공식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모든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어 재생에너지 신규접속이 2031년까지 제한된바 지역에너지 사업자 및 산업유치 차질에 대한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에 ESS 확충 및 계통관리 변전소의 지역우선 해제에 관하여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과도하게 보장되어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이 제약받고 있는바 해당 문제에 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박정현위원)

○ 목표인원까지 제시하는 등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에 있어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점에 대한 지적 (이해식위원)

○ 전북사랑도민증과 관련하여 실효성 확인이 가능한 지표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바 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 (이해식위원)

○ 자치경찰제의 전북 지역 시범실시를 위해 경찰청과의 협의 유무에 대한 질의 (이해식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법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꽃정원 조성과 같은 단기성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 (이해식위원)

○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성과등급 평가결과에서의 부진한 결과에 대한 질의 (이해식위원)

○ 2013년 설치된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역할부재 및 2023년 상설화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운영에 대한 질의 (한병도위원)

○ 전북연구원 내 재난안전 전담조직 미설치 사유에 대한 질의 (고동진위원)

○ ESS 화재 관련 태양광의 전력 발전량을 전력계통이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과도하게 해준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질의 (고동진위원)

○ ESS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매뉴얼 유무에 대한 질의 (고동진위원)

차. 경상남도

○ 우주항공수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국회와 협력하고, 관련 단지 유치를 위해 정부를 설득할 필요 (이달희위원)

○ 진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 (이상식위원)

○ 탄소제로 시대를 대비하여 고부가가치 조선기자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필요 (이상식위원)

○ 경남 내 의료취약지대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이상식위원)

○ 창원소방본부와 도 소방본부가 분리된 상황에서 소방본부 간 협업, 소통 대책을 마련할 필요 (이상식위원)

○ 창원NC파크의 구조물 낙하 사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유관기관 회의에도 불참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인 창원시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책임을 방관한 것이라는 지적 (윤건영위원)

○ 민선 7기와 비교하여 8기에 개선된 사항 및 개선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질의 (주호영위원)

○ 산불, 호우 피해 복구 과정에서 공공시설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행정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서범수위원)

○ 경상남도의 전문진화차 보유 현황, 헬기 조종사·정비사 현황 등이 저조하므로 산불 진화 장비를 확충할 필요 (서범수위원)

○ 부산, 울산 등 인근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행정통합 등 행정체계 개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서범수위원)

○ 산청군에서 발생한 직원 대상 갑질 사건에 대한 경징계 요구는 부적절하므로 도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질 필요 (양부남위원)

○ 산불 대응을 위해 전문진화대 등 인력의 전문화 및 교육이 필요하며 노후화된 헬기를 현대화하는 등 장비 현대화가 필요하고 감시체계와 AI, 드론과의 통합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 (양부남위원)

○ 지사가 부가세 없이 500만원의 무자료 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용혜인위원)

○ 거제남부관광단지와 관련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 작성, 대흥란 등 법정보호종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를 철회하고 경상남도지사가 환경부에 직접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건의할 필요 (용혜인위원)

○ 도의 관광수입을 제고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중화권 여행사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할 필요 (권칠승위원)

○ 현재 산업재해예방위원회가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 취수원 다변화로 인해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이 중지된 것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 박완수 경남지사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 및 명태균 증인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질의

- 박완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외 자택을 찾아 박완수 의원을 경남도지사 후보로 추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광희위원, 권칠승위원, 윤건영위원)

- 거제도 저도 대통령 휴가 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약속 및 충성 맹세가 있었는지 여부 (양부남위원)

- 박완수 지사의 후보 확정에 명태균 증인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용혜인위원, 이성권위원, 권칠승위원, 윤건영위원)

○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질의

- 증인이 사전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지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 (이광희위원, 용혜인위원, 이상식위원, 위성곤위원)

-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방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이광희위원)

- 증인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광희위원)

-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경위 및 지정에 김영선 전 의원이 개입하였는지 여부 (이상식위원)

○ 남명학사의 명태균 씨 처남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 (양부남위원, 용혜인위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선 전 의원뿐만 아니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등도 명태균 증인이 만들어줬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에 관한 질의 (이광희위원)

○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및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

- 김건희 씨로부터 김상민 전 검사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양부남위원)

- 김영선 전 의원과 경남경찰청 인사에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이상식위원)

○ 강혜경 씨의 발언에 대한 진위 확인에 관한 질의

- 강혜경 씨가 명태균 증인이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대우조선 파업, 대통령실 인사 등에 개입하고 박형준 시장의 여론조사를 실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이성권위원)

○ 산청 산불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예방진화대원 및 공무원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화재 현장에 투입한 것에 도지사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 (용혜인위원)

○ 경상남도의 탄소중립 이행체계가 미흡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 경상남도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을 통해 이격거리를 완화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위성곤위원)

○ 창원NC파크 사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및 관련 예산 반영을 지도하고, 항목별 점검기준을 제대로 마련하며, 경남도가 종합대응 컨트롤 역할을 수행할 필요 (이광희위원)

○ 경상남도의 산불 및 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 및 보상 진행 사항에 관한 질의 (이광희위원)

○ 산불대응에 대한 현행 지휘체계에 초기 진화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이광희위원)

9. 공공기관

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관 명칭 및 공간 사용에 대한 시민사회 협의 관련 질의 (정춘생위원)

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마. 공무원연금공단

○ 석탄 분야 투자 배제 선언에도 불구하고 간접 투자가 유지되고 있는데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적연금이 되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위성곤위원)

○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숙박시설의 회원가가 일반가 대비 50% 수준이나, 실제 숙박 어플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일반인 요금과 큰 차이가 없어 공무원 대상 복지 혜택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광희위원)

바. 한국도로교통공단

○ 전북면허시험장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으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1종 대형면허 소지자 267명에 대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면허시험장에 상주하는 경찰공제회 소속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간호조무사만 동행해서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그 다음날 검진하지 않은 의사의 날인을 받았는데,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원실의 지적 이후 2025년 9월, 10월에 면허갱신자 267명의 신체검사를 재실시했으며, 도로교통공단은 그 이후 경찰청에 알렸고, 담당 직원 2명에게 감봉 1개월, 견책의 징계를 했는데 징계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징계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간호조무사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더 철저한 감사와 징계가 필요 (김성회위원)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상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예산은 모회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자회사 도로교통안전관리(주)는 급식비의 경우 정부지침 14만원 보다 낮은 10만원을 지급하고, 복지포인트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지급할 계획의 제출을 요청 (박정현위원)

○ 2020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는 모기관이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도로교통공단은 모회사, 자회사,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모·자회사·노사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였다가 현재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의 제출을 요청 (박정현위원)

○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현장관리자 및 행정인력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로교통공단은 자회사 현장관리자 및 행정인력 인건비를 자회사의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인건비 별도 편성과 관련된 계획의 제출을 요청 (박정현위원)

○ 도로교통공단은 차량유도원이 과업내용서 상 자격요건을 뛰어넘는 대형버스 차량 정기검사 업무에 필요한 외부지원을 지시했고, 향후 차량유도원이 정기차량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를 개정하겠다고 발언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획을 재고할 여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 (박정현위원)

○ 운전면허시험장의 차량일상점검 업무는 차량정비원이 담당하도록 과업내용서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차량정비원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자회사인 도로교통안전관리는 2025년 차량정비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아 차량유도원에게 차량 정비를 전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의 제출을 요청 (박정현위원)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면상태가 서리·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112건, 사망자 83명, 부상자 6,664건이 발생했고, 결빙사고는 매년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리·분석·예방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상의 위험요인을 예방·분석·개선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결빙사고를 포함한 계절성 재난형 교통사고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결빙사고 다발구간 지정제도 등을 신설하여 추진할 필요 (이성권위원)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0.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가. 서울경찰청

○ 서대문경찰서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에 대해 108명을 검찰에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의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 이후 최종적으로는 3명을 송치한 사례와 유명 먹방유튜버에 대한 스토킹·협박 협의에 대한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등 수사 내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수사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 (이성권위원)

○ 8월 30일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수사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 (정춘생위원)

○ 8월 28일 접수된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 등의 태도로 인해 서울경찰청에 대한 수사 기피 신청율이 경기남부경찰청보다 2배 높은 반면, 수사기피 인용률은 낮고, 보완수사·재수사 요청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관들의 공직 기강을 바로 잡고 수사 품질 및 완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위성곤위원)

○ 인구감소로 인해 초·중·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걱정 없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 경찰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 (이성권위원)

○ 캄보디아의 후이원그룹은 2021년부터 2025년초까지 세계의 불법 자금 5조 6,000억원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중 약 520억원 정도는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자산으로 밝혀졌는데, 서울에서 2017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운영된 후이원그룹의 계열사인 후이원페이 환전소가 자금세탁의 창구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할 필요 (모경종위원)

○ 국회의 경비와 치안을 현재 서울경찰청 경비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불법 계엄 때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경찰 조직이 특정 정치세력의 지휘 아래 입법부의 권위와 헌정질서를 직접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 인력은 파견을 보내되 그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를 국회에 배속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 (권칠승위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짜 출근을 위해 경찰청이 수동으로 신호를 통제해 주고 에스코트를 했고, 이를 취재한 기자를 건조물 침입죄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채현일위원)

○ 마라톤행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따른 지역축제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각 자치구는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경찰의 책임으로 미루고 있는데, 경찰인력이 과다 투입되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 등을 고려하여 마라톤 행사의 협조 요청에 무조건 협조하기보다는 경찰의 업무와 안전을 챙기면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필요 (고동진위원)

○ 상계백병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이후 해당 사건은 광역수사단에 재배정되었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김성회위원)

○ 혐중 집회의 확산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므로 철저한 단속과 특단의 대책을 실시할 필요 (채현일위원)

○ 7월 혐오집회에서 중국 국기, 주석과 대사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에 대한 사건에 조사를 신속하게 할 필요 (채현일위원)

○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 중에 외국 원수나 사절의 사진을 찢는 경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왕왕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잣대로 수사할 필요 (고동진위원)

○ 서울불꽃축제의 불법주차를 단속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 (김성회위원)

○ 2025년 10월 24일에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되는 2025 핼러윈 대책회의 내용에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대응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이므로 제대로 점검하여 제2의 참사를 막을 필요 (윤건영위원)

○ 전동킥보드 사고 4건 중 1건이 16세 미만의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여업체들이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므로 대여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필요 (김성회위원)

○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 스쿨존에서 2024년 17,554건의 과속이 단속되는 등 과속이 다수 발생하는 스쿨존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 (한병도위원)

○ 2024년에 발생한 연희동 싱크홀 사고로 동승한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 역시 피해자임에도 80대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은 도로관리부실이라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것으로 이같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하지 않도록 할 필요 (이광희위원)

○ 2차선을 주행하던 경찰차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1차선에서 주행중인 피해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었고, 피해차량이 향하고 있던 병원 장례식장에까지 가서 음주측정을 하고, 블랙박스 원본을 받아가는 등 사회 통념에 반하는 부적절한 대응을 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조직을 만들 필요 (이광희위원)

○ 민중기 특별검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시기는 공사 수주 정보로 인해 주가가 상한가로 상승한 이후 오명환 대표가 주식을 판매한 시기와 거의 동일한데, 이는 전형적인 주식투자 사기라고 생각되므로 경찰에서 수사할 필요 (박덕흠위원)

○ 최성해 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 8인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되었는데, 최성해 총장 등은 2012년 상장 대장을 의도적으로 폐기한 증거인멸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담당 검사를 만나서 회유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수사할 필요 (정춘생위원)

○ 2023년 5월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분신사건에 대한 악의적 왜곡기사에 사용된 영상 화면이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CCTV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영상 화면의 유출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재개되었는데, 이에 대해 확실히 수사하고, 이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엄벌이 필요 (용혜인위원, 이해식위원)

○ 서대문구청장이 동네 정원대보름 척사대회때 돈통에 5만원 지폐를 넣은 것은 지역공동체의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므로 이에 대해 다시 수사할 필요 (이해식위원)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무속인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현금다발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검찰 관련 사건에서 예외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할 필요 (이해식위원)

○ 국회 위증 및 불출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필요 (한병도위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의 개인정보가 국민의힘에 유출되었고, 국민의힘은 전국 교사·선거권자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교육특보, 조직특보 임명장을 발급했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필요 (이해식위원)

○ 영등포 수사2과장은 9월 5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화 통화에서 9월 27일에는 꼭 출석해 주세요라고 발언했으므로 출석일에 대한 합의가 있어 보이는데, 수사2과장이 상부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일방통보라고 보고한 것은 서로 맞지 않음 (박수민위원)

○ 영등포 수사2과장이 9월 5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화 통화에서 9월 27일에는 꼭 출석해 주세요라고 발언을 했으면 9월 9일 출석요구서와 9월 12일 출석요구서와 그 다음 체포영장은 신청하지 않았어야 함 (박덕흠위원, 서범수위원)

○ 9월 12일과 9월 19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이후 체포영장을 신청했을 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는지? 검사가 단계에서 9월 27일 출석하겠다고 하니 지켜보자는 보완이 있었던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 27일 필리버스터로 출석하지 못한 이후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그 다음 기일을 약속하는 요청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바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신정훈위원·권칠승위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소환 통보보다 더 촉박하게 소환 통보를 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 (박수민위원)

○ 출석요구일은 수사일정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통보하는 것이 아닌지? 수사기관의 6번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로 공소시효는 2025년 12월 3일까지 만료될 우려가 있었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며 법원도 공소시효 이전에 소환조사 필요성을 인정함 (한병도위원)

○ 수사는 정치 등에 휘둘려서는 안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상식적으로 합리적일 필요 (고동진위원)

○ 18세 미만 청소년의 자전거 교통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단속이 필요 (모경종위원)

○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 선동, 집회에서 걷은 돈을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영치금으로 지급한 혐의와 관련하여 전광훈 목사에 대해 소환조사를 할 필요 (박정현위원, 이상식위원)

○ 지난 정부 2년 동안 수갑 사용이 96% 증가했는데, 경찰이 폭압성을 띄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 (이상식위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실 수사와 늑장 수사를 한 경찰관에 대해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필요 (용혜인위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민원을 넣은 민원인 40여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필요 (용혜인위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압수수색, 통신영장 집행, 십여 차례의 출석조사를 한 반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방심위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두 차례만 출석조사를 한 것은 편파적이므로 철저히 재수사를 할 필요 (이해식위원, 채현일위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권력과 가까이 있을 때에는 수사 속도가 느리고, 내용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구성요건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진행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이전과 180도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행동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움 (양부남위원)

○ 2024년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민원 사주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202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도 폭넓은 차고인 조사를 했다고 기재했지만 민원 사주로 추정되는 151명 중에 대해 실제 조사한 사람이 21명에 불과하고 통신조회도 하지 않았는데, 재수사가 필요하고, 기존 수사에 대해 감찰할 필요 (박정현위원)

○ 서울 시내 경찰서에도 JMS의 정명석을 변호, 조력하고 있는 형사·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 (양부남위원)

○ 인종, 국가, 성별,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편견이나 혐오 감정에 기반하여 저지르는 범죄인 혐오범죄를 단속해야 하는데, 이를 단속할 법률적 근거는 없으므로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위성곤위원)

○ 서울경찰청에 금품수수 비리와 성비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 (고동진위원)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관 기피신청 사유 중 가장 높은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59.4%에 달하는 반면, 수사관 기피신청에 대한 수용률은 서울의 경우 2021년 54%에서 2024년 28%, 2025년에 17%로 낮아지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이광희위원)

○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84시간이고, 2025년 8월에는 초과근무시간이 92시간이며, 2025년 10월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원이 21시간 연속근무 후 과로로 고인이 된 사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기동대원의 과도한 근무를 강요하는 행사를 자제할 필요 (이성권위원)

○ 양회동 열사 CCTV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수사이의신청을 면밀히 검토하며, 경찰이 CCTV를 유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만큼 자체 감사를 철저히 진행할 필요 (용혜인위원)

○ 경찰청이 적용중인 전자충격기의 성능 및 안전성 검사 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인체의 안전성을 담보하는지 확인할 필요 (박수민위원)

○ 제압용 전자충격기는 임상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후 도입을 결정할 필요 (박수민위원)

○ 2022년 전자충격기 R3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불량률 이슈가 있었고, R3 제조사와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전자충격기 구매 절차에 R3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경찰청이 경찰 장비의 개발사업에 관여하여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비개선에 투자해야 하는 시장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경찰은 시장의 제품 중 성능이 좋고 안전한 장비를 값싸게 구매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박수민위원)

○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를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시민 등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일반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 개정이 필요 (고동진위원)

○ 경찰 조직에서 인공지능을 문서요약, 보고서작성, 사건분석, 법리 검토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환각현상(할루시네이션)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장치가 미흡하므로 담당 책임관 지정, 주기적 교육 및 검증, 사용 기록 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오류로 인한 인권침해·업무상 과오를 예방하는 조직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 (위성곤위원)

○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통계, 교제폭력 잠정조치 현황 등 주요자료를 지방청의 비시스템 수작업 입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기 취합 및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통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위성곤위원)

나. 대구경찰청

○ 투자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범죄 등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 (윤건영위원, 주호영위원)

○ 2025년 6월 대구 스토킹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죄피해평가제도를 활용하고, 구속영장청구를 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가해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잠정조치 3-2),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 (양부남위원, 용혜인위원)

○ 2025년 6월 대구 스토킹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스마트 워치를 스스로 반납했고, CCTV를 설치했지만 감시망을 우회해서 침입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필요 (서범수위원, 양부남위원)

○ 증가하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청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필요 (서범수위원)

○ 스토킹을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최대 1개월간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를 위한 잠정조치 4호의 결정률은 2023년에는 대구가 높지만 2022년, 2024년, 2025년에는 대구가 전국평균보다 낮은데, 해당 결정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철저히 업무를 추진할 필요 (권칠승위원)

○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신생아에 대해 5개월에 걸쳐 발생한 간호사의 아동학대 사건은 간호사들이 직업 소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의자 5명 중 1명은 불송치되었고, 병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대구시내 신생아 중환자실의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 (양부남위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죄로 두 번째 수사중인데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직권남용 외에 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 (양부남위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취재거부를 지시했는데, 해당 지시 공문을 받고 이행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 (용혜인위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뉴미디어팀장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할 필요 (윤건영위원, 이상식위원)

○ 대구경찰청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범죄의 발생 대비 검거 건수가 5년간 전국 평균을 넘어서 본 적이 없는 등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권칠승위원)

○ 대구경찰청의 검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범죄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수행거부, 권리행사방해·체포·감금, 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제작·배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강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마약범죄, 안보범죄, 유사강간, 방화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필요 (이광희위원)

○ 부패방지법은 조사기관이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등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9년 4월에 이첩받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현직 간부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2021년 3월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대구성서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3년 11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부패행위 신고 사건을 이첩받았음에도 2025년 2월에 피의자 11명을 송치했으며, 대구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채용비리 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구경찰청은 부패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 (용혜인위원)

○ 대구경찰청은 수사관 기피신청의 인용률이 지난 5년간 65.6%로 높았지만 2025년에는 50%로 하락했고, 지난 5년간 수사경과 경찰관 401명이 수사경과를 떠나는데, 이는 경찰관이 수사를 기피하다보니 고발인 등의 입장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느끼는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 (이광희위원)

○ 경찰이 사건 처리 소요기간을 발표할 때 검찰에 송치한 이후 기간 및 경찰 재수사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사에 필요한 경찰의 인력에 대한 진단이 어려운 문제 등이 있으므로 통계 집계 방식을 변경할 필요 (양부남위원)

○ 경찰의 무리한 법리 적용 및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이후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영장 신청을 기각하거나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된 경우에 대한 통계를 집계할 필요 (양부남위원)

○ 대구경찰청 인원 145명이 줄어들고, 기능별로는 형사인력 14명, 수사인력 6명이 감축되는데 지난해 대구의 형사사건 수가 91.6% 증가했고, 2024년 업무과다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경찰 수사권이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구경찰청 인력이 감축되지 않도록 건의할 필요 (이달희위원, 주호영위원)

○ 유괴사건은 주로 거주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로 얼굴을 아는 관계가 경찰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중심지역관서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경찰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과 공감하는 예방순찰이 되어야 하는데 중심지역관서제도는 사건이 난 이후에 대응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중심지역관서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위성곤위원)

○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로는 자치경찰제를 하기 어렵고, 지구대·파출소에 자율방범대 및 시민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 (위성곤위원)

○ 자치경찰위원회는 공공의료원,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과 함께 주취자 보호센터를 만드는 등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링크 역할을 수행할 필요 (서범수위원)

○ 인공지능 이용과 관련해서 경찰 정보는 개인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개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대구경찰청에 인공지능 TF를 구성해서 직원 교육 및 수사와 관련된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 (위성곤위원)

○ 2024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30%, 요관찰자 62%로 92%가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보였지만, 유소견자 1,089명 중 작업 전환 또는 야간 근로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할 필요 (주호영위원)

○ 경찰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를 위해 마음건강센터를 이용할 때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달희위원)

○ 경찰직을 유지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에 대해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유족에게만 맡겨 두기보다는 대구경찰청 차원에서 공인노무사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 (이달희위원)

○ 대구경찰청에 30년 이상 된 경찰관서가 17개 있으므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휘관들이 앞장설 필요 (주호영위원)

○ 대구경찰청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수사정보 유출이 많고, 포렌식 정보의 유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있고, 일정 계급 이하는 수사기관으로서 순환보직이 낮아 보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 (권칠승위원)

○ 경찰에 대한 명태균 씨의 명예훼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이광희위원)

○ 수갑은 강한 물리력의 행사이므로 최소한의 정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준수해 주기를 바람 (이상식위원)

○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92명이고, 2021년 대비 2024년 약 43%가 증가했으며, 징계사유에도 금품·향응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등이 징계사유의 약 35%를 차지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민주경찰 또는 국민의 경찰로서 경찰관의 정직성, 청렴성을 높일 필요 (이상식위원, 이성권위원)

○ 대구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3건, 성비위 2건, 부정청탁 1건, 허위보고 1건 등에 약 29명 정도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시민감찰위원회를 2021년 이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향후 시민감찰위원회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위성곤위원, 이성권위원)

○ 경찰관 본인이 음주를 위반했는데, 음주단속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제50조와 관련해서 성비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민접점부서에서 반드시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서범수위원, 이성권위원)

○ 기동순찰대는 조직폭력배들의 폭력행위가 벌어질 때 또는 위력 과시 등에 효과가 있지만, 단순히 수배자 검거, 기초질서 위반 단속 등에 투입하는 것은 운영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대구의 특화된 기동순찰대 운영 방안을 설계할 필요 (서범수위원)

다. 인천경찰청

○ 전세사기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세사기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동결시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줄 필요 (박덕흠위원)

○ 인천경찰청의 사이버 사기 검거율이 2021년 78.2%에서 2024년 55.4%로 하락했는데, 이는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지만 우리의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검거율 제고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 (한병도위원)

○ 인천경찰청은 마약의 주요 루트를 담당하고 있지만 마약전담인력이 17명으로 서울경찰청 마약전담인력 43명 등과 비교하여 인력이 적고, 미국은 마약단속국을 설치하여 1만명의 인원이 미국 전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은 마약취체부 본부와 지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담 컨트롤타워인 마약수사청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고동진위원)

○ 2025년 6월 19일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6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가정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2024년 12월 14일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적용된 6개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가 해제된 직후인 2025년 6월 16일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두려움에 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현장 판단조사표의 10개 문항 중 2점만을 줬고,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경찰의 현장대응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매뉴얼을 보완하고, 가정폭력의 특징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철저히 대응할 필요 (정춘생위원)

○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사건에서 피해자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임시조치를 해제하면서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3개월 동안 신고 내역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 등급을 해제하고, 지침에 규정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담당 직원은 불문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매뉴얼과 지침을 점검하고,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찰을 징계하고, 경찰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 (고동진위원)

○ 청소년의 비행이 인천시민들의 위협으로 번지고 있으므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비행 청소년 선도 역할까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경찰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모경종위원)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학대예방경찰관(APO) 1인당 평균 신고·대응건수가 가장 많지만, 학대예방경찰관의 정원은 2021년 37명에서 2024년 33명으로 감원되어 인천경찰청 소속 학대예방경찰관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므로 본청과 적극 협력해 학대예방경찰관의 증원 및 학대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 (한병도위원)

○ 인천 소재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중 주변 1km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비율은 79~80%이고, 2024년 인천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사건은 2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시청, 보호관찰소와 TF를 구성하여 학교 1km 내 성범죄자 밀집지역 상시관리제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해식위원)

○ 인천경찰청 소속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2025년 10월 15일부터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구에서 검문을 하면서 캄보디아행 항공기를 타려던 30대의 출국을 제지한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이 분을 귀가 조치하기에 앞서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철저히 업무를 수행할 필요 (정춘생위원)

○ 캄보디아 구인 광고는 국내 사이트 외에 구글 등 검색엔진 등에서도 검색이 되므로 전방위적으로 철저히 막을 필요 (정춘생위원)

○ 인천공항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 (박덕흠위원)

○ 인천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신고 건수 및 형사 입건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적이 연도별로 들쑥날쑥 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고, 인천의 중요 국가시설들에 대한 드론 테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 (박정현위원)

○ 인천항 또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에 대해 혐중 시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 (신정훈위원)

○ 인천 지역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인구 10만명 대비 뺑소니사건 발생건수가 24.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이해식위원)

○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선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의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 (김성회위원, 모경종위원, 박덕흠위원, 박정현위원, 한병도위원)

○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9월 9일 진행되었는데, 해당 시점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이 퇴직한 8월 28일 이후이고, 당시 인천경찰청장이 퇴임한 이후 시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압수수색할 때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음 (이해식위원)

○ 유정복 인천시장 수사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3명을 고발했는데, 경찰은 10명을 입건하고, 단순한 건임에도 5~6개의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정권이 바뀐 이후에 수사가 폭넓고 과격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찰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필요 (박수민위원)

○ 유정복 인천시장의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4항 위반 및 직권남용 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 (이해식위원)

○ 인천시는 기존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기독교 행사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한 뒤 극동방송의 행사에 대해 지원한 것으로 이 과정에 대해 수사할 필요 (이해식위원)

○ 최근 3년간 시도별 국민 체감안전도 순위에서 인천은 2022년~2024년 최하위권 수준임에도 인천경찰청이 일방적으로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이라는 주제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고, 인천경찰청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다른청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인천 시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 (고동진위원)

○ 1기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의 위원 중 경찰 출신이 1명이었으나, 2024년 4월 25일 구성된 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6명의 위원 중 4명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같은 구성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있어 보이고, 자치경찰위원회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할 필요 (신정훈위원, 이해식위원)

○ 2025년 8월 20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빌라 현장의 변사사건에 출동한 검시조사관이 변사자가 착용하고 있던 2,00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절취한 사건에서, 과학수사요원 2명이 동시에 현장에 임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세울 필요 (김성회위원)

○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해 23명 수준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비위경찰관 처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시민감찰위원회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단 한차례 개최되어 운영실적이 저조하므로 시민감찰위원회를 활성화시킬 필요 (한병도위원)

○ 인천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증가하며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천 경찰의 인력 수급이 잘 되도록 할 필요 (모경종위원)

○ 인천 검단신도시의 대부분을 관할하는 당하지구대의 관할 인구가 13만 5,800명에 달하고, 2026년 말에는 15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검단신도시 아라동을 관할하는 아라지구대를 추가 신설하여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모경종위원)

○ 인천 검단구는 2026년 6월 선거를 통해 7월 1일에 출범하는데 검단경찰서가 없는 상황인데, 경찰서 신설 직제에 1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모경종위원)

○ 인천 전반적으로 경찰서와 지구대 수요를 파악하고, 경찰서 또는 지구대를 신설하는 조치를 할 필요 (모경종위원)

○ 송도경찰서 신설을 위해 인천경찰청은 2019년부터 경찰청에 신청해 왔지만 현재 송도를 관할하는 연수경찰서가 담당하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송도경찰서를 신설하여 송도가 관할에서 빠져나가면 연수경찰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데, 송도에는 국제기구, 국제학교, 기업의 본사, 바이오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화된 전담 경찰서인 송도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고동진위원)

○ 경찰협의회에서 4조 3교대를 시행하는 것에 우려하는 의견을 전달해 왔으므로 해당 내용을 본청에 충실히 전달할 필요 (박수민위원)

라. 대전경찰청

○ 대전에서 3,569건의 전세사기 범죄가 발생하여 전국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23년 유성구 전민동, 문지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전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죄수익이 범죄자의 가족으로 옮겨간 경우에도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필요 (이해식위원)

○ 노쇼 범죄는 2025년 전국에서 3,687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571억원 상당인데 검거는 83건, 대전의 경우 178건 중 3건이 검거되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김성회위원)

○ 대전경찰청은 2023년과 2024년에는 암표 단속이 없었음에도 2025년에는 주요 경기가 있을 때마다 집중단속을 했는데, 암표에 대한 상시 및 불시 단속도 실시할 필요 (모경종위원)

○ 마약류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 (박덕흠위원)

○ 스토킹사건 중 보호조치 대상 100건 중 46건은 피해자가 불안을 호소하고 경찰에서 강화된 보호조치 처분을 했는데, 이를 고려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찰이 철처히 관리할 필요 (박덕흠위원)

○ 가정폭력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빠르게 분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대전은 2024년 가정폭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대비 발부율이 42.31%로 전국평균 56.88%보다 낮고, 사기·폭력·강도·살인 범죄의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이는 형사소송법에 재범가능성, 위해가능성을 구속사유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에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정춘생위원)

○ 2025년 7월 29일 발생한 교제살인 범죄의 피해자는 경찰에 네 번이나 신고를 했음에도 구조받지 못했는데, 112 신고내용에는 ‘주거 침입이 있었고 부동산 계약서, 물건을 가져갔다’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초동대응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문제가 있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준비할 필요 (정춘생위원)

○ 스토킹범죄, 교제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의 능력을 고도화할 필요 (모경종위원)

○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 (채현일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 및 책임자를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 (채현일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배터리의 잔량 확인 및 방전 작업을 하지 않은 점, BPU 전원 차단을 확인하지 않은 점, 절연 공구의 의무적 사용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필요 (고동진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일성계전, 남경종합건설과 공동이설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장에는 내일파워라는 하청업체가 있었는데, 불법 하도급과 관련하여 명확히 수사하고, 처벌할 필요 (고동진위원)

○ 대전의 경우 기술집약지로서 산업기술 유출,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직접 한 사람이 공판에 참석해야 공소유지가 잘 된다는 분석이 있으므로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 (박수민위원)

○ 2025년 10월 2일 소방공무원 채용 공식 사이트 '119고시'의 수험생 50,0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사건의 전모를 신속하게 밝힐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이해식위원)

○ 2024년 4분기 대전경찰청 관내 범죄 검거율은 69.5%로 18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여기에는 절도·지능범죄 검거 부진(지능범죄 검거율 50%)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수사역량 강화 및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고동진위원)

○ 대전은 통합수사부서 1인당 접수건수가 214건으로 전국 평균 190건, 서울의 경우 174건 등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모경종위원)

○ 수사부서 기피 현상 및 인원 감소에 대응해서 표창, 장려장, 포상휴가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포상휴가는 줄어들고 있고, 장려장도 들쭉날쭉 하므로 실질적인 당근책인 특별승진 제도를 혁신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모경종위원)

○ 대전경찰청에 사망사고가 많은 도로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 (박정현위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상서동 맥도날드 앞에서 차량 신호위반으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장소에는 CCTV와 밝은 조명이 없으므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CCTV와 조명 등을 설치할 필요 (박정현위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초등학교 앞 신탄진로에 설치된 30km/h 과속단속 카메라로 교통흐름이 방해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이후에는 50km/h 로 변경이 가능한 카메라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박정현위원)

○ 폭주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박정현위원)

○ 연간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약 2,000건 중 16세 미만이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면허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 단속할 필요 (김성회위원)

○ 2025년 5월말 국가융합망 입찰사업 제안요청서가 사전 유출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할 필요 (채현일위원)

○ 대전광역시 서구의 입찰비리와 금품수수 수사로 서구청장의 전임·후임 비서실장 등 19명이 불구속 송치되었으나, 서구청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전 서구 구의회위원들이 구청장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부패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채현일위원)

○ 대전경찰청은 이진숙 전 대전MBC 대표, 전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빵 값 등 업무추진비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필요 (신정훈위원)

○ 국민의힘 대전시당 전 대변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필요 (이해식위원)

○ 해병대원 사망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셨으므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람 (모경종위원, 이해식위원, 한병도위원)

○ 군 내 사망사건은 군대가 수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해병대 수사단은 초동 수사만 해서 경찰에 이첩하는데, 이후 경찰이 다시 군검찰에게 이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이해식위원)

○ 대덕경찰서 회덕파출소는 대전 경찰청 산하 지구대·파출소 중 노후화 정도 2위이고, 지역 인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회덕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대덕서 신탄진지구대는 준공된 지 34년이 경과했고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 판정을 받았으므로 재건축을 검토할 필요 (박정현위원)

○ 대전은 112 상황실 인력을 4명 감축했는데, 112상황실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112상황실 근무자 수를 줄이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박덕흠위원)

○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경들의 성장, 순경 출신들이 승진하는데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경감 승진 시 여경이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승진 인원을 성별로 분배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 (박덕흠위원)

○ 대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차량 일부가 차량 교체 연한이 남았는데 고장 등의 사유로 출동 상황에서 멈추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박덕흠위원)

○ 행정안전부가 측정한 범죄안전지수 순위에서 대전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의 범죄 숫자가 줄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박수민위원)

○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감시하는 업무는 구청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찰과 구청이 공조할 필요 (박수민위원)

○ 공공디자인으로 범죄를 줄이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는 구청에서 잘 할 수 있으므로 구청과 협력 필요 (박수민위원)

○ 2024년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공상 요양 신청 대비 승인 비율은 75%로 2020년 90.7%와 비교하여 하락하고 있으며, 전국에서도 낮은 수준이므로 관련 업무의 담당자가 공상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고동진위원)

○ 대전경찰청은 특수건강검진 수검자 1,810명 중 유소견자가 37%이고,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 (한병도위원)

마. 세종경찰청

○ 세종경찰청의 대부업법 위반 검거율이 37% 수준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므로 대부업 사건에 집중할 필요 (이광희위원)

○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이후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6%이고, 이 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10.7%로 조사되었는데, 이 같은 원인에는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심각하고, 최근 세종경찰청에서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젠더 관점에 기반한 인권감수성을 제고한 전문성 있는 수사를 진행할 필요 (이성권위원)

○ 2025년 8월 기준 학교폭력 가해자를 179명 검거했는데, 이는 2023년과 비교하여 약 2배가 되었는데, 상부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아직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한 무리한 검거와 입건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됨 (서범수위원, 양부남위원)

○ 호우경보가 발령된 2025년 7월 17일 새벽 1시 접수된 주취자 신고에 대해 경찰이 상태를 확인했지만, 주취자는 도움을 거부했고, 경찰은 술이 깬 것으로 판단해서 철수를 했는데, 이후 주취자가 사망했는데,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함 (위성곤위원)

○ 2025년 7월 17일 주취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주취자가 경찰의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주취자의 행적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어떻게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권칠승위원)

○ 현장에서 보호 주취자와 단순 주취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 (용혜인위원)

○ 세종경찰청은 사건 불송치 후 검찰의 재수사 요구 비율이 4.6%로 전국에서 높은 수준인데, 그 원인은 경찰이 짊어지고 있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우선 사건을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인데, 이는 사건 처리 소요기간을 발표할 때 검찰에 송치한 이후 기간 및 경찰 재수사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되므로, 사건 처리 소요기간의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 (양부남위원)

○ 세종경찰청은 불송치 후 이의신청 건의 비율이 15% 수준으로 전국 평균 10%보다 높은 수준인데 해당 수치는 항상 관리할 필요 (이상식위원)

○ 국정자원 화재 때 복구에 힘을 쓰다 생을 마감하신 행안부 서기관 사건에서 고인이 된 서기관의 명예를 잘지켜 주시고 유가족분들에게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람 (서범수위원, 이달희위원)

○ 기동대 인원을 제외하는 경우 세종경찰청의 경찰관 일인당 담당 인구가 623명으로 서울 394명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므로 인원 증원을 요청할 필요 (이상식위원, 주호영위원)

○ 세종경찰청의 생활 밀착형 경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3명은 무전취식 등의 현장을 목도하더라도 피의자를 경찰에 넘기는 역할만을 할 수 있는데, 경범죄에 대해서 어디까지 자치경찰에 처벌 권한 등을 위임할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 (이달희위원)

○ 세종경찰청의 중요한 관심사는 정부종합청사를 방호하는 것이고 기동대 병력을 통한 외곽 방호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청원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 (이상식위원)

○ 세종경찰청 업무현황에 정부세종청사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외부적으로는 경찰이 집회·시위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세종청사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 (이상식위원)

○ 세종시의 집회 신고 건수가 서울보다 많고, 최근 도심 집회 과정에서 도로 점유로 출근길 혼잡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주요 도로로 지정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 (주호영위원)

○ 2025년 1월에 금빛노을교에서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같은 사고는 주로 교량 위에서 발생하므로 교량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 (이광희위원)

○ 세종경찰청은 지난 5년간 경찰 기피신청 수용률이 72.5%였으나 2024년에 40%로 하락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이광희위원)

○ 세종경찰청은 경찰서 2개, 직할대 2개, 5개의 과가 있는데, 이는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광역 단위 청으로서 지방관서를 둬야 하고, 경찰서를 두 군데 만들고, 세종시가 공공기관이 많으니 기동단을 만들어야 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기동순찰대를 두다 보니 세종시만이 갖는 조직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종경찰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 (양부남위원)

○ 39만명의 인구에 경찰관 905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계층적 구조인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서 2개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이 하나 더 있을 필요성이 높지 않고, 지방경찰청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치안현장으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 (서범수위원)

○ 용인동부경찰서는 인구 60만에 경찰관은 650명 정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세종경찰청은 경무관 서장이 담당하면 적절한 치안수요라고 생각되지만 조직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자치와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있는 문제임 (이상식위원)

○ 세종경찰청은 수사부서가 단일 편제로 되어 있고, 강력·마약수사대 없이 11명이 강력범죄와 동시에 다루는 것 등은 인력 및 조직 편제의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필요한 사항을 국회 또는 본청에 요청해서 민생과 치안에 만전을 기할 필요 (이성권위원)

○ 세종경찰청의 인원은 경찰청에 54%, 경찰서와 지역관서에 47.6%가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조금 기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치안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지역과 밀착된 예방활동이 중요하므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배치를 검토할 필요 (위성곤위원)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생활치안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 (위성곤위원)

○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계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찰과 공동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서범수위원)

○ 119 신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취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부산, 제주는 주취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세종시 주취해소센터를 만들고, 세종시·소방·의료기관이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과 세종시경찰위원회가 노력할 필요 (용혜인위원, 위성곤위원)

○ 세종경찰청에는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마음동행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이상식위원)

○ 국정자원 화재 때 복구에 힘을 쓰다 생을 마감하신 행안부 서기관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되었다는 제보에 대한 상세 조사 필요 (서범수위원)

바. 경기남부경찰청

○ KT 소액결제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불법 통신장비를 확보하고도 지문감식이 보름 지난 뒤에 이루어져 범행과 관련된 중요 인물의 흔적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중하고 명확한 판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필요 (고동진위원, 박정현위원)

○ 최근 5년간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불법대부업 사건은 700여건으로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지만 검거율은 전국 평균 67% 보다 10%p 이상 낮고, 불법대부업은 조직적 범죄이며, 최근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캄보디아로 유인해 납치·감금·폭행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불법대부업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이광희위원)

○ 동탄 살인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처음 신고를 할 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밝혔음에도 교제폭력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로 인해 가정폭력으로 규정되었다면 적용할 수 있었던 긴급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적용되지 않았고, 현장 조사에서 분리 조사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등기우편으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이유서가 제출되었으나 담당 경찰관이 휴직을 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아 구속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견책, 주의, 경고의 징계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분명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처할 필요 (박정현위원, 정춘생위원)

○ 경기남부경찰청의 2021년 대비 2024년 스토킹범죄 발생건수는 105%, 교제폭력은 23% 증가했는데 4년간 평균 현행범 체포 비율은 10.6% 수준이고 구속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 (이성권위원)

○ 의정부사건과 동탄사건은 피해자의 수차례 신고에도 경찰은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가해자가 활보하고 다니며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와 교제폭력에 대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직접 통제, 선구속의 원칙을 확립하며, 무관용 책임제를 도입할 필요 (이성권위원)

○ 동탄 교제 살인사건은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해서 발생한 비극임에도 책임을 저버린 경찰관은 경고 및 1개월의 징계만 받고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경기도남부경찰청이 동탄 교제 살인사건에 대해 반성한다면 부실 수사를 경찰관에 대해 직무유기 수사에 나설 필요 (용혜인위원)

○ 동탄 교제 살인사건 38일전 경찰과 피해자의 대화를 보면 일단 스마트워치를 빨리 반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스마트워치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스마트워치가 빨리빨리 지급되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모경종위원)

○ 관계성 범죄 담당 경찰의 증원이 필요 (박정현위원)

○ 교제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조치 위반 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의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보호 권리 및 기관에 대한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배포하며, 점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박과 스토킹 발생 시에는 경호원을 즉각적으로 배치하고, 피의자가 항상 현장에서 분리돼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협박 및 폭행 발생 시에는 구속 수사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시설에 대해서 현실적인 시스템과 제도개선을 할 필요 (용혜인위원)

○ 관계성 범죄 체크리스트가 열 가지로 간소화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경찰관의 역량 확보, 전문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고 본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람 (윤건영위원)

○ 2025년 1월~8월 경기남부경찰청의 가정폭력 검거인원 7,765명 중 3,701명 (47.7%)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 보호처분이 상담위탁

등 미온적 처분에 그쳐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반복되고, 위험성이 높은 가정폭력 사건 등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용혜인위원)

○ 동탄 등 신도시는 치안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일선 경찰서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분은 한 경찰서에 1~2명이 겸직하고 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치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모경종위원)

○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는 전국 대비 24~32%에 해당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노상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주택단지와 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및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 (이성권위원)

○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시도청단위에서 운영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아동 유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아동 유괴 범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아동유괴 피의자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하고, 신상공개위원회가 적극 공개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하달할 필요 (고동진위원)

○ 피싱사이트, 범죄와 관련된 국가가 캄보디아 외 태국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의 실종 상황에 대해 엄격히 조사할 필요 (모경종위원)

○ 경기남부경찰청은 외사과 및 외사경찰 155명이 있었으나, 2024년 조직 개편 이후 폐지된 이후 국제공조 및 해외수사 역량, 공조업무가 약화되었으므로 외사조직 설치가 필요 (이해식위원)

○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면허를 받급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을 대여해 주는 것을 단속할 필요 (김성회위원)

○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화성동탄서에서 무고한 청년이 성추행범으로 입건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모욕, 반말을 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받아 간 점에 대해서 엄정한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징계 결과는 불문경고, 경고, 주의 처분이 나왔고, 피해자인 청년은 관련 경찰관을 고발했는데 수사 결과 각하처분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과 고발 각하 처분을 다시 고려할 필요 (모경종위원, 양부남위원)

○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ITS 사업자와 공직자 간의 뇌물 수수 및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용혜인위원)

○ 김포시청은 지난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 (이해식위원)

○ 전 정부 시기 경기남부경찰청은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 성남 FC에 대한 수사 등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성찰할 필요 (이상식위원)

○ 구치소장의 내란특검 구인영장 집행 거부, 구치소내 특별접견 등 특혜 제공 등 윤석열 구치소 특혜 의혹 사건 7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 (위성곤위원, 이해식위원)

○ 양평군 공무원 자살 사건을 양평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이 사건을 철저히 수해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 (고동진위원, 이성권위원)

○ 양평경찰서는 2021년 12월 8일부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1년 5개월 수사한 이후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양평경찰서장이었던 경찰관이 민중기 특검에 파견되어 양평경찰서에서 했던 사건을 뒤집으려고 재조사한 것은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이고, 양평 공무원의 메모에는 강압수사 등의 흔적을 단서로 하여 특검을 수사함으로써 수사기관 간 견제를 하고, 반듯한 수사경찰을 키워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림 (서범수위원)

○ 양평군 공무원의 메모 작성 시점 등을 밝히기 위해 메모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할 필요 (이해식위원)

○ 양평 공무원을 조사한 경찰관이 강압수사에 대한 수사를 받으려면 특검에서 나와야 하므로, 경찰로 복귀하는 인사조치를 해서 조사를 할 필요 (이달희위원)

○ 전 정부 출범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의 수갑 사용건수가 92.3% 증가했고, 경찰관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한 사건이 있으므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필요 (이상식위원)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 3,747건의 수사관 기피 신청의 수용률이 60.4%로 높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피신청 사유는 31%가 공정성을 의심했는데,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수사 내용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극복할 필요 (이상식위원)

○ 경찰청 등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고도화시켜줘야 하므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되 다른 방식으로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공지능이 업무의 효율화 및 정확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을 필요 (권칠승위원)

○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경찰서는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로부터 11건의 검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사건 처리경과를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에 회신하지 않아 법의학 분석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위성곤위원)

○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의 검사 결과만으로는 동물학대 행위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CCTV, 진술, 현장사진 등의 자료를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에 공유하여 법의학 분석과 수사정보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법의학 간 연계지침을 마련할 필요 (위성곤위원)

○ 202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중에는 6개월을 초과하는 범죄 사건 처리 건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경기남부경찰청은 민생사건·금융사건이 집중되는 지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각고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 (박수민위원)

○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KT 소액결제 해킹사건을 포착하고, 담당 수사관이 일곱 차례 걸쳐 KT에 연락을 해서 5일이 돼서야 KT가 대응했는데, 이 경우 경찰 상층부에 보고해서 KT 상층부로 연락해서 신속 대응을 했어야 하므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해서 상부끼리 연락해서 공조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박수민위원)

○ 안양 동안경찰서 경찰관이 정치적 댓글에 좋아요를 다는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는데, 이에 대한 징계로 정직을 내렸는데,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살펴볼 필요 (박수민위원)

○ 경찰이 2021년 1월 7일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2021년 1월 13일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은 2024년 12월 사건 기록이 없는 것을 인지하고 경위를 파악한 뒤, 경기남부경찰청 경사에 대한 징계요구를 했는데, 이같이 사건이 실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사건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해식위원)

○ 최근 9년 동안 경감급 이상 경찰관의 비위에 대한 징계는 경기남부경찰청이 119명으로 높은 편이므로, 경감급 이상 경찰관의 비위 예방책 수립 필요 (이성권위원)

○ 신고자의 신원이 언론에 유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람 (박덕흠위원)

○ 인형뽑기 기계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쓰게 되고, 청소년의 도박범죄 등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위성곤위원)

○ 인구 증가 상위 3개 지역은 화성, 평택, 양주시인데, 신도시 특성에 맞는 인력 재배치 기준을 만들어서 도시 특성에 맞는 경찰인력이 배치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림 (박덕흠위원)

○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1,758건이고, 이 중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부당수사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찰에서 이에 대해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이달희위원)

○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의 수가 18개 시도청 중 두 번째로 많으므로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윤건영위원)

○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수건강검진의 유소견 및 요관찰자 비율이 87.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한병도위원)

○ 경기남부경찰청의 질병휴직자는 2020년 59명에서 2024년 11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 (한병도위원)

○ 건강 위험신호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강화할 필요 (한병도위원)

○ 4조 3교대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현장의 걱정이 있으므로 시범 실시 결과를 본청에 소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박수민위원, 정춘생위원)

○ 중심지역관서제도를 도입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경찰관을 떼어 놓고 있으며 출동코드별 출동시간이 전보다 30초 늦어지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현장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동순찰대, 중심지역관서 폐지 및 인력의

복원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 (위성곤위원)

○ 인공지능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환각현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자체적으로 인공지능(AI) 담당관을 지정해서 교육계획을 마련할 필요 (위성곤위원)

○ 경찰은 구조적으로 신분 보장이 약해서 정치적 외압에 약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 간부가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할 필요 (박수민위원)

○ 범죄예방 환경개선산업(셉테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공조할 필요 (박수민위원)

○ 경기도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기동순찰대 운영, 외국인 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 (서범수위원)

사. 경기북부경찰청

○ 전 정부 출범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의 수갑 사용건수가 92.3% 증가했고, 경찰관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한 사건이 있으므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필요 (이상식위원)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북부경찰청에 1,393건의 수사관 기피 신청의 수용률이 57.4%로 높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피신청 사유는 31%가 공정성을 의심했는데,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수사 내용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극복할 필요 (이상식위원)

○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불송치 권한을 이용하여 피의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경위는 의정부경찰서 내에서 재배당을 받는 등으로 동일 피의자 사건을 10건을 담당했는데, 이는 동일 경찰관서 내의 사건 재배당이 담당 수사관 개인이 재배당을 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이므로, 재배당 시 상급자의 검토 및 결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해당 경위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고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해 날인을 받았는데, 이는 현재 관행상 다른 경찰관 조사에 끝까지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경위는 본인에게 송금된 내역이 담긴 사건 기록을 폐기·조작했고 3년 동안 적발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경찰 수사의 전 과정을 점검해 통제·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해식위원)

○ 최근 9년 동안 경감급 이상 경찰관의 비위 징계는 경기북부경찰청이 81명으로 높은 편이므로, 경감급 이상 경찰관의 비위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할 필요 (이성권위원)

○ 2030 MZ 조직폭력배는 불법도박 등 사행성 범죄와 사기 등을 범하는 사례가 많고, 점조직처럼 조직을 결성하고 해체하고를 반복하는 특성이 있으며, 한번 커진 조직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림 (박덕흠위원)

○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 4명의 이력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 (위성곤위원, 윤건영위원)

○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시도청단위에서 운영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아동 유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아동 유괴 범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아동유괴 피의자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하고, 신상공개위원회가 적극 공개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하달할 필요 (고동진위원)

○ 경기북부경찰청은 특수건강검진의 유소견 및 요관찰자 비율이 76.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한병도위원)

○ 경기북부경찰청의 질병휴직자는 2020년 20명에서 2024년 43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 (한병도위원)

○ 건강 위험신호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강화할 필요 (한병도위원)

○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면허를 받급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을 대여해 주는 것을 단속할 필요 (김성회위원)

○ 피싱사이트, 범죄와 관련된 국가가 캄보디아 외 태국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의 실종 상황에 대해 엄격히 조사할 필요 (모경종위원)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15명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압송되었는데, 캄보디아 측과의 공조 및 신속한 조사를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 (위성곤위원)

○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된 캄보디아 내 실종·납치·감금 신고 건수가 21건이고, 계속 진행 중인 8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필요 (이해식위원)

○ 경기북부경찰청은 공공안녕정보외사과와 외사경찰 42명이 있었으나, 2024년 조직개편 이후 폐지된 이후 국제공조 및 해외수사 역량, 공조업무가 약화되었으므로 외사조직 설치가 필요 (이해식위원)

○ 최근 5년간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불법대부업 사건은 700여건으로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지만 검거율은 전국 평균 67% 보다 10%p 이상 낮고, 불법대부업은 조직적 범죄이며, 최근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캄보디아로 유인해 납치·감금·폭행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불법대부업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이광희위원)

○ 4조 3교대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현장의 걱정이 있으므로 시범 실시 결과를 본청에 소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박수민위원)

○ 인형뽑기 기계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쓰게 되고, 청소년의 도박범죄 등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위성곤위원)

○ 중심지역관서제도를 도입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경찰관을 떼어 놓고, 있으며 출동코드별 출동시간이 전보다 30초 늦어지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현장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동순찰대, 중심지역관서 폐지 및 인력의 복원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 (위성곤위원)

○ 파주시의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피해 경찰관 3명은 방검복과 방검장갑 등을 착용했는데, 내피형 방검복을 갖춰입는데 40여초가 소요되므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 현실적으로 근무에 도움이 되는 방검복을 개발·보급하고, 유사시 목 보호대, 장갑 등 일부 장비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 (정춘생위원)

○ 인공지능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환각현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자체적으로 인공지능(AI) 담당관을 지정해서 교육계획을 마련할 필요 (위성곤위원)

○ 강압수사 문제,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 (이달희위원)

○ 경찰은 구조적으로 신분 보장이 약해서 정치적 외압에 약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 간부가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할 필요 (박수민위원)

○ 경기북부경찰청의 2021년 대비 2024년 스토킹범죄 발생건수는 188%, 교제폭력은 93% 증가했는데 4년간 평균 현행범 체포 비율은 10.6% 수준이고 구속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 (이성권위원)

○ 교제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조치 위반 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의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보호 권리 및 기관에 대한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배포하며, 점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박과 스토킹 발생 시에는 경호원을 즉각적으로 배치하고, 피의자가 항상 현장에서 분리돼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협박 및 폭행 발생 시에는 구속수사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시설에 대해서 현실적인 시스템과 제도개선을 할 필요 (용혜인위원)

○ 의정부사건과 동탄사건은 피해자의 수차례 신고에도 경찰은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가해자가 활보하고 다니며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와 교제폭력에 대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직접 통제, 선구속의 원칙을 확립하며, 무관용 책임제를 도입할 필요 (이성권위원)

○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는 전국 대비 24~32%에 해당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노상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주택단지와 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및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 (이성권위원)

○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세상을 떠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팀의 팀장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파견 나간 경찰이고, 해당 팀은 경찰위주로 구성되었는데, 고인 작성한 메모에는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힘들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메모가 사실이라면 이는 인권침해와 강압수사라고 생각되며, 경찰 조직 전반의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 (고동진위원)

아. 강원경찰청

○ 강원도 내 보이스피싱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경찰청에도 캄보디아에 출국한 뒤 실종된 사람 5명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어 있으므로 캄보디아 범죄단체와 관련된 실종건 및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필요 (이광희위원, 이성권위원)

○ 강원경찰청에서 노쇼 사기가 많은데, 노쇼 사기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므로 노쇼 등을 포함한 민생범죄를 제대로 적발하고 체포할 필요 (윤건영위원)

○ 강원도 내 스토킹 범죄는 2021년 52건에서 2024년에 353건으로 급증했는데, 강원경찰청은 내사종결, 불송치 등 사건처리 현황 및 인명피해 등에 대해 통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통계 관리·분석,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필요 (이달희위원)

○ 강원경찰청의 강간 범죄 검거율은 89.3%로 전국평균 97.2%보다 낮고, 기타 강간과 강제추행 등 범죄의 검거율은 80%로 전국평균 93.3% 보다 낮으므로 이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 (이광희위원)

○ 관계성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범죄의 잔혹성 및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히 대비할 필요 (권칠승위원)

○ 경찰관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사 정보 확인을 요구받고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의 참고인으로 KICS에 등재해서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양부남위원)

○ 강원경찰청은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첩보를 확보하고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수사 내용이 통일교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조사 필요 (이광희위원)

○ 강원학원의 사학비리 문제가 심각하므로 사학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엄중한 자세로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고, 수 십년간 이어진 사학비리이므로 경찰의 적극적인 인지수사가 필요 (용혜인위원)

○ 신경호 교육감과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불법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필요 (용혜인위원)

○ 강원도 경찰 인원 97명 감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의 면적이 넓고, 여름철 관광객이 몰려오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서범수위원, 이달희위원)

○ 양양 경찰서는 2023년 완공 계획이었으나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경찰서가 건립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양부남위원)

○ 강원경찰청 산하에 음주비리가 5건이 발생했으므로 기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순찰차에 탑승하다가 순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을 미는 일이 있었음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제 식구 감싸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입건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동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사실을 색출하기 위해 경위를 확인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양부남위원, 위성곤위원, 이광희위원, 이성권위원)

○ 강원경찰청은 음주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초과근무 결재를 대면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는 근무기강을 명분으로 직원들을 애먹이는 방식으로 보이므로,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사고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서범수위원)

○ 김건희 특검에서 작성한 통일교 공소장에는 춘천경찰서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해외 원정도박 내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내사 진행 사실을 유출해서 통일교가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기재가 있는데, 해당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대해 감찰할 필요 (양부남위원)

○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이 발생한 날 강원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계엄이 일반적 효력이 있다고 보고한 것은 계엄에 소극적 찬성이고, 소극적 동조에 해당하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윤건영위원)

○ 12·3 내란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했다는 증언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상 불가능했다는 반박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안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본인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람 (용혜인위원)

○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1명에 대해서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편향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강원도에는 군부대가 많고, 군 사망사건 등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강원도에서 군 관련 사건이 있으면 특별히 제대로 처리할 필요 (이상식위원)

○ 수갑은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직원 교육 등을 통해 폭압성을 추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필요 (이상식위원)

○ 횡성지구대에 33명이 근무하고 기동순찰대가 배치되어 있고, 서원파출소에는 1명이 근무하며, 서원파출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횡성지구대에서 출동하는 구조인데, 횡성지구대에서 서원파출소까지의 거리는 30km가 넘고 차량으로 36분이 소요되었고, 이 같은 구조로는 생활밀착형 현장치안이 불가능하므로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개선하고, 기동순찰대를 폐지하여 해당 인력을 현장에 복귀시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 (위성곤위원)

○ 강원경찰청이 중심지역관서제도를 추진하면서 치안센터가 폐지된 지역의 112 신고 출동시간이 2021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농촌의 치안이 방치되는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치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치안센터가 폐지된 지역의 대체순찰 체계 및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할 필요 (이광희위원)

○ 강원도는 넓기도 넓고 영동, 영서 등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부터 실시하는 광역정보팀이 강원도에 적합한 시스템인지 검토할 필요 (서범수위원)

○ 중심지역관서제는 서울, 부산 등 인구밀집지역의 좁은 공간에서는 가능하지만, 면적이 넓은 강원도에서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서범수위원)

○ 인공지능의 환각현상(할루시네이션)으로 인해 오염된 정보를 얻는 것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수사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예방하면서 인공지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책임담당관을 지정하여 교육 및 운영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위성곤위원)

자. 충청남도경찰청

○ 2024년 아산에서 발생한 주식 리딩방 사기사건을 범한 자가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한 범죄조직이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끝까지 수사해서 뿌리를 뽑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림 (박덕흠위원)

○ 피싱수사에서 경험과 전문성 발휘될 수 있도록 수사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박덕흠위원)

○ 2030 MZ 조직폭력배들은 불법도박, 가상화폐 사기,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텔레그램에서 사기행위를 모의하고 2~3개월 동안 활동한 뒤 해체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조직폭력배 관리 기준에 변화가 필요 (박덕흠위원)

○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단속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림 (박덕흠위원)

○ 충청남도는 2022년부터 학교폭력사건이 전국에서 많고, 최근 3년간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12.9개로 상위권이며,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대비 현원 충원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이며, 충남경찰청은 교육청과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충원하고, 도내 학교폭력 근절 및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고동진위원)

○ 충청남도 북부지역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이 교육청, 시청 및 구청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 (박수민위원)

○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람 64명 중 45명이 충남청으로 이송되어 있고, 윗선 총책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충남경찰청의 수사인력이 5명 밖에 없으므로 이를 보충할 필요 (이해식위원)

○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45명 중에는 현지 범죄조직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국내 조직폭력배와 결탁되어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약사건 관련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필요 (고동진위원)

○ 캄보디아 감금·실종 사건이 전국적으로 513건 정도 되는데 이 중 미확인 상태가 160건 정도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 (박덕흠위원)

○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45명이 대부분 동일한 대학교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지수사를 할 필요 (모경종위원)

○ 충청남도에 발전소 등 산업시설이 많고, 중대재해 수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대재해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로 진실을 밝히고 정확히 진단해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깊이 있는 수사를 진행할 필요 (박수민위원)

○ 전동킥보드 사고 2,000건 중 500건의 운전자는 무면허인 16세 미만의 아이들이고, 오토바이 또는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대여하는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여 업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 (김성회위원)

○ 픽시자전거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신정훈위원)

○ 충청남도는 교통사고가 많고, 심각한 것은 횡단 또는 도보 중 인명사고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고빈발지역을 분석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 (박수민위원)

○ 논산시 양촌면에 건립한 확산탄공장 관련하여 자회사를 통해 공장을 쪼개서 별도로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는 의혹, 매장문화재법 위반 의혹 및 논산시장 선거캠프의 본부장이 사업수행자

회사의 고문으로 취직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 (김성회위원)

○ 충남지사가 대선기간인 2025년 5월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 사건에 대해 6개월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검찰에서 이 상태로 둔다면, 경찰은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이 수사를 검토할 필요 (채현일위원)

○ 경찰이 논산 확산탄 사업자의 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시위 대처를 하고, 플래카드를 철거하는 등 업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자연스로운 의사표현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치안행정을 관리할 필요 (신정훈위원)

○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2021년 20건에서 2024년 123건으로 증가했고, 주된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이므로, 경찰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필요 (김성회위원)

○ 12월 3일 밤 계엄선포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만큼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밝혀야 될 사실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는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함 (한병도위원)

○ 12·3 내란 당시 경비국장으로서 위헌·위법한 지시에 대해 거부하고 출입통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정춘생위원)

○ 12·3 비상계엄 때 오후 10시 46분 1차 국회봉쇄를 했고, 11시 6분 부분적으로 완화한 뒤 경찰청장으로부터 2차 봉쇄지시를 받고 서울청 차장에게 전달하니, 서울청 차장은 헌법 제77조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발언을 들었을 때, 경비를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청장에게 건의를 했어야 함 (이해식위원, 채현일위원)

○ 충남천안서북경찰서가 2021년 강간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CCTV를 통해 확인된 간병인의 폭행을 근거로 폭행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피해자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남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과 장애인인 피해자의 멍이 들어 있었음에도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의료기관 관련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 등은 문제가 있고, 결정적 증거인 CCTV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감찰을 건의할 필요 (박정현위원)

○ 2024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예산경찰서 소속 경사가 생을 마감한 사건에 대해 가해 경찰관 3명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본청에 재감찰을 요청할 필요 (정춘생위원)

○ 직장내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6%이고, 이 중 절반이 신고를 하며, 신고를 한 사람의 40%가 보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및 경찰은 위계적인 분위기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남경찰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가 3건 또는 4건이 나온 것은 경찰의 50%는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이해식위원)

○ 충남경찰청 한 경찰관이 전산망을 사적으로 이용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가수의 집에 찾아갔고, 한 지구대장은 회식자리에서 추행을 했으며, 조사를 받던 피의자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려서 경추 5번·6번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히기도 하는 등 심각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으므로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 (모경종위원)

○ 충남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2020년 13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성비위 사건이 7배 증가했고, 기소 처분 47건 중에는 음주운전 19건, 폭행, 상해, 성추행 등 형법 위반이 11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6건, 뇌물수수, 직무유기, 스토킹,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있어 문제가 심각해 보이므로 무너진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 (모경종위원)

○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 비리사건의 대안으로 제시된 시민감시기구이지만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태인데, 비리 척결 방안으로 회의 정례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감찰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고동진위원, 한병도위원)

○ 충청남도의 경찰관 1인당 인구는 421명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지역 경찰은 2025년 9월 기준 정원보다 171명 부족하고, 정원 대비 부족률은 8.5%로 전국 1위이므로, 치안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본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필요 (모경종위원)

○ 충남경찰청 경찰공무원의 심리상담 건수는 2020년 948건에서 2024년 2066건으로 1.8배 증가했는데, 마음동행센터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마음동행센터의 인력을 증원할 필요 (정춘생위원)

차. 전북경찰청

○ 사이버 사기범죄가 2021년 5,153건에서 2024년 7,929건으로 증가했는데, 검거율은 2021년 77.5%에서 2025년 31.6%로 하락했으며, 피싱범죄는 2022년 600건에서 2024년 919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피해액도 2023년 137억원에서 2025년 1~9월 27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이버사기,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기반 범죄 검거에 총력을 다할 필요 (한병도위원)

○ 전북지역에서 청소년 마약 사건으로 검거된 건수가 8건으로 지난해보다 6건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학교전담경찰관(SPO) 전담제 운영을 고려할 필요 (박덕흠위원)

○ 전북지역 스토킹 발생 건수는 지난 4년간 연평균 261건이 발생했고,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생활을 위해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 (박덕흠위원)

○ 전북에서 교제폭력 신고가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구속률은 1%가 되지 않는데, 교제폭력 범죄의 특성을 연구하여 대응하고, 범죄의 증가속도를 고려하여 여성청소년과 대응 인력을 보충할 필요 (정춘생위원)

○ 성폭력 처벌법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등록한 정보를 대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북경찰청은 대면조사 실시율 68.3%로 전국 평균인 75.8%보다 낮으므로 범죄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필요 (고동진위원)

○ 2024년 전북경찰청의 수사에 대해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1,793건, 사건송치 이후 보완 수사 요구가 4,415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390건, 피의자 미특정 등으로 종결되지 않은 관리미제가 119,239건이고, 2025년 8월 경찰의 재수사 이후에도 공소시효 판단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송치요구가 8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북경찰청의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키울 필요 (이해식위원)

○ 전북특별자치도내 고령자 교통사고가 연간 1,600여건 발생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보행자들에게 개인형 경광등 지급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 (김성회위원)

○ 2024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2,000건 중 25%가 16세 이하 청소년들인데,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대여업체에 대해 단속할 필요 (김성회위원)

○ 전북에서는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반납 하면 교통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0만원을 지원하는데 동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경찰이 2025년 5월부터 시범운영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효과성이 입증되는 경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법제화하며,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갱신주기를 1~2년으로 단축해서 시력·청력·반응 속도 등의 적성검사와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필요 (고동진위원)

○ 익산에서 간판정비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진행된 수사에서 피의자 업체 대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사건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 업체 대표에게 회사 문을 닫고 싶냐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다른 피의자인 공직자는 수갑을 차고 장시간 조사받는 어려움을 호소했고, 피국가수사본부는 이 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경찰이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인권보호 수사 원칙이 지켜진 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보호 수사 원칙을 어긴 담당자에 대해서 징계할 필요 (고동진위원, 박수민위원, 이해식위원)

○ 전북경찰청에서 갑질, 폭언, 비위, 강압수사 논란,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이 발생했고, 2025년 8월에는 재개발조합비 사건, 익산 뇌물공여 사건, 군산 성범죄사건에서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징계건수는 2021년 12건, 2024년 16건 등으로 증가했고, 시민감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정춘생위원, 채현일위원)

○ 전북경찰청 1층 홍보관에 게재된 홍보물의 ‘여순 반란’을 ‘여순 사건 현장’으로 바꿨지만 그 위에는 여전히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에 대한 원정진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합당하지 않고, 여순 사건은 국가가 민간인을 부당하게 학살한 국가폭력이므로 해당 내용을 시정하여 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고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필요 (모경종위원, 박정현위원, 정춘생위원, 한병도위원)

○ 경찰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무국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자부심을 되새길 필요 (신정훈위원)

○ 1,050원 초코파이를 절도혐의로 송치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해당 사건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경찰이 조정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전북경찰청은 반성할 필요 (박정현위원)

○ 전북 남원은 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고, 전북경찰청장이 남원에 가서 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는데 현재 남원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박수민위원)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내용이 이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치밀한 준비를 할 필요 (이해식위원)

○ 수사관 기피 현황이 2022년 110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전북경찰의 수사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나타내므로, 수사기법을 선진화·고도화 하기 위해 경찰 전체 차원에서 연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강압수사 논란은 개별 경찰관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의 수사문화 또는 시스템에 대해 점검할 필요 (모경종위원)

○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개인 돈벌이와 공무원의 직무가 겹치면 조직기강의 해이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례가 무분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 (고동진위원)

○ 전북경찰청의 특수건강검진결과 유소견자가 2022년 449명에서 2024년 744명으로 증가했는데, 경찰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할 필요 (한병도위원)

카. 경상남도경찰청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의자의 모친을 보험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병역 면탈로 의심할 수 있는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으나 별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수사를 함으로써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고려하여 경찰의 기본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 (이성권위원)

○ 경남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고, 재수사 요구는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으므로 경남경찰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 (이성권위원)

○ 경찰의 수사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찰이 부담하고 있는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 처리 소요기간을 발표할 때 검찰에 송치한 이후 기간 및 경찰 재수사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통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양부남위원)

○ 강력범죄 중 방화죄 검거 비율이 86.6%로 전국 평균 보다 6.2%p 낮고,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검거율은 46.7%로 전국 평균 85.1%보다 38.4%p 낮으므로 방화죄에 대한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이광희위원)

○ 경남에서의 대표적인 횡령·배임 범죄로 경남은행 사건,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진해 웅동 사업자의 횡령·배임 의혹 등이 있고, 횡령과 배임 범죄의 검거율이 0.2%p, 2.3%p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이광희위원)

○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에서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발파팀장의 말만 듣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고, 유족은 CCTV를 확인하며 발파 의혹을 제기해도 경찰은 그럴리 없다는 말만 반복했으며, 경찰이 차량에 남은 유해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아 유가족이 폐차를 막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거친 후에야 유해를 찾을 수 있었고, 교통과장은 유족에게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는게 더 이득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경남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 성실의무, 수사기관의 기본의무를 방기했다고 보았음에도, 경찰은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하면서도 기존 불송치 결정을 내린 팀이 재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를 할 필요 (용혜인위원)

○ 하동 순찰차 사망사고에서 숨진 여성이 36시간 정도 순찰차에 갇혀 있었는데, 36시간 동안 근무를 나가지 않았음에도 상황실에서 체크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권칠승위원)

○ 언론에 보도된 군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해 서울과 진해에 동일한 사건이 고발되었는데 서울경찰청은 7월부터 5명의 경찰관이 투입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반면, 진해에서는 5월에 수사를 착수했지만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 (이상식위원)

○ 경남경찰청은 수갑의 사용이 106% 증가했는데, 수갑의 사용 등 물리력의 행사는 최소한의 기준에서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 (이상식위원)

○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필요 (이상식위원)

○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부터 작성되는 사건기록은 전자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록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듀얼시스템으로 구성하여 화재 등으로 데이터가 손실되었을 때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하고, 해킹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 (이달희위원)

○ 경찰이 10대 절도 피의자로부터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경찰서 외부에 압수한 오토바이를 두었으나, 십대 피의자가 오토바이를 다시 탈취해서 타고 가는 중에 다른 파출소에서 다시 압수되었고, 십대 피의자는 한 번 더 오토바이를 탈취하고 운전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압수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이성권위원, 주호영위원)

○ 9월 초에 발생한 오토바이 압수물 관리 부실 관련하여 경찰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감찰조사, 통합증거물 관리체제 전수조사,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경찰의 수사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게 되므로 압수물 보관 관계는 경찰 수사의 신뢰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수사를 하는 각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 및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완할 것이 없는지 챙겨볼 필요 (서범수위원)

○ 창원서부서는 압수물 관련 대책으로 바깥에서 근무를 서는 근무지를 만들었는데 취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매달 56명이 당직으로 야외 건물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낭비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징벌적 근무 세우기로 보이므로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는 핀셋 대책을 세울 필요 (권칠승위원, 서범수위원)

○ 경남에는 주취자를 보호하는 주취 보호센터가 없는데 인구밀집지역인 창원에 주취 보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 (주호영위원)

○ 주취자 보호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소방, 병원 등 관계 기관의 협력 사업이므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 (서범수위원)

○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서 혐오집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해당 집회는 국가가 기본권의 이름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혐오와 폭력, 고의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한 폭력적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 (권칠승위원, 위성곤위원, 윤건영위원)

○ 경남경찰청에서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경찰관 19명이 징계를 받았고 절반 이상이 정직, 해임 등 중징계이고,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성폭력, 절도, 특수협박 등 중한 범죄이므로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 (주호영위원)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남경찰청의 징계 건수가 124건이지만, 시민감찰위원회는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규정과 같이 시민감찰위원회를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할 필요 (양부남위원)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창원서부경찰서 경찰이 명태균 씨에게 자신의 상급자인 창원경찰서장에 대한 인사청탁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사청탁 2주뒤에 창원경찰서장은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에 대한 감찰 또는 내사를 실시할 필요 (이광희위원)

○ 경찰이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찰에서 인지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를 신청한 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비율 등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요소로 활용할 필요 (양부남위원)

○ 경남경찰청은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의 수용률은 2021년 78%로 높았지만 2025년 47%로 하락했고, 최근 5년간 526명이 수사경과를 떠났는데, 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이 기본적인 요인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이광희위원)

○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수사 능력을 약화시키고, 경찰을 시민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있으며, 중심지역관서제를 시행하기 전보다 112 신고 출동시간이 증가하고, 주민의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위성곤위원, 이해식위원)

○ 경찰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성의있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 (윤건영위원)

○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적인 직무교육 및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찰청 차원의 인공지능 TF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교육 계획을 수립할 필요 (위성곤위원)

○ 공직사회를 양성 평등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여성 인사의 발탁 인사가 있기를 기대함 (이달희위원)

○ 경주 APEC 행사에 지원 나가는 경찰관들이 노숙을 하고 길거리에서 도시락을 먹는 등 대형 행사시 큰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되므로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 (서범수위원)

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파. 새마을운동중앙회

하. 한국자유총연맹

○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자유센터 부지개발 관련 각종 의혹 해소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권칠승위원, 신정훈위원, 윤건영위원, 이광희위원, 채현일위원)

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사관】

○ 불필요하게 대선기간에 해외 출장을 간 지역정보개발원 원장에 대해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필요 (박정현위원)

【인사기획관】

【운영지원과】

【참여혁신조직실】

○ 인구위기 관련 전담 부처의 설치 방안을 강구할 것 (주호영위원)

○ 검찰개혁추진단에 경무관급을 파견하여 경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상식위원)

○ 2식 이상 급식 및 36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비교과교사의 정원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한병도위원)

○ 악성민원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공직자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적 서비스 제공 체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위성곤위원)

○ 대규모 화재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장 직급의 상향 필요성을 검토할 것 (모경종위원)

【인공지능정부실】

○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해 한글(hwp) 문서 등 행정문서의 폐쇄적 형식을 개방형·기계판독형 포맷으로 전환할 것 (위성곤위원, 고동진위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백업·이중화 관련 제도적 정비, 실제 현행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것 (이해식위원, 주호영위원)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이중화 체계를 구축할 것 (이해식위원, 주호영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의 입지 적절성을 검토하고 장기 대책에 반영할 것(이해식위원)

○ AI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등록을 독려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것 (고동진위원)

○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관한 위험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고동진위원)

○ AI 중심의 행정 전환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연계체계를 개선할 것 (위성곤위원)

○ 온나라시스템 해킹 관련 피해 규모와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 (박덕흠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채현일위원)

○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하는 한편,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이달희위원)

【자치혁신실】

○ 행정안전부가 법률의 근거 없이 광역의원의 선거구획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미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식위원)

○ 지역사회 의료·요양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전담조직 설치 현황 및 조례제정 현황 등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지원할 것 (정춘생위원)

○ 행정안전부는 공공청사, 지자체, 지방 공기업의 탄소 중립관리 부서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 (위성곤위원)

○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검토할 것 (이상식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박정현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제고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분할 지급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집행 제고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 (박정현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의 실제 사업 집행률을 파악하고 배분액을 선배정하지 않고 투자계획을 평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박정현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의 분류체계 개편으로 사업의 특성과 성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 분류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박정현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성권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시설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운영·제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추진할 것 (양부남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인구 정주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 기관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체계의 부실함의 원인이 되므로 전문기관 분리 또는 공동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한병도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평가체제를 개혁할 것 (한병도위원)

○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는 시·군·자치구로 되어있어 도농복합시의 경우와 같이 읍·면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읍·면을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신정훈위원)

○ 울릉도 여객선 노선이 일시 중단될 예정으로 울릉도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것 (이광희위원)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에 비하여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 부담이 더 큰 상황이고, 고향사랑e음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개발원의 이사회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권한이 없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것 (이광희위원)

- 고향사랑기부 디지털서비스 3차 개방 관련 중소기업 및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참여 기반을 확보할 것 (이광희위원)

- 정부가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박정현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고향사랑e음 및 연계 시스템 일시 중단되어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이 중단된 바, 주소 '사후 확인' 등을 통해 민간플랫폼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할 것 (이광희위원, 박정현위원)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공기정화장치를 포함하는 등 시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이광희위원)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에 상시탐지형 시스템 관리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것 (서범수위원)

○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나 오작동 비율이 높아 경찰력과 국고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찰관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회신하도록 법률이 개정될 필요 (양부남위원)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 법률 개정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증액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국비 지원 규모와 사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신정훈위원, 용혜인위원)

○ 행정안전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사업의 주관부처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신정훈위원, 이광희위원)

○ 기본사회위원회 운영 예산, 계획,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논의계획 등 종합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 (용혜인위원)

○ 혐오표현이나 부정선거 음모론 등 내용의 정당현수막은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동별 설치개수(2개)를 초과하는 정당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현수막이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단속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수사·처벌할 것 (정춘생위원)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원의 사적업무를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용혜인위원)

○ 지방의원 해외 연수가 지방의원들의 품질을 높이고 해외 선진 사례를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신정훈위원)

○ 행정안전부는 선거에 관한 주무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선거구 획정 및 정원을 책정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를 점검·개선할 것 (이상식위원)

○ 극우단체인 자유마을 조직원의 이·통장 조직 장악 및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조직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이광희위원)

○ 대구·경북 통합, 대전·충남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 (주호영위원)

○ 자치법규 개선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포함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는데 노력할 것 (권칠승위원)

○ 나주시 영산포읍의 환원 문제와 같이 도농통합 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동을 읍으로 전환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신정훈위원)

○ 신설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에 대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모경종위원)

○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등 공무원이 정치적 기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정춘생위원)

○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고 지방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해식위원)

○ 현장 인력부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패널티제도로 인한 증원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김성회위원)

○ 지방분권 및 지역을 위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할 필요 (이성권위원)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정책지원관의 핵심 직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 (용혜인위원)

○ 인천광역시 신설 자치구의 공무원 정원 산출과정에서 합리적인 적정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모경종위원)

○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해외연수 등의 체재비·항공료 등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신정훈위원)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개선권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 (위성곤위원)

○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용혜인위원)

○ 시행령 또는 규칙 등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명시할 것 (용혜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치적 중립 조항 삭제·복원 경위와 활동 실태를 점검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보조금·행정지원 조정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권칠승위원, 신정훈위원, 이광희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개발 사업 관련 특정 업체 우대, 발전기금 요구 의혹과 기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위법·부당 사항 발견 시 감사원 감사 요청 및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 (권칠승위원, 신정훈위원, 채현일위원)

○ 2021년 5·18보상법 개정으로 수배·연행·구금·해직·학사징계자가 법에 명시되었고 8차 5·18보상심의가 진행중에 있는바, 일부 유형의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기준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 (채현일위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관리단이 재단업인의 인감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위조인감을 사용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할 것 (모경종위원)

○ 장생 탄광, 우키시마호 문제와 관련한 유해발굴 및 희생자 신원확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상식위원)

○ 고양 금정굴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현황 관리를 할 것 (김성회위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지속 관리할 것 (신정훈위원)

○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방부의 협의방안 마련 등 이행 관리에 노력할 것 (모경종위원)

○ 5·18민주화운동 8차보상 지연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문 발송 및 구체적 처리 일정을 제출할 것 (이광희위원)

○ 여순사건위원회의 2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 후 이름, 경력, 임명일자 등이 세부적으로 표시된 명단을 제출할 것 (용혜인위원)

【지방재정경제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마련할 것 (한병도위원)

○ 지방공기업의 금고 지정 내규 마련 및 협력 사업비 세입예산 편입·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한병도위원)

○ 행정안전부가 예규로 추진하고 있는 직접시공 평가제의 비율을 낮추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서범수위원)

○ 공공재정환수제도 도입 이후 환수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허위 또는 무자격자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서범수위원)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에 앞서 공공재정지급금 청구 및 지급 체계 개선, 공공재정에 대한 청구요건 홍보 등 부정청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서범수위원)

○ 세종시 - 제주도와 같이 정률제 도입을 통한 형평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서범수위원)

○ 더본코리아와 산하 지점 외식산업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체결한 계약 중 지방계약법, 조달규칙 등 관계 법규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것 (이해식위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사들이 부담한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등이 정산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점검할 것 (박수민위원)

○ 지자체 보편복지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용혜인위원)

○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 (이달희위원)

○ 사회적협동조합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지방세 감면혜택에서 배제되어 있고, 생활협동조합과 달리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경우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시행령 및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용혜인위원)

○ 지방세연구원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행위 사건 중 행정안전부가 관여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할 필요 (김성회위원)

○ 취득세를 과다하게 징수하게 된 경우 해당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환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김성회위원)

○ 장기렌트카에 대한 세재혜택이 고소득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이광희위원)

○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세 및 지역화폐 활용 분야에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용혜인위원)

○ 만성 고액체납자 및 외국인 고액 체납에 대한 대응 계획이 필요하고,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공정한 과세 원칙 적용을 위한 징수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한병도위원)

○ 지방출자출연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사동종기관의 평균임금' 산정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박정현위원)

○ 지방정부의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재정공제회 등 소수 기관만이 맡고 있는데, 출연연구기관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폐지하고, 민간의 경쟁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 (신정훈위원)

○ 서울시의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요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해제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TBS 정상화 조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채현일위원)

○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통폐합 사례들의 폐해 등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후속조치들을 이행할 필요 (박정현위원)

【국가기록원】

○ 5·18민주화운동 관련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신정훈위원)

○ 비상계엄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모경종위원)

【정부청사관리본부】

○ 21그램의 관저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취한 조치 경과 및 앞으로의 조치 계획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보고하며, 행정안전부 차원의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 (용혜인위원)

○ 정부청사 화장실에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청사 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서범수위원)

【대통령기록관】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기록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 여부, 지정권자 확인 및 지정기록물 관리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모경종위원)

【이북5도위원회】

○ 이북5도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인건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북도민 지원과 이북 관련 조사연구 사업 등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조직·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 (모경종위원)

○ 국외출장 내실화 및 행정자문위원회 수당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한병도위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행정안전부는 신원불상 변사자 DB센터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신원불상 변사자의 DNA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양부남위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가융합망 2차사업을 세부 점검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채현일위원)

○ 배터리 이설 등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도록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검토할 것 (고동진위원)

○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709개 시스템의 재개통 현황뿐 아니라 데이터 복구 없이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 데이터복구 관련 사항을 공개할 것 (박수민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재발 방지 관련하여 불법 하도급 및 감리 부실에 대한 배상 조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업무 책임을 제고할 것 (이성권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프랙 보고서 관련 해킹 사례, 취약성 조치결과 등을 서면 보고할 것 (이해식위원)

【안전예방정책실】

○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개정 등 승강기 안전 정책·제도 개선 과정에서 관련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박정현위원)

○ 행정안전부는 노후 승강기에 대해 부품 교체주기 단축, 점검 강화, 승강기 안전등급제 도입 등 '리스크 기반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한병도위원)

○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도어 이탈 방지장치 기준 강화를 위한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고동진위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도 및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권칠승위원)

○ 행정안전부는 전동스쿠터·킥보드 등 전동 이동수단으로부터의 충격을 고려한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검토할 것 (위성곤위원)

○ 행정안전부는 좁은 골목길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행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 (박덕흠위원)

【자연재난실】

○ 행정안전부는 기후재난 항목을 재해연보에 신설하거나 별도의 기후재난 백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모경종위원)

【사회재난실】

○ 행정안전부는 산림면적대비 산불 발생 건수와 헬기 담수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별 헬기 수요 및 예산 수요를 확인하여 보고할 것 (용혜인위원)

【재난복구지원국】

○ 행정안전부는 온실 내 농작물을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박덕흠위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심리회복센터의 조직·업무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양부남위원)

○ 행정안전부는 재난구호성금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위성곤위원, 정춘생위원)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선거관리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이성권위원)

○ 위촉된 투·개표 사무원으로 인한 선거관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발·교육·관리 전반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성권위원)

○ 당원 당비 대납, 매표 행위, 조직적 경선 개입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일정 및 처리 계획을 명확히 수립·공개할 것 (박수민위원)

○ 검찰 수사체계 변화에 따른 선거범죄 대응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지휘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범죄 대응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박수민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적 보안 점검 및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선거 전산망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이달희위원)

○ 사전투표 및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장애·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망 분리 완전 이행, 서버 및 배터리 물리적 분리, 재해복구 전환 체계 실증 점검 등 선거 전산 시스템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이달희위원)

○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업무가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고, 법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식위원)

○ 지방의원 의원정수 산정과 관련하여 인구 기준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선거구 획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것 (이상식위원)

○ 외국인 지방선거권과 관련하여 외국인 유권자 규모 및 국적별 분포 변화, 실제 거주 여부, 국제적 상호주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 (박덕흠위원, 서범수위원, 고동진위원)

○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헌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수사 진행 여부와 별도로 선관위 차원의 법적 대응 방침과 조치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권칠승위원, 신정훈위원)

○ 종교단체 등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정당 활동과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 당원 가입 실태와 정치자금 흐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이해식위원)

○ 정당 당원 가입 및 정치자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실효적 감독이 가능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확인 권한 강화를 포함한 정당법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해식위원)

○ 부정선거 의혹 및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홍보와 함께 고소·고발 및 판결 결과 공개 등 실효적 대응을 강화하고,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 보호 관점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것 (주호영위원)

○ 부정선거 주장 및 혐오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정당사무 관할 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및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현수막 처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채현일위원, 모경종위원, 이해식위원, 정춘생위원, 위성곤위원)

○ 정당 등록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이른바 '현수막 정당'에 대해 정당법상 보고 의무 이행 여부, 조직 실체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채현일위원, 이해식위원, 정춘생위원)

○ 종교시설을 정당 사무소로 사용하는 행위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정당 사무소 설치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시할 것 (한병도위원)

○ 반헌법적·반국가적 활동 논란이 반복되는 정당에 대해 정당 설립·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되, 민주헌정질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에 선관위가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 (한병도위원)

○ 현직 유지 출마 규정의 형평성 문제와 의정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복수인 지역의 정당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을 정리하여 국회와 협의할 것 (신정훈위원)

○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관용차 등 공적 자원이 선거에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점검·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시 신속한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모경종위원)

○ 채용 청탁 및 특혜 등 인사 비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엄정한 징계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재점검하는 등 실효적인 조직 쇄신 대책을 마련하여 대국민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 (김성회위원)

○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허위·비방·모욕·혐오 표현 등 실질적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탐지 프로그램의 장기적 무상 활용 또는 대체 수단 확보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양부남위원)

○ 정당 및 선거 관련 위법 의혹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과 조치를 통해 선거관리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 것 (박수민위원)

○ 자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구조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원 수준에 준하는 구체성과 투명성을 갖춘 감사결과 공개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감사 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 (박수민위원)

○ 선거관리시스템 등 핵심 전산 인프라에 대해서는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계약 방식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선거 직전 계약 변경 등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것 (박덕흠위원)

○ 정당사무소와 선거사무소의 법적 지위와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박덕흠위원)

○ 재외선거관 제도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근무 형태·업무 내용·외국어 능력 요건 등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권칠승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산·서버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방호체계, 백업·소산 및 재해복구 체계를 종합 점검·보완하여 유사 상황 재발을 방지할 것 (채현일위원)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을 중심으로 한 공신력 있는 민주시민·선거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와 연계한 선거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선거교육 지원 관련 입법)를 마련·추진할 것 (채현일위원, 이광희위원)

○ 단체·조직을 이용한 정당가입 유도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며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고동진위원)

○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문제 해소 및 정치적 다양성 확대를 위해 중대선거구제(3~5인)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 방안,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정춘생위원, 이광희위원)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통합 선거보도심의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의견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위성곤위원)

○ 사전투표 제도의 본투표 준용 원칙 확립을 위해 본인확인·명부관리·투표·개표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고 선거 신뢰성 저해 요소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주호영위원)

○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중앙·시도·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간 해석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지침 및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그 개선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것 (서범수위원, 이상식위원)

○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운영 성과와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기존 자문기구들의 기능·역할·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조직 혁신과 선거절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채현일위원)

○ 지방소멸 위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적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박덕흠위원)

○ 정치자금 배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거 선관위가 제시한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토대로 소수정당 배분 비율 확대 및 득표수·정당 수입 연동 방식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정춘생위원)

○ 경기도 국감에서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통화 녹취 내용과 관련하여, 시기·장소·행위자 특정 가능성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상 조사 개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 착수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 (서범수위원)

○ 신속하고 책임있는 결정, 사무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 수행, 장기적인 개혁과제 수행 등을 위해 선관위원장 상근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서범수위원)

○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및 관련 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서 외부인사 참여 확대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고동진위원)

○ 전자게시대 도입 확산에 따른 선거운동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 개정 권고 또는 전용게시대·전자게시대 설치에 관한 선관위 차원의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권고 여부를 검토할 것 (신정훈위원)

○ 선거비용 미반환 금액에 대한 징수·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납률 제고를 위한 행정적 조치 강화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한병도위원)

○ 공정선거참관단의 전국 단위 확대 운영과 인적 구성 다양화, 법적 제도화 및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투표용지 선정·인쇄 절차 확인 등 활동 범위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 (이달희위원)

○ 재외선거 투표율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환경을 반영한 재외선거 관리 특별대책 수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예산 절감과 선거관리 노하우 축적을 고려하여 재외선거관 파견기간 조정, 적정한 재외선거의 홍보방식 대책 등 재외선거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 (이성권위원)

○ 선거 관련 표현행위에 있어 ‘정당한 비판’과 ‘비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립하고 향후 지방선거·총선 등 연속적인 선거 일정에 대비하여 일관된 적용이 가능한 관리 기준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 (이상식위원)

○ 선거보도 심의의 형평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매체별·분산된 선거보도 심의체계를 통합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것 (이상식위원)

○ 계엄 및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직원 정신적 피해를 예방·완화하기 위하여, 일회성·개별적 상담 지원을 넘어선 종합적·장기적인 정신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상담 지원 범위 확대 및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이해식위원)

○ 선거보전금 미반환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현행 환수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함께, 미반환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며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선관위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 제도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 (주호영위원)

○ 재외선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방식과 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일동포 간담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재외선거 개선 대책을 구체화할 것과 함께, 재외선거 관련 주요 민원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반복·구조적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용혜인위원)

○ 투·개표소의 질서와 선거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질서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히 현행 벌금형 중심의 처벌 수준이 물가상승률과 사회적 위험성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처벌 수위 상향 필요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며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 (용혜인위원)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일제강점기 소록도에서 있었던 이춘상 의사 관련 사건이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 중지되었으므로,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윤건영위원)

○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들도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화해 방안을 검토할 것 (고동진위원)

4.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국】

【안전사회국】

5.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위성곤위원)

【인사관리국】

○ 위증 공무원에 대한 연금 박탈 등 제재 강화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 (신정훈위원)

○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추가 인상하는 등 영양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 (한병도위원)

【윤리복무국】

○ 계엄 기간 동안 부당하게 지시에 동원된 공무원을 전수조사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채현일위원)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정 시 상세 근거를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 (고동진위원)

○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제출할 것 (신정훈위원)

【재해보상정책관】

○ 정신질환과 관련한 공무상 재해보상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 및 객관적 데이터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용혜인위원)

○ 장해연금 급여 결정 시 중과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소득 발생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이광희위원)

6. 경찰청

○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국제범죄조직이 운영한 돼지도살스캠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할 것 (신정훈위원)

○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다중피해사기에 대해서 일선 경찰서가 아닌 국가수사본부 등 상위기관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할 것 (신정훈위원)

○ 피해액 4조원대의 사기사건(사건명 콕 코인 사건) 및 피액액 1조원대 사기사건(사건명 ICC-FVP)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철저히 수사할 것 (이성권위원)

○ 전세사기 피해 사건의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전세사기 수사의 신속한 진행 및 전세사기 피해 통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이달희위원)

○ 대구성서경찰서에 신고한 입금 유도형 사기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수사하고, 신고자에게 수사과정을 설명할 것 (이성권위원)

○ 검찰청 폐지 후에 마약수사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범죄에 대응을 철저히 할 것 (이성권위원)

○ 불법 대부업과 해외 캄보디아 감금·납치 범죄의 연계분석을 실시할 것 (이광희위원)

○ 경찰청 112 시스템상 불법 사채 범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 패턴을 파악할 것 (이광희위원)

○ 스토킹 담당 경찰관을 증원할 것 (박정현위원)

○ 스토킹범죄, 교제폭력, 가정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국으로 확대 개편할 것 (정춘생위원)

○ 교제폭력에 대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를 위하여 현장 경찰에 대한 교육 및 중앙경찰학교에서 관계성 범죄 초동조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것 (정춘생위원)

○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 위반 시 유치장 유치 신청을 의무화하고, 경찰이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용혜인위원)

○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지역경찰 역량을 강화하고, 친밀관계폭력 신고 시 친밀관계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배포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 (용혜인위원)

○ 위험성이 높은 가정폭력 사건 등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용혜인위원)

○ 살인에 선행한 관계성 범죄 등 통계 시스템을 보완하여 정확한 범죄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며, 관계성 범죄 등의 주된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별해 젠더 기반 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 (이해식위원)

○ 관계성 폭력 사건에 대해 위험성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광희위원)

○ 부평 가정폭력 살인사건, 동탄 교제살인사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미흡하게 이뤄졌으므로 향후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용혜인위원)

○ 동탄 교제살인사건에 부실 대응한 경찰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실시할 것 (용혜인위원)

○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부평 가정폭력 살인사건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를 검토할 것 (용혜인위원)

○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문제 및 강압, 부실, 의도성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2018년 10월 28일 광주 데이트 교제폭력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 (이광희위원)

○ 천안서북경찰서가 고 리주빈양 사건 관련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감찰을 실시할 것 (박정현위원)

○ 겸업이 아닌 채용을 통한 스토킹담당경찰관의 증원 필요 (박정현위원)

○ 퇴직 경찰관의 성범죄자 변호의 광고 단속 및 전관예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춘생위원)

○ 아동 유괴 및 관련 범죄의 통계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고동진위원, 이광희위원)

○ 아동 유괴범죄에 대응한 경보문자 발송 등 보호조치와 시스템을 마련할 것 (이광희위원, 이달희위원)

○ 아동 유괴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인근과 통학로 주변에 경찰을 배치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우범지대에 순찰차를 배치할 것 (고동진위원)

○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범죄 예방과 선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성범죄와 도박범죄 등 신종범죄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 (박덕흠위원, 이성권위원)

○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증원하고,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아동안전지킴이와 협력을 강화하며,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전문직위를 부여하여 장기근속 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이광희위원)

○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에 드러난 경찰의 부실한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이성권위원)

○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복잡하고 관할이 애매하지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고할 것 (김성회위원)

○ 일선 경찰에서 사건이 많다거나 복잡한 사건임을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고소장을 위법하게 반려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김성회위원)

○ 캄보디아 내의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등 국제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폐지된 외사국을 복원하고, 경찰청 내 재외 국민안전 전담기구인 재외국민보호계를 설치하며, 전문성 있는 외사 점담 수사인력 및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복구할 것 (신정훈위원, 위성곤위원, 정춘생위원, 한병도위원)

○ 외교부 등 정부 부처 간 상시적인 해외 공조 네트워크의 구축할 것 (신정훈위원, 한병도위원)

○ 경찰의 국제협력 대응을 특정 국가가 아닌 동남아 등 권역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공조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것 (이광희위원)

○ 캄보디아에 신속한 코리안데스크의 설치 및 협력관 증원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공동수사체계를 마련하고, 캄보디아 교민을 범죄조직의 보복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코리안데스크 설치되기 전 단기 대책도 함께 고민할 것 (신정훈위원, 용혜인위원, 한병도위원)

○ 프린스 그룹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취업사기, 감금 범죄집단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용혜인위원)

○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할 것 (서범수위원, 한병도위원)

○ 프린스 홀딩스와 연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회장 이용만에 대한 수사를 검토할 것 (이해식위원)

○ 캄보디아 사건 관련 온라인 구인·구직 공고, SNS 등 게시물들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하고, 민간과의 협력방법을 모색할 것 (채현일위원)

○ 해외범죄조직을 막기 위해 그 채널이 되는 국내 불법도박 및 중개 사이트를 막을 것 (모경종위원)

○ 캄보디아에 파견하는 인력을 선발 시 베테랑 수사 인력 등이 파견 인력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어학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지원 채널을 마련할 것 (모경종위원)

○ 캄보디아 사건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와의 협조를 잘 진행할 것 (권칠승위원, 김성회위원, 이상식위원)

○ 캄보디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대한 ODA 사업을 강화할 것 (윤건영위원)

○ 캄보디아와 신속한 연락을 위해 핫라인을 개통할 것 (윤건영위원)

○ 우리 교민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경찰을 해외에 파견해서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할 것 (이상식위원)

○ 해킹, 불법 피싱 등 확장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이광희위원)

○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과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소통을 할 것 (용혜인위원)

○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별개로 경찰이 독립적이고 책임있게 수사해서 결론을 낼 것 (용혜인위원)

○ 경찰의 사건 처리 소요기간을 산정할 때, 검찰에 송치한 이후 기간 및 경찰 재수사 기간을 포함하여 집계할 것 (양부남위원)

○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이후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영장 신청을 기각하거나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된 경우에 대한 통계를 집계할 것 (양부남위원)

○ 고소·고발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종결되는지 잘 살펴볼 것 (박덕흠위원)

○ 서울경찰청, 세종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의 검거율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치안역량 강화대책을 마련하며, 실질적 검거율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이성권위원)

○ 2023년 6월 한강 르네상스 아쿠아슬론(오픈워터 수영, 마라톤 결합) 대회의 수영 훈련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가 지연된 원인 등에 대해 진상을 확인할 것 (채현일위원)

○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SNS 채널 오픈채팅방에 집회 참석자를 돈을 주고 모집한 정황에 대해 수사할 것 (이광희위원)

○ APEC 기간 중 혐중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 (채현일위원)

○ 청와대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경호가 한 치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한병도위원)

○ 교통안전시설물의 표준규격, 표준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규격에 맞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도록 할 것 (모경종위원)

○ 올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가 연말에 몰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생일 전후 6개월에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할 것 (모경종위원)

○ 경찰이 2025년 5월부터 시범운영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효과성이 입증되는 경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지원할 것 (고동진위원, 주호영위원)

○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갱신주기를 1~2년으로 단축하고, 시력·청력·반응 속도 등의 적성검사와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제대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고동진위원, 주호영위원)

○ 고령 치매 환자인 운전자에 대해 의사, 가족 등이 신청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 (주호영위원)

○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반납 시의 지원 혜택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 (주호영위원)

○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해 제재를 할 것 (고동진위원)

○ 중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재고할 것 (신정훈위원, 박덕흠위원)

○ 증가하는 국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이달희위원)

○ 체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 (이광희위원)

○ 교통과 관계성 범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강화에 신경 쓸 것 (이광희위원)

○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의 간소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성권위원)

○ 스쿨존 탄력운영제에 대한 시범운영 실시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 (이상식위원)

○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도입, 교육제도 신설, 운전자격 확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고동진위원)

○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를 입건하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제도를 마련할 것 (서범수위원)

○ 이종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 (신정훈위원)

○ 산청 산사태 인명피해 관련 군수와 부군수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한병도위원)

○ 전공의들이 비타민제를 처방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노원경찰서와 병원 간의 커넥션을 밝힐 것 (김성회위원)

○ 통일교 세계본부장 관련하여 첩보제공자와 내사진행자 명단을 특검에 알릴 것 (양부남위원)

○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할 것 (박덕흠위원)

○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이달희위원)

○ 양평 공무원의 자필 메모에서는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규칙을 위반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권의식을 제고할 것 (이성권위원)

○ 양평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수사를 양평경찰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성권위원)

○ 양평 공무원의 메모는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므로 특검에 대해 독직폭행 또는 수사 강요로 수사할 것 (서범수위원)

○ 경찰의 승진임용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강압수사 이력 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것 (고동진위원)

○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이성권위원)

○ 대공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승진제도를 만들어 대공수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 (박덕흠위원)

○ 수사에 대한 이의 및 경찰관의 범죄에 대해 내부적인 감독과 견제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외부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주호영위원)

○ 민생범죄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법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사심사관 제도를 재도입하고, 수사경과자 및 전문·책임수사관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수사자격 유지제도 등 역량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광희위원)

○ 외국인 범죄 관련 통계 세분화, 전문수사팀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시스템을 체계화할 것 (이광희위원, 이달희위원)

○ 현대자동차 구사대가 이수기업의 노조원과 시민들을 폭행하고 경찰이 묵인한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평화적인 집회 보호를 위한 매뉴얼과 교육체계를 마련하며, 경찰과 토호세력의 유착문제를 해결할 것 (박정현위원)

○ 경찰과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등 토착비리와 관련하여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 (박정현위원)

○ 경위·경감 등에 대한 순환인사를 강화할 필요 (권칠승위원)

○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문화로 전환할 것 (이광희위원)

○ 시민감찰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용혜인위원, 이성권위원)

○ 시민감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것 (용혜인위원)

○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의 수사정보 열람 및 복사 권한을 확대할 것 (용혜인위원)

○ 피의자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사망 전까지 수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 및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강제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할 것 (용혜인위원)

○ 경찰청은 4조 3교대 제도의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일선 경찰과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박덕흠위원, 이달희위원, 이해식위원)

○ 비위 경찰관의 검찰 송치 현황 뿐만 아니라 기소, 재판 등 최종 형사처벌 결과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위재발자에 대한 현황과 처벌 결과를 별도 관리하며 이들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이성권위원)

○ 최근 5년간 범죄혐의 또는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지구대·파출소 등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되지 않도록 인사운영 지침을 개선할 것 (위성곤위원)

○ 기소된 경찰관과 관련하여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소속, 처분연도, 위반법률 외에 간략한 위반사건 개요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것 (박덕흠위원)

○ 경찰이 2019년 마련한 갑질 근절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 (이해식위원)

○ 경찰의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 감찰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 조치의 결과와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이성권위원)

○ 경찰의 수사 과오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경우 해당 수사사건의 범죄피해자, 유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것 (용혜인위원)

○ 경찰청 유치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장 사고 통계 분류 기준을 신설하고, 분리수용 준수율 등 핵심 운영지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타임라인 기록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CCTV 사각지대 및 노후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를 100% 설치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이성권위원)

○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임명하는 등 성평등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정춘생위원)

○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대면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정춘생위원)

○ 정량지표만으로 지방 및 범죄예방부서의 경찰인력을 감축하지 않도록 할 것 (이달희위원)

○ 지방경찰의 사기 진작 및 도서지역 등 특수성이 반영된 지방 승진 TO를 확대하고 경정 시험을 전국시험으로 환원할 것 (위성곤위원)

○ 홍보·감사·경무·미래치안·과학수사 분야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을 늘리고, 동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가능한 치안과 수사 분야로 전환할 것 (이광희위원)

○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것 (이광희위원)

○ 교통업무에서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게 특정업무경비(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것 (이광희위원)

○ 광역 기동중심의 순찰체계인 기동순찰대와 중심지역관서제도를 폐지하고 지역경찰의 인력을 증원할 필요 (위성곤위원, 이상식위원)

○ 전 정부에서의 경찰 조직의 개악에는 교통기능과 생활안전기능의 국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든 것, 사이버 안전과 사이버 수사를 격하시킨 것, 정보국을 폐지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광역팀을 운영한 것 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개선할 것 (이상식위원)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 (위성곤위원)

○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경찰청이 보유한 옥상, 주차장, 차고지 등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조사하고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보유차량의 전기화 등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할 것 (위성곤위원)

○ 형사사법포털(KICS)에 도입하는 인공지능이 CCTV 영상 등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할 것 (위성곤위원)

○ 경찰청 내에 인공지능(AI)과 관련된 특별팀을 구성하고, 경찰청의 인공지능 혁신 계획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 경찰의 수사 능력 강화를 위해 사건 증거자료를 디지털화하고 폐쇄형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 (위성곤위원)

○ 도청 기술의 고도화로 기존의 이동형 탐지 중심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안의 강화를 위해 상시형 도청 탐지 시스템을 도입할 것 (서범수위원)

○ 대형 플랫폼 및 핀테크 기업의 영장자료 회신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전자영장 회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의체·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를 지원하며, 회신기한 명문화, 지연 통보 의무화 및 긴급사건 우선처리 기준 등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 경찰의 날 변경 건과 관련하여 연구를 실시할 것 (이광희위원)

○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확인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할 것 (권칠승위원)

○ 수사기록 및 개인정보를 챗GPT, 제미나이 등에 입력해서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 (위성곤위원)

○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사기록을 챗GPT 등에 입력함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누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권칠승위원)

○ 경찰이 사용할 법률 지원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 큰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리걸테크 법안 등을 함께 살펴보고 추진할 것 (권칠승위원)

○ 경찰청에서 개최하는 캠페인의 최종 승인권자를 경기북부청 홍보담당관으로 정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권칠승위원)

○ 화성특례시와 용인특례시는 경찰관 1인당 관할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 재배치 등을 통해 치안서비스 취약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권칠승위원)

○ 2020년부터 공석인 경찰공제회의 감사관리이사, 금융이사, 사업이사를 임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 (박덕흠위원, 주호영위원)

○ 경찰공제회는 시장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자산을 늘릴 것 (정춘생위원)

○ 경찰공제회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으며, 직원들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 (박덕흠위원)

○ 폭발물 협박 허위 신고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서버와 익명의 이메일을 통한 협박 추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 또는 비용청구를 고려할 것 (채현일위원)

○ 노동조합의 폭력을 동반한 불법집회로 인해서 경찰이 받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고동진위원)

○ 폭발물 협박 허위 신고를 한 사례는 청소년, 학생이 많으므로 학교나 지역사회로 예방교육 캠페인을 확대할 것 (채현일위원)

○ 사전투표소 내 소란행위가 많지만, 경찰이 상주하는 사전투표소는 10%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전투표도 갑호 비상에 준하는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 (채현일위원)

○ 저위험권총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저위험권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 (용혜인위원)

○ 향후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갑의 사용을 최소화할 것 (이상식위원)

○ 경찰청이 적용중인 전자충격기의 성능 및 안전성 검사 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인체의 안전성을 담보하는지 확인할 것 (박수민위원)

○ 제압용 전자충격기는 임상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후 도입을 결정할 것 (박수민위원)

○ 전자충격기 구매 절차에 R3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박수민위원)

○ 경찰청이 경찰 장비의 개발사업에 관여하여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비개선에 투자해야 하는 시장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시장의 제품 중 성능이 좋고 안전한 장비를 값싸게 구매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지에 대해 검토할 것 (박수민위원)

○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경찰청장이 내란에 동조했고, 서울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가 국회를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막아선 것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차장은 현재 경찰 총책임자로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해주시길 바라고, 조직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또는 개혁 TF를 구성하며, 일부 경찰이 내란에 동조하는 등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 (윤건영위원, 한병도위원)

○ 국무조정실에 검찰개혁추진단에 경무관급 이상을 파견해서 수사권 관련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경찰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 (정춘생위원)

○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인사 등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할 것 (윤건영위원)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및 자치경찰의 실질화와 관련해서 경찰청이 수세적·방어적이지 않고, 적극적·주도적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것 (위성곤위원)

○ 정보 부서가 광역 단위로 통합되어 지역 정보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 (윤건영위원)

○ 제2중앙경찰학교 대상지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한병도위원)

○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의 1인당 검사비를 23만원으로 상향하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경찰관 전체로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약 200억원의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노력할 것 (한병도위원)

○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실태조사 이후 상담·치료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마음동행센터의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강화할 것 (이광희위원)

○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전화하는 112 상황실 인력은 줄이지 않도록 할 것 (박덕흠위원)

○ 지난 3년 동안의 경찰 조직의 운영실태 전반을 돌아보고 불법·부당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 (신정훈위원)

○ 2023년 9월 실시된 경찰 조직개편으로 중심지역관서제,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를 운영한 이후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인력이 부족해졌고, 외사국을 국제협력관으로 개편 및 시·도경찰청 외사과 폐지로 국제범죄 수사 전문 인력 경험의 단절 및 해외 국민 보호 공조 체계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관련 조직개편을 재검토할 것 (위성곤위원)

○ 전북경찰청 1층에는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부끄러운 역사는 반성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기술하고 역사에 남길 것 (정춘생위원)

○ 청원경찰은 경찰과 비교하면 입직경로, 범죄현장의 빈도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근속 승진 기간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 (권칠승위원)

○ 청원경찰의 군경력 불인정 및 기지급 받은 수당에 대한 환수는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와 같이 우선 환수조치를 중단하고 군 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용혜인위원)

○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청원경찰의 직급체제 마련할 것 (권칠승위원)

○ 경찰청에서는 육아휴직을 5개월에서 8개월 정도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달희위원)

○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해외범죄 포상금제도 기준을 정비할 것 (윤건영위원)

○ 경찰은 2024년 경비업 관련 협회 사무검사에서 지적된 사업비 등 부정사용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 (윤건영위원, 박정현위원)

○ 경찰병원 본원에 한의진료과를 설치를 검토할 것 (서범수위원)

7. 소방청

○ 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를 구축하고 119상황실 근무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이광희위원)

○ 소방 고위직 비위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소방서장 등 지휘관에 대한 전보·징계권을 소방청으로 이관하고 소방공무원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을 재정립하며 소방 고위직 간부에 대한 비리행위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것 (용혜인위원, 위성곤위원)

○ 대전·광주 등 인구 100만명 이상 광역자치단체의 소방본부장 직급 향상, 소방준감 등 중간 직위 신설, 중앙-지방 간 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의 협조를 강화할 것 (박정현위원, 이달희위원, 이상식위원)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취지에 맞게 조직, 인사, 예산의 재설계를 추진할 것 (정춘생위원, 채현일위원)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과 관련한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권칠승위원)

○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형 재난 출동대원의 PTSD 관리 강화, 찾아가는 상담실 전문 상담사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확충할 것 (모경종위원, 이광희위원)

○ 심신안정실이 실질적 치유가 가능한 표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 개선을 추진할 것 (박덕흠위원)

○ 대형재난 출동대원이 사고 발생 수년 후까지 전문적인 치료와 추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 관리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이성권위원)

○ 재해보상 전담팀 운영 등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모경종위원)

○ 일선 소방대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소방대원 피복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한병도위원)

○ 소방정 직급에 대한 현장지휘관 교육 이수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윤건영위원)

○ 국가보안시설의 배터리 위치 등 소방활동 관련 정보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에 위험물·기타 연소물질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김성회위원)

○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양부남위원, 이해식위원)

○ 기초 구급용품 구입 예산을 확충하는 등 기초 구급용품 재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정춘생위원)

○ 고층 및 노후아파트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염 가구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박정현위원)

○ 소방시설 표준자체점검비 현실화 및 소방시설 부실 점검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양부남위원)

○ 소방펌프 유량측정 장치의 성능개선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식위원)

○ 방화복의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세척 기준 등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 권장 내용연수 도입, 불량 소방용품 선별 방법 안내 등 노후 소방용품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윤건영위원)

○ 대형 건축물에 대한 감리자 지정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방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서범수위원, 용혜인위원)

○ KFI 방화포 성능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고동진위원)

8. 지방자치단체

가. 서울특별시

○ 한강 수상버스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성 및 환승가능 여부 등에 대해 다시금 점검할 것 (주호영위원)

○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적 효율화를 위해 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것 (용혜인위원)

○ 서울AI챗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에 대한 보호책임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 (위성곤위원)

○ 성동구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21그램' 관련 행정처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모경종위원)

○ 정부의 정책대출 보증금 상한액 및 대출 한도 축소에 대응하여 서울시 청년층의 주거지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이성권위원)

○ 육군사관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양질의 대규모 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국무회의에서의 건의 등 만전을 기할 것 (이상식위원)

○ 서울시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운전실과 관제센터 간 교신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상대응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김성회위원)

○ 서울시 지하철 운행과 관련하여 1인 승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건비를 축소 및 운행인원 등 고용인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김성회위원)

○ 행정안전부에서 TBS 방송국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철회하는 경우 방송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채현일위원)

○ 한강 수상버스 사업 후속 물량 계약서상 19노트 이상의 운항속도를 확보하지 못한 바, 운항속도 부족으로 인한 변상금을 관련 업체에게 청구할 것 (양부남위원)

○ 한강 수상버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수주 의혹이 있는 바, 이러한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 (양부남위원)

○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기부채납 시설 임차인에 대한 사전 고지 미비와 실질적 구제 노력 없는 고소·고발 위주의 행정이 아닌 유연한 대처를 하거나 적극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임차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위성곤위원)

○ 서울 영테크 사업에서 특정 업체 소속 상담사가 아닌 비영리법인 소속 상담사를 활용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기피해에 대해 전체 상담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용혜인위원)

○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기부채납 시설 임차인이 받은 피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자치구별 조사를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할 것 (모경종위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예산 사적 유용에도 불구하고 연임된 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만전을 기할 것 (김성회위원)

○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를 현재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것 (모경종위원)

○ 정부의 보편적 민생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부채 증가에 관해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 (이달희위원)

○ 서울교통공사의 사업소와 정비공장의 열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춘생위원)

○ 지방정부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전국 단위 시행사업 시 중앙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성권위원)

○ 정부의 보편적 민생지원금 정책에 있어서 서울시에 적용되었던 차등보조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이성권위원)

○ 한강 수상버스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훈련의 적절성 확보, 수상안전보안관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운항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이해식위원)

○ 서울시설공단의 지하도 상가 입찰 방식이 전체 단위에서 점포단위로 변화함에 따라 상인들의 협상력 약화 및 임대료 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채현일위원)

○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 이후 나타나는 시민 통행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채현일위원)

○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재개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 (채현일위원)

○ 채무 법인 청산 시 서울시와 수행기관 간 상이하게 적용되는 채권 소멸기준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용혜인위원)

○ 철도와 하천으로 나타나는 구로1동의 교통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윤건영위원)

○ 서울교통공사의 금고 지정 기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한병도위원)

○ 서울시의 저조한 교통문화 지수 극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김성회위원)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 (모경종위원)

○ 서울시 탄소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하여 정책적 검토를 실시할 것 (위성곤위원)

○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재점검을 실시할 것 (이광희위원)

○ 서울교통공사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냉매재생 및 냉동기 개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신정훈위원)

○ 서울런 관련 주관적 지표 외 객관적 성과 측정 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멘토링 제도 고도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 지하철 노동자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이광희위원)

○ 여의도 선착장 관련 도교 방식의 안전성을 이유로 체인 삭제를 추진한 바 이에 대해 서울시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 (이광희위원)

○ 안전 소홀 사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 (이광희위원)

○ 여의도 선착장 관련 설계 이력, 변경 사유, 비용 증감내역에 관하여 공개할 것 (이광희위원)

○ 서울시 가족센터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시범사업 중단 관련 진행과정 상 발생한 문제, 피해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방안을 마련할 것 (이광희위원)

○ 청년안심주택과 같은 공공사업에 임대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바, 보증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이광희위원)

○ 서울런 사업과 관련하여 사교육 업체에 대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이성권위원)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관련 충분한 주민설명 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설계상 문제 및 절차상 미비로 인한 주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 (이해식위원)

○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 및 민원 응대 미비로 주택 침수 피해를 야기한 강서구 사례와 관련하여 서울시 소속 기술직 공무원의 현장 관리 소홀 및 과실 여부를 정밀조사하고, 엄중하게 인사 징계를 하며, 실효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정춘생위원)

나. 대구광역시

○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의 동대구역 광장 사용 신청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광장 사용을 허가한 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윤건영위원)

○ 대구시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취수원 확보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요청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이성권위원)

○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 (이상식위원)

○ 기후위기 관련 태양광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 (위성곤위원)

○ 도심지 내 전투비행단 이전사업에 관하여 국가주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논의를 진행할 것 (주호영위원)

○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성과목표, 고용창출 효과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 (주호영위원)

○ 대구·경북 지역통합을 통해 나타나는 이점, 비용,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홍보를 통해 지방정부 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주호영위원)

○ 해평 취수원 이전 관련 '맑은 물 공급에 대한 협정서'가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없고 효력이 유효하므로 협정서 내용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양부남위원)

○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양부남위원)

○ 로봇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이달희위원)

○ 대구광역시장 궐위 상황에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서범수위원)

○ 비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 (서범수위원)

○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 비용을 미회수한 사안에 대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 (윤건영위원)

○ 지방정부의 재정적 한계에 관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이성권위원)

○ 대구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이상식위원)

○ 대구·군위군 통합 관련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대구·경북 통합의 토대를 마련할 것 (이상식위원)

○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할 것 (위성곤위원)

○ 청년작가전 폐쇄, 대구MBC 출입거부 사례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언론 대응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위성곤위원)

○ 대구 비행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구체적인 지원금액 등을 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주호영위원)

○ 중앙정부와의 교류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인사 운영 방안을 개선할 것 (주호영위원)

○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 (주호영위원)

○ 위기관리병동 폐쇄 전후에 대해 정신응급 대응에 관한 비교평가를 실시할 것 (권칠승위원)

○ 대구의료원 채용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부재 등 운영의 절차적 미숙에 관하여 시정할 것 (권칠승위원)

○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센터장 선임과 관련하여 기획조정부장이 센터장으로 지원하는 등 채용 공정성 부족 사태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양부남위원)

○ 대구 문화예술 분야 진흥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 (이달희위원)

○ 사회적경제과의 복원, 사회적 경제 부문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용혜인위원)

○ 동대구역 광장 사용 신청기한 준수에 관하여 형평성 증진을 위해 조례를 재검토해볼 것 (서범수위원)

○ 업무 효율화 및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대구시 산하 공단 9개와 출연기관 3개의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의 예산과 인원이 증가한 현상에 대해 사업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 (서범수위원)

○ 반구천 암각화 보존과 대구·경북권의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할 것 (서범수위원)

○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을 내용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관해 시 차원의 법적 대응을 하게 된 경위 및 소송비용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하도록 할 것 (위성곤위원)

○ 뉴미디어팀장 등 핵심 홍보인력 채용시 제도에 관하여 개선할 것 (위성곤위원)

○ 퀴어축제 불허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바 해당 사례와 같이 소송비용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용혜인위원)

다. 인천광역시

○ 인천발 KTX 사업 지연 경위를 점검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고동진위원, 박수민위원)

○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된 부정·비위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고동진위원)

○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투자 약속액 대비 실제 유입액 차이를 줄이기 위해 조기 자금 유입을 독려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기능 통합 및 전담 조직 구성을 포함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고동진위원)

○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직속 '외자유치 IR T/F'를 본부장급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고동진위원)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입주 기업들의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것 (고동진위원)

○ 섬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의료시설 접근성을 개선할 것 (고동진위원)

○ 연수구청 데이터센터의 전산실과 배터리실 공간 분리 및 화재대응 설비를 확충할 것 (김성회위원)

○ 관내 공공·민간 데이터센터의 리튬이온배터리 및 소화설비 현황을 조사하고, 리튬이온 특성에 부합하는 소화시스템으로 교체를 유도하는 등 민·관 합동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김성회위원)

○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잔여부지 추가 사용 규정 등 4자 합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관할권 이관 등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할 것 (모경종위원)

○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검단 등 매립지 직접 영향권에 우선 사용되도록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성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 (모경종위원)

○ 검단구에 대한 재정 지원과 북부권 종합계획 등 검단지역 발전을 인천시가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것 (모경종위원)

○ 북부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북부권 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을 재검토할 것 (모경종위원)

○ 검단신도시 다목적체육관이 주민 체감형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LH·서구청이 협력하여 추가 재정 확보 및 주민 참여 기반의 설계 보완안을 마련할 것 (모경종위원)

○ 상상플랫폼의 운영 및 재정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임대·입주 계약 공정성 감사, 안전 개선 및 방문객 접근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 (모경종위원)

○ 인천관광공사 직원 부당징계 확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 (모경종위원)

○ '도도하게 살아보기' 사업이 체류형 섬 관광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특정 단체 중심 운영을 지양하고 사업 구조를 개선할 것 (모경종위원)

○ 인천시 공공기관장 후보자 검증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정비할 것 (모경종위원)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시 들개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모경종위원)

○ 인천환경공단의 반복되는 근로자 사망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사 구조 등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할 것 (모경종위원)

○ 검단지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과 하천 정비사업을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 체계를 수립할 것 (모경종위원)

○ 청년 해외활동 사업 추진 시 외교부·행안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모경종위원, 이해식위원)

○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용지 및 물류유통시설용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모경종위원)

○ 검단 교통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확충 및 연결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모경종위원)

○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모경종위원)

○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를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할 것 (박덕흠위원)

○ F1 그랑프리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재정부담 및 환경문제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 타당성을 판단할 것 (박덕흠위원, 박정현위원)

○ 인천시 출생정책 6종 및 만 18세까지 1억원 지원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박덕흠위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4자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박덕흠위원, 박수민위원)

○ 검단구·제물포구·영종구 신설 및 조정에 따른 재정 확보와 행정 절차 정비를 위해 인천시가 적극 지원할 것 (박정현위원)

○ 송도 국제도시 R2지구 개발사업의 특정 기업 특혜 의혹 및 반복 중단 경위를 규명하고, 감사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 (박정현위원)

○ 부흥119안전센터와 공항119안전센터의 근무여건 개선 및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건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박정현위원)

○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하여 해상풍력 인허가 기록 관리를 체계화하고, 중앙정부 및 권역 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소통 방안을 마련할 것 (박정현위원)

○ 영흥 화력 부지를 '석탄-암모니아 혼소'가 아닌 재생에너지 인프라 허브로 전환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박정현위원)

○ 최근 발생한 맨홀 질식·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인천환경공단 책임자에 대한 적정 조치 및 재발 방지를 포함한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 (신정훈위원)

○ 제물포 르네상스 항만 재생 사업을 제물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이해식위원)

○ 특정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규모·비중 및 집행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이해식위원)

○ 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 (이해식위원)

○ 2026년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인천시 및 10개 군·구에 전담 부서와 관련 조례, 민관협력 통합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하고, 조직·인력·예산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정춘생위원)

○ 인천도시공사 등 시 산하 공공기관의 관급공사에서 임금·대여대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 관리 강화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정춘생위원)

○ 인천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인사 전반을 재검토할 것 (한병도위원)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에서 문화공연 위주 지출을 조정하고,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평화교육을 강화하여 기념·추모·교육 기능의 균형을 도모할 것 (한병도위원)

○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기간 중 발생한 정치적 성격의 집회 및 협력단체 활동을 점검하고, 행정의 중립성과 시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력단체 지정·운영 기준을 정비할 것 (한병도위원)

○ 옹진군 단체장 관사 부활 및 운영비 지원 실태를 인천시 차원에서 관리하고, 관사 폐지·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조례 등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한병도위원)

○ 인천관광공사가 금고은행으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를 임직원 대출금리 우대 등 내부 편익이 아닌 공익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하고, 관련 내규를 정비할 것 (한병도위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긴급 심야 운행 복원, 앱 활용 배차시스템 시범 운영, 이동권 관련 예산 상향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한병도위원)

○ 민간 시행사의 공공기여금을 행정청사 등 비주민편익시설에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한병도위원)

라. 대전광역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신고된 전기공사업 업체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고동진위원)

○ 대전광역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박덕흠위원)

○ 도시철도 2호선 신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고동진위원)

마. 세종특별자치시

○ 하천변 진입 차단 시설 보완 및 야간 인식 강화 등 실질적인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권칠승위원)

○ 상가 공실 회복을 위해 용도규제 완화, 상권 활성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민관 협력 공동 대응을 추진할 것 (서범수위원, 이광희위원, 용혜인위원)

○ K-마이스터, 그린랩 등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업체 특혜 의혹 및 투기 논란에 대해 철저히 점할 것 (윤건영위원)

○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산하기관장 채용 시 자기검증기술서 제공을 의무화하여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것 (윤건영위원)

○ 민간 위탁기관 선정 심사 시 위원들의 전문성 입증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없도록 전문가 위촉 범위를 재정비할 것 (용혜인위원)

○ 2026년 공급물량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전기차 구매 수요를 충족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보완할 것 (위성곤위원)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시범 작성 및 탄녹위 운영 내실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 (위성곤위원)

○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업무 환경 개선 및 운영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 비율 재조정과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 (이광희위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발생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 (이광희위원)

○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의 이직률 최소화를 위해 근무 체계 개편 등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이광희위원)

○ 보통교부세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주호영위원)

바. 경기도

○ 외국인 혐오·차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 (정춘생위원)

○ 경기도 탄소중립목표 이행 부진 관련 수송부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등 관련 보조금 집행을 촉진하고, 건물부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열 부분 관련 탄소중립정책을 마련하는 등 탄소 저감과 재생에너지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위성곤위원)

○ 2026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선거구 획정시 인구비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수가 공정하게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식위원)

○ 경기도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식위원)

○ 불법 사금융 피해, 해외 유인 및 납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특별사법경찰단 제도를 점검하고 관련 피해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 (이광희위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매칭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타 사업비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사업 진행시 재원을 전액 국비로 마련할 것 (이성권위원)

○ 경기도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관련, 사업 진행시 의견 수렴 기회 확대, 은둔형 청년 참여 고취, 지능검사 결과를 사업참여자 조건으로 요구하는 진입장벽 해소, 도 산하기관·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한 경계선지능인 일경험처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할 것 (권칠승위원)

○ 화성시 소방서당 관할 인구는 약 100만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소방 수요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가하는 현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성시 내 소방청사를 신설·증설할 것 (권칠승위원)

○ 통합데이터센터 입주 전까지 경기도 전산실 내 노후화된 UPS 배터리를 적절히 관리할 것 (이해식위원)

○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UPS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이해식위원)

○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경기도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할 것 (이해식위원)

○ 양평 공흥지구 특검 수사 관련, 단월면장 사망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 (주호영위원)

○ 경기국제공항 유치 자문위원의 경기국제공항 전략수립 연구용역 낙찰 관련 입찰비리 의혹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 발견시 조치를 취할 것 (용혜인위원)

○ 대북전단 살포 관련 특별사법경찰단의 순찰활동 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의혹이 있으므로 관련 점검을 실시할 것 (윤건영위원)

○ 고양시장은 고양시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은 절차적 위법이 있고 고양시민과 시의회의 반대가 있는 상황이므로 고양시청의 백석동 이전을 방지하고 원안대로 신청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 (김성회위원)

○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청사용지 조성사업을 신속히 준공하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원할 것 (김성회위원)

○ 교제폭력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경찰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신정훈위원)

○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확대·심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할 것 (신정훈위원, 한병도위원)

○ 극저신용대출사업 연체자 등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박덕흠위원)

○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 (김성회위원)

○ 경기도 내 지반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반침하 위험지역 관련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공개할 것 (모경종위원)

○ 경기도 내 침수흔적, 지진발생이력, 홍수위험, 하천범람, 가뭄취약 등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활용·취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할 것 (모경종위원)

○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3종 세트 관련, 경기도 기후보험이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추진 중인 기후보험 정책과 연계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박정현위원)

○ 경기도 기후보험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박정현위원)

○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19구급대 등이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양부남위원)

○ 119구급대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 (정춘생위원)

○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돌봄 통합지원법」에 따라 경기도 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할 것 (정춘생위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외에도 4050 세대의 이중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원할 것 (정춘생위원)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정부에서 관련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 (이달희위원)

○ 충남 부여군의 사례와 같이 지역화폐를 1회성 결제 외에도 가맹점 간 재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내 화폐로서 기능하고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위성곤위원)

○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하여 철도망·도로망 건설이 필요하므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및 경기남부 반도체선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예산 당국과 협조할 것 (이상식위원)

○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국도 45호, 국지도 57번, 국지도 82번, 지방도 321번의 확장 또는 신설을 검토할 것 (이상식위원)

○ 용인시 이동·남사읍 일대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변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상식위원)

○ 주 4.5일제 정식 도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주 4.5일 근무제 시범사업의 효과 및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를 운영할 것 (이광희위원)

○ 주 4.5일제 도입 관련 경기도 시범사업 참여 기업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사자 규모와 업종을 확대하고, 계량·실증 가능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며, 경기도 시범사업과 정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환류대책을 마련할 것 (양부남위원)

○ 거북섬 웨이브파크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이성권위원)

○ 양평 공흥지구 하수처리장 특혜의혹 관련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할 것 (권칠승위원)

○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규명하면서도, 신속하게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해식위원)

○ 노동자 산재사고 사망 감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감독관 지정권한을 경기도에 위임하는 등 관련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 (이해식위원)

○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공공기관 이전 관련 문제점 및 우려에 대한 보완점과 대책을 마련할 것 (서범수위원)

○ 하남 유니온파크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자원순환시행계획에 사업장 내 유해물질 저감계획 및 노동자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용혜인위원)

○ 환경기초시설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재사고에 취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에 따른 재난·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화 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용혜인위원)

○ 경기북부 접경지역 내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단체나 국제기구, 남북평화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남북 공동 방역방안을 검토할 것 (윤건영위원)

○ 경기도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관련 클러스터 입주 업체에 저렴하게 분양하고 인력양성, 설계 검증, 시제품 생산, 연구개발 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 개최 및 자문단 구성 등을 추진할 것 (고동진위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도비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박덕흠위원)

○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서울-경기-인천-환경부 간 4자 협의체 합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매립지 사용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4자 협의체 합의 재검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모경종위원)

○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위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대책·계획을 제출할 것 (박수민위원)

○ 경기도 공공기관의 인력난에 대하여 개별 공공기관 내 업무 배분이나 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박정현위원)

○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급공사 진행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려할 것 (정춘생위원)

○ 공공행정 내 생성형 AI 활용시 내부 데이터 외부 유출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AI 책임관을 지정하고 TF를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대상에서 관외 사망자 또는 신원불명자가 제외되는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 (이광희위원)

○ 고양 K-컬처밸리 조성 관련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미국계 기업인 라이브네이션이 단독으로 응모한 상황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개발 우려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지체보상금 부과에 대하여 보고할 것 (서범수위원)

○ 안산 ITS 구축 사업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청탁 의혹이 있는 등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용혜인위원)

○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운영대행사로 코나아이로 선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정리하여 보고할 것 (고동진위원)

○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운영대행사의 운영상 문제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찰 과정·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박덕흠위원)

○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시 전력 공급 및 송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산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 (신정훈위원)

○ 바잘트섬유 소재 질식소화포가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 따가움, 간지러움, 발진 등을 동반할 수 있어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소재의 질식소화포 도입을 추진할 필요 (용혜인위원)

○ 국비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경기도 차원에서 선감학원 옛터복원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 139기를 공설묘지에 안장키로 한 당초 계획을 철회하여야 하며, 향후 유해 안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계획과 목표를 수립 필요 (용혜인위원)

사.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연구원 승진 비리 등 불공정 인사 관련 특정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감사 결과를 제출할 것 (용혜인위원)

○ 강원특별자치도의 물재이용량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용혜인위원)

○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의 공헌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위성곤위원)

○ 도암댐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권칠승위원)

○ 높은 누수율에 노후화까지 심각한 상수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서범수위원)

아. 충청남도

○ 충청남도가 탄소중립경제를 위해 암모니아 혼소발전 및 수소 혼소발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방식은 경제성이 낮고 전력거래소의 청정수소발전의무화 제도(CHPS) 지원 대상에 낙찰되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 (박정현위원)

○ 충남도 전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율이 53%로서,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 9개에 대해서 조속히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할 필요 (고동진위원)

○ 충청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를 개선할 필요 (정춘생위원)

○ 충청남도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를 관리할 필요 (정춘생위원)

○ 충청남도의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에 수도권 지역의 사업장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관리할 필요 (박덕흠위원)

자. 전북특별자치도

○ 현행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전북 지역이 미포함됨에 따라 전북이 해당 특별회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정춘생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이 부진한바 사업선정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 및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정춘생위원)

○ ESS 관련 전문인력 확보 등 ESS 배터리 관련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향후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 (고동진위원)

○ 도지사 직속 청년 정책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 (모경종위원)

○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모경종위원)

○ 청년들의 목소리가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 (모경종위원)

○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것 (채현일위원)

○ 현행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공무원 대상 주 4일제를 초등학교 6년 이하까지 확대하도록 할 것 (박덕흠위원)

○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박덕흠위원)

○ 지역 내 균형성장을 위해 동남권, 서남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박정현위원)

○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준비에 철저히 신경을 쓰도록 할 것 (박수민위원)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이 전주로 이전한 이후 높은 이직률이 나타나고 있는바 직원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 (박수민위원)

○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자치경찰제가 전북 지역에서 시범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이해식위원)

○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후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가 방치되고 있는바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것 (김성회위원)

○ 새만금 대규모 관광레저용지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김성회위원)

○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됨에 따라 나타나는 행정의 불연속성 및 재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신정훈위원)

○ 식품사막화 현상과 관련하여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정춘생위원)

○ 지역사회 돌봄에 관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정춘생위원)

○ 익산시 로컬푸드협동조합 운영권 계약해지 요청 관련 사안 처리 및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박덕흠위원)

○ 전북연구원 내 재난 관련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성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 (고동진위원)

○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내 승인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할 것 (고동진위원)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만큼 공직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모경종위원)

○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모경종위원)

○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해결방안을 도모할 것 (채현일위원)

○ 농어촌 기본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채현일위원)

○ 구조구급과, 교육훈련과의 부재 등 작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조직규모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박정현위원)

○ 소방관 피복비 관련 문제에 관하여 점검 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한병도위원)

○ SMR 도입 및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해볼 것 (박수민위원)

○ 전주시설관리공단 인사비위 의혹 등과 관련하여 선진적인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 (이해식위원)

○ 침수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중점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김성회위원)

○ 지역소멸지역의 재정 자부담 능력 증진이 가능하도록 정읍시 사례 등을 인구소멸, 지방소멸 문제 관련 극복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활용할 것 (신정훈위원)

○ 강원, 제주를 포함한 특별자치도에서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치경찰의 모범을 보일 것 (이해식위원)

○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건물의 준공 지연으로 인한 활용이 미비하고 준공 이후 방치되고 있는바 향후 활용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해당 내용을 도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것 (이해식위원)

○ 전주시설관리공단의 채용관련 의혹에 관련하여 선진적인 행정을 구현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 (이해식위원)

○ 전북 소방관 피복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특정 업체가 6년간 전체 계약의 약 68.9%를 독점하면서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바 이와 관련하여 예산 증액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한병도위원)

○ 시·군별 지방공공요금 관련 필수 생활서비스 요금 간 과도한 편차 및 지자체별 원가산정기준의 비공개 등 표준원가 검증체계 부재한바 관리 조정 대책을 수립할 것 (한병도위원)

○ 부족한 AI 전문인력 확충, 직렬 신설 등 AI 사업 추진 및 AI 행정을 위한 대응계획 마련하도록 할 것 (한병도위원)

○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5성급 호텔 확보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도록 할 것 (고동진위원)

차. 경상남도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남해군에 대해 정부가이드라인인 30%까지 도비 지원을 확대할 것 (용혜인위원)

○ 거제남부관광단지와 관련하여 거제단지 지정고시를 철회하여야 한다는 사회대통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하고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권고할 것 (용혜인위원)

○ 조선업과 관련하여, 숙련 노동자 이탈 문제, 하청·협력업체의 저임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할 것 (이상식위원)

○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 사고 이후 경상남도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할 것 (윤건영위원)

○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대책기구를 만들어 공동으로 연구하여 모니터링하여 본류의 수질 개선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보를 철거하여 강의 유속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위성곤위원)

○ 김해 화포천습지과학관 황새 폐사 사건, 거제씨월드 돌고래 폐사 사건 등 동물 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의 관리책임을 다하여 특사경 인력을 확충하고 시·군과 함께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이광희위원)

○ 산불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정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이달희위원)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낙동강 취수 오염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도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 (이성권위원)

○ 경남도청이 KAI의 노동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를 위한 프레스센터 이용 신청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 확인할 것 (권칠승위원)

○ 도 내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운영을 실질화 할 것 (위성곤위원)

○ 산청 산불 사망사고로 제기된 예방진화대 운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용혜인위원)

9. 공공기관

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마. 공무원연금공단

○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적연금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의 계약 시 "회원가 미만 공급 금지"를 명시하고, 판매 시에도 회원가와 일반인 판매가 사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격차가 유지되도록 요금 체계를 정비할 것 (이광희위원)

바. 한국도로교통공단

○ 전북면허시험장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으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에 대해 더 철저히 감사하고 징계할 것 (김성회위원)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상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예산은 모회사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박정현위원)

○ 2020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 따라 모기관이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것 (박정현위원)

○ 도로교통공단은 자회사 현장관리자 및 행정인력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할 것 (박정현위원)

○ 도로교통공단은 차량유도원이 과업내용서 상 자격요건을 뛰어넘는 대형버스 차량 정기검사 업무에 필요한 외부지원을 지시했고, 향후 차량유도원이 정기차량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를 개정하겠다고 발언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획을 재고할 것 (박정현위원)

○ 과업내용서에 적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운전면허시험장의 차량일상점검 업무는 차량정비원이 담당하도록 할 것 (박정현위원)

○ 결빙사고를 포함한 계절성 재난형 교통사고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결빙사고 다발구간 지정제도 등을 신설하여 추진할 것 (이성권위원)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0.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가. 서울경찰청

○ 서대문경찰서의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와 관련해 111명의 사범을 검거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유명 먹방유튜버에 대한 스토킹·협박 협의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내용에 문제가 지적되므로, 수사역량 강화에 힘 쓸 것 (이성권위원)

○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에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정춘생위원)

○ 서울경찰청에 대한 수사 기피 신청율이 경기남부경찰청 보다 2배 높고, 보완수사·재수사 요청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관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수사 품질 및 완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 아이들이 학교폭력 걱정 없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 (이성권위원)

○ 서울에서 2017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운영된 후이원그룹의 계열사인 후이원페이 환전소가 자금세탁의 창구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수사할 것 (모경종위원)

○ 국회의 경비와 치안을 위해 경찰 인력은 파견을 보내되 그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를 국회에 배속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권칠승위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짜 출근을 위해 경찰청이 수동으로 신호를 통제해 주고 에스코트를 했고, 이를 취재한 기자를 건조물 침입죄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채현일위원)

○ 경찰청이 마라톤 행사의 협조 요청에 무조건 협조하기 보다는 경찰의 업무와 안전을 챙기면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것 (고동진위원)

○ 상계백병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이후 해당 사건은 광역수사단에 재배정되었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김성회위원)

○ 혐중 집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특단의 대책을 실시할 것 (채현일위원)

○ 7월 혐오 집회에서 중국 국기, 주석과 대사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에 대한 사건에 신속히 조사를 할 것 (채현일위원)

○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 중에 외국 원수나 사절의 사진을 찢는 경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왕왕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잣대로 수사할 것 (고동진위원)

○ 서울불꽃축제의 불법주차를 단속할 방법을 강구할 것 (김성회위원)

○ 2025년 10월 24일에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되는 2025 핼러윈 대책회의 내용에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대응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이므로 제대로 점검하여 제2의 참사를 막을 것 (윤건영위원)

○ 전동킥보드 사고 4건 중 1건이 16세 미만의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여업체들이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므로 대여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 (김성회위원)

○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 스쿨존에서 2024년 17,554건의 과속이 단속되는 등 과속이 다수 발생하는 스쿨존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한병도위원)

○ 2024년에 발생한 연희동 싱크홀 사고로 동승한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 역시 피해자임에도 80대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은 도로관리부실이라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것으로 무리한 것으로 이 같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하지 않도록 할 것 (이광희위원)

○ 2차선을 주행하던 경찰차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1차선에서 주행중인 피해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었고, 피해차량이 향하고 있던 병원 장례식장에까지 가서 음주측정을 하고, 블랙박스 원본을 받아가는 등 사회통념에 반하는 부적절한 대응을 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조직을 만들 것 (이광희위원)

○ 민중기 특별검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시기는 공사 수주 정보로 인해 주가가 상한가로 상승한 이후 오명환 대표가 주식을 판매한 시기와 거의 동일한데, 이는 전형적인 주식투자 사기라고 생각되므로 경찰에서 수사할 것 (박덕흠위원)

○ 최성해 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 8인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되었는데, 최성해 총장 등은 2012년 상장 대장을 의도적으로 폐기한 증거인멸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담당 검사를 만나서 회유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수사할 것 (정춘생위원)

○ 2023년 5월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분신사건에 대한 악의적 왜곡기사에 사용된 영상 화면이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CCTV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영상 화면의 유출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재개되었는데, 이에 대해 확실히 수사하고, 이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엄벌할 것 (용혜인위원, 이해식위원)

○ 서대문구청장이 동네 정원대보름 척사대회때 돈통에 5만원 지폐를 넣은 것은 지역공동체의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므로 이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 (이해식위원)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무속인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현금다발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검찰 관련 사건에서 예외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할 것 (이해식위원)

○ 국회 위증 및 불출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 (한병도위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의 개인정보가 국민의힘에 유출되었고, 국민의힘은 전국 교사·선거권자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교육특보, 조직특보 임명장을 발급했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이해식위원)

○ 수사는 정치 등에 휘둘려서는 안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 (고동진위원)

○ 18세 미만 청소년의 자전거 교통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할 것 (모경종위원)

○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 선동, 집회에서 걷은 돈을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영치금으로 지급한 혐의와 관련하여 전광훈 목사에 대해 소환조사를 실시할 것 (박정현위원, 이상식위원)

○ 지난 정부 2년 동안 수갑 사용이 96% 증가했는데, 경찰이 폭압성을 띄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할 것 (이상식위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실 수사와 늑장 수사를 한 경찰관에 대해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것 (용혜인위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민원을 넣은 민원인 40여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용혜인위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고, 기존 수사에 대해 감찰할 것 (박정현위원, 이해식위원, 채현일위원)

○ 서울 시내 경찰서에도 JMS의 정명석을 변호, 조력하고 있는 형사·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 (양부남위원)

○ 인종, 국가, 성별,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편견이나 혐오 감정에 기반하여 저지르는 범죄인 혐오범죄를 단속해야 하는데, 이를 단속할 법률적 근거는 없으므로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위성곤위원)

○ 수사관 기피신청에 대한 수용률 하락 및 수사관 기피신청 사유에 공정성 의심이 많은 상황을 개선할 것 (이광희위원)

○ 서울경찰청에 금품수수 비리와 성비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 (고동진위원)

○ 기동대원의 과도한 근무를 강요하는 행사를 자제할 것 (이성권위원)

○ 양회동 열사 CCTV 유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수사이의신청을 면밀히 검토하며, 경찰이 CCTV를 유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만큼 자체 감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 (용혜인위원)

○ 경찰청이 적용중인 전자충격기의 성능 및 안전성 검사 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인체의 안전성을 담보하는지 확인할 것 (박수민위원)

○ 제압용 전자충격기는 임상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후 도입을 결정할 것 (박수민위원)

○ 전자충격기 구매 절차에 R3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치할 것 (박수민위원)

○ 경찰청이 경찰 장비의 개발사업에 관여하여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비개선에 투자해야 하는 시장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시장의 제품 중 성능이 좋고 안전한 장비를 값싸게 구매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지에 대해 검토할 것 (박수민위원)

○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를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시민 등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일반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 개정을 추진할 것 (고동진위원)

○ 인공지능 활용 오류로 인한 인권침해·업무상 과오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조직에서 인공지능 담당 책임관 지정, 주기적 교육 및 검증, 사용 기록 감시체계 구축 등을 조직적 대책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통계, 교제폭력 잠정조치 현황 등 주요자료를 지방청의 비시스템 수작업 입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기 취합 및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통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위성곤위원)

나. 대구경찰청

○ 투자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범죄 등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것 (윤건영위원, 주호영위원)

○ 2025년 6월 대구 스토킹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죄피해평가제도를 활용하고, 구속영장청구를 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가해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잠정조치 3-2),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양부남위원, 용혜인위원)

○ 2025년 6월 대구 스토킹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스스로 반납했고, CCTV를 설치했지만 감시망을 우회해서 침입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서범수위원, 양부남위원)

○ 증가하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청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서범수위원)

○ 스토킹을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최대 1개월간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를 위한 잠정조치 4호의 결정률은 2023년에는 대구가 높지만 2022년, 2024년, 2025년에는 대구가 전국평균보다 낮은데, 해당 결정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철저히 업무를 추진할 것 (권칠승위원)

○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신생아에 대해 5개월에 걸쳐 발생한 간호사의 아동학대 사건은 간호사들이 직업 소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의자 5명 중 1명은 불송치되었고, 병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대구시내 신생아 중환자실의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양부남위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죄로 두 번째 수사중인데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직권남용 외에 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할 것 (양부남위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취재 거부를 지시했는데, 해당 지시 공문을 받고 이행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 (용혜인위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뉴미디어팀장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할 것 (윤건영위원, 이상식위원)

○ 대구경찰청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범죄의 발생 대비 검거 건수가 5년간 전국 평균을 넘어서 본 적이 없는 등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권칠승위원)

○ 대구경찰청의 검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범죄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수행거부, 권리행사방해·체포·감금, 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제작·배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강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마약범죄, 안보범죄, 유사강간, 방화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 (이광희위원)

○ 대구경찰청은 부패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 (용혜인위원)

○ 수사관 기피신청의 인용률의 감소 및 경찰관의 수사경과 이탈에 대해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이광희위원)

○ 경찰이 사건 처리 소요기간을 발표 시 검찰에 송치한 이후 기간 및 경찰 재수사 기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 (양부남위원)

○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이후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영장 신청을 기각하거나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된 경우에 대한 통계를 집계할 것 (양부남위원)

○ 경찰 수사권이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구경찰청 인력이 감축되지 않도록 건의할 것 (이달희위원, 주호영위원)

○ 중심지역관서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 자치경찰대를 통해 지구대·파출소에 자율방범대 및 시민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 (위성곤위원)

○ 자치경찰위원회는 공공의료원,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과 함께 주취자 보호센터를 만드는 등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링크 역할을 수행할 것 (서범수위원)

○ 대구경찰청에 인공지능 TF를 구성해서 직원 교육 및 수사와 관련된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 2024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1,089명 중 작업 전환 또는 야간 근로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할 것 (주호영위원)

○ 경찰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를 위해 마음건강센터를 이용할 때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달희위원)

○ 대구경찰청 차원에서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강화할 것 (이달희위원)

○ 대구경찰청에 30년 이상 된 경찰관서가 17개 있으므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휘관들이 앞장설 것 (주호영위원)

○ 대구경찰청의 개인정보·수사정보 유출이 다수 발생하고, 해당 범죄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범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순환보직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권칠승위원)

○ 경찰에 대한 명태균 씨의 명예훼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이광희위원)

○ 수갑은 강한 물리력의 행사이므로 최소한의 정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준수할 것 (이상식위원)

○ 경찰관의 정직성, 청렴성을 제고하고, 금품·향응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등의 비위 발생을 감소시킬 것 (이상식위원, 이성권위원)

○ 시민감찰위원회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이성권위원)

○ 성비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민접점부서에서 반드시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서범수위원, 이성권위원)

○ 기동순찰대는 조직폭력배들의 폭력행위가 벌어질 때 또는 위력 과시 등에 효과가 있지만, 단순히 수배자 검거, 기초질서 위반 단속 등에 투입하는 것은 운영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대구의 특화된 기동순찰대 운영 방안을 설계할 것 (서범수위원)

다. 인천경찰청

○ 전세사기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동결시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줄 것 (박덕흠위원)

○ 인천경찰청의 사이버 사기 검거율을 제고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 (한병도위원)

○ 마약 전담 컨트롤타워인 마약수사청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것 (고동진위원)

○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매뉴얼을 보완하고, 가정폭력의 특징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철저히 대응하며, 이 사건의 담당 직원은 불문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찰을 징계하고, 경찰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고동진위원, 정춘생위원)

○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비행 청소년 선도 역할까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경찰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모경종위원)

○ 본청과 적극 협력해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증원 및 학대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 (한병도위원)

○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시청, 보호관찰소와 TF를 구성하여 학교 1km 내 성범죄자 밀집지역 상시관리제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이해식위원)

○ 인천경찰청 소속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비행기 탑승구에서 검문을 하면서 캄보디아행 항공기를 타려던 사람을 제지할 뿐만 아니라 귀가조치하기에 앞서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을 검토할 것 (정춘생위원)

○ 캄보디아 구인 광고는 국내 사이트 외에 구글 등 검색엔진 등에서도 검색이 되므로 전방위적으로 철저히 막을 것 (정춘생위원)

○ 인천공항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인천의 중요 국가시설들에 대한 드론 테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 (박덕흠위원, 박정현위원)

○ 인천항 또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에 대해 혐중 시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신정훈위원)

○ 인천 지역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인구 10만명 대비 뺑소니 사건 발생건수가 24.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므로 이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이해식위원)

○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선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의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 (김성회위원, 모경종위원, 박덕흠위원, 박정현위원, 한병도위원)

○ 유정복 인천시장 수사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3명을 고발했는데, 경찰은 10명을 입건하고, 단순한 건임에도 5~6개의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정권이 바뀐 이후에 수사가 폭넓고 과격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찰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 (박수민위원)

○ 유정복 인천시장의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4항 위반 및 직권남용 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 (이해식위원)

○ 인천시는 기존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기독교 행사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한 뒤 극동방송의 행사에 대해 지원한 것으로 이 과정에 대해 수사할 것 (이해식위원)

○ 인천경찰청이 다른 지방경찰청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인천 시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고동진위원)

○ 2024년 4월 25일 구성된 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6명의 위원 중 4명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같은 구성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있어 보이고, 자치경찰위원회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할 것 (신정훈위원, 이해식위원)

○ 변사사건에 출동한 검시조사관이 변사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과학수사요원 2명이 동시에 현장에 임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세울 것 (김성회위원)

○ 시민감찰위원회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단 한차례 개최되어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시민감찰위원회를 활성화시킬 것 (한병도위원)

○ 인천 검단신도시의 대부분을 관할하는 당하지구대의 관할 인구가 13만 5,800명에 달하고, 2026년 말에는 15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검단신도시 아라동을 관할하는 아라지구대를 추가로 신설하고, 2026년 7월 1일 출범하는 인천 검단구에 검단경찰서를 설립할 수 있도록 경찰서 직제 신설과 관련된 준비를 하며, 인천 전반적으로 경찰서와 지구대 수요를 파악하여 경찰서 또는 지구대를 신설하고, 인천의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천 경찰의 인력 수급이 잘 되도록 할 것 (모경종위원)

○ 인천 송도에는 국제기구, 국제학교, 기업의 본사, 바이오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화된 전담 경찰서인 송도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 (고동진위원)

○ 경찰협의회에서 4조 3교대를 시행하는 것에 우려하는 의견을 전달해 왔으므로 해당 내용을 본청에 충실히 전달할 것 (박수민위원)

라. 대전경찰청

○ 2023년 유성구 전민동, 문지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전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죄수익이 범죄자의 가족으로 옮겨간 경우에도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 (이해식위원)

○ 노쇼 범죄는 대전의 경우 178건 중 3건이 검거되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김성회위원)

○ 암표에 대한 상시 및 불시단속도 실시할 것 (모경종위원)

○ 마약류에 대해 신경을 써 줄 것 (박덕흠위원)

○ 스토킹사건 중 보호조치 대상 100건 중 46건은 피해자가 불안을 호소하고 경찰에서 강화된 보호조치 처분을 했는데, 이를 고려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찰이 철처히 관리할 것 (박덕흠위원)

○ 형사소송법에 재범가능성, 위해가능성을 구속사유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에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논의할 것 (정춘생위원)

○ 교제범죄에 대한 초동대응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문제가 있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준비할 것 (정춘생위원)

○ 스토킹범죄, 교제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의 능력을 고도화할 것 (모경종위원)

○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할 것 (채현일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 및 책임자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 (채현일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배터리의 잔량 확인 및 방전 작업을 하지 않은 점, BPU 전원 차단을 확인하지 않은 점, 절연 공구의 의무적 사용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 (고동진위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일성계전, 남경종합건설과 공동이설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장에는 내일파워라는 하청업체가 있었는데, 불법 하도급과 관련하여 명확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 (고동진위원)

○ 대전의 경우 기술집약지로서 산업기술 유출,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직접 한 사람이 공판에 참석해야 공소유지가 잘 된다는 분석이 있으므로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박수민위원)

○ 2025년 10월 2일 소방공무원 채용 공식 사이트 ‘119고시’의 수험생 50,0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사건의 전모를 신속하게 밝힐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이해식위원)

○ 2024년 4분기 대전경찰청 관내 범죄 검거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수사역량 강화 및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고동진위원)

○ 대전은 통합수사부서 일인당 접수건수가 214건으로 전국 평균 190건, 서울의 경우 174건 등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모경종위원)

○ 수사부서 기피 현상 및 인원 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당근책인 특별승진 제도를 혁신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것 (모경종위원)

○ 대전경찰청에 사망사고가 많은 도로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박정현위원)

○ 차량 신호위반으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상서동 맥도날드 앞 도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CCTV와 조명 등을 설치할 것 (박정현위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초등학교 앞 신탄진로에 설치된 30km/h 과속단속 카메라로 교통흐름이 방해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이후에는 50km/h 로 변경이 가능한 카메라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박정현위원)

○ 폭주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박정현위원)

○ 연간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약 2,000건 중 16세 미만이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면허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 단속할 것 (김성회위원)

○ 2025년 5월말 국가융합망 입찰사업 제안요청서가 사전 유출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실시할 것 (채현일위원)

○ 대전광역시 서구의 입찰비리와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부패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채현일위원)

○ 대전경찰청은 이진숙 전 대전MBC 대표, 전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빵 값 등 업무추진비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신정훈위원)

○ 국민의힘 대전시당 전 대변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하게 수사할 것 (이해식위원)

○ 대덕경찰서 회덕파출소의 지구대 승격과 대덕경찰서 신탄진지구대의 재건축을 검토할 필요 (박정현위원)

○ 대전경찰청 112상황실 근무자 수를 줄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 (박덕흠위원)

○ 여경들의 성장, 순경 출신들이 승진하는데 차별이 없는지 살펴볼 것 (박덕흠위원)

○ 대전경찰청의 차량 고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박덕흠위원)

○ 행정안전부가 측정한 범죄안전지수 순위에서 대전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의 범죄 숫자가 줄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박수민위원)

○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감시하는 업무는 구청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찰과 구청이 공조할 것 (박수민위원)

○ 공공디자인으로 범죄를 줄이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는 구청에서 잘 할 수 있으므로 구청과 협력할 것 (박수민위원)

○ 2024년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공상 요양 신청 대비 승인 비율이 낮은 수준이므로 관련 업무의 담당자가 공상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고동진위원)

○ 대전경찰청은 특수건강검진 수검자 1,810명 중 유소견자가 37%이고,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한병도위원)

마. 세종경찰청

○ 세종경찰청의 대부업법 위반 검거율이 37% 수준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므로 대부업 사건에 집중할 것 (이광희위원)

○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젠더 관점에 기반한 인권감수성을 제고한 전문성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 (이성권위원)

○ 호우경보가 발령된 날의 주취자 보호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위성곤위원)

○ 주취자의 행적이 정상적이지 않지만 주취자가 경찰의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할 것 (권칠승위원)

○ 현장에서 보호 주취자와 단순 주취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것 (용혜인위원)

○ 경찰 사건 처리 소요기간을 발표할 때 검찰에 송치한 이후 기간 및 경찰 재수사 기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 (양부남위원)

○ 세종경찰청은 불송치 후 이의신청 건의 비율이 15% 수준으로 전국 평균 10%보다 높은 수준인데 해당 수치를 항상 관리할 것 (이상식위원)

○ 국정자원 화재 때 복구에 힘을 쓰다 생을 마감하신 행안부 서기관 사건에서 고인이 된 서기관의 명예를 잘지켜 주시고 유가족분들에게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람 (서범수위원, 이달희위원)

○ 기동대 인원을 제외하는 경우 세종경찰청의 경찰관 일인당 담당 인구가 623명으로 서울 394명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므로 인원 증원을 요청할 것 (이상식위원, 주호영위원)

○ 경범죄와 관련된 자치경찰에 처벌 권한 등의 위임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노력할 것 (이달희위원)

○ 세종경찰청의 중요한 관심사는 정부종합청사를 방호하는 것이고 기동대 병력을 통한 외곽 방호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청원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 (이상식위원)

○ 세종시의 집회 신고 건수가 서울보다 많고, 최근 도심 집회 과정에서 도로 점유로 출근길 혼잡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주요 도로로 지정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것 (주호영위원)

○ 2024년 1월에 금빛노을교에서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같은 사고는 주로 교량 위에서 발생하므로 교량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 (이광희위원)

○ 세종경찰청은 지난 5년간 경찰 기피신청 수용률이 72.5%였으나 2024년에 40%로 하락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이광희위원)

○ 39만명의 인구에 경찰관 905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치안 현장으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것 (서범수위원)

○ 세종경찰청은 수사부서가 단일 편제로 되어 있고, 강력·마약수사대 없이 11명이 강력범죄와 동시에 다루는 것 등은 인력 및 조직 편제의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필요한 사항을 국회 또는 본청에 요청해서 민생과 치안에 만전을 기할 것 (이성권위원)

○ 세종경찰청의 인원은 경찰청에 54%, 경찰서와 지역관서에 47.6%가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조금 기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치안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지역과 밀착된 예방활동이 중요하므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배치를 검토할 것 (위성곤위원)

○ 세종경찰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 고민할 것 (양부남위원)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생활치안이 확보되도록 할 것 (위성곤위원)

○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계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찰과 공동으로 역할을 할 것 (서범수위원)

○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세종시 주취자보호센터를 만들고, 세종시·소방·의료기관이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용혜인위원, 위성곤위원)

○ 세종경찰청에는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마음동행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상식위원)

바. 경기남부경찰청

○ KT 소액결제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불법 통신장비를 확보하고도 지문감식이 보름 지난 뒤에 이루어져 범행과 관련된 중요 인물의 흔적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중하고 명확한 판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 (고동진위원, 박정현위원)

○ 불법대부업은 조직적 범죄이며, 최근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캄보디아로 유인해 납치·감금·폭행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불법대부업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이광희위원)

○ 동탄 살인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견책, 주의, 경고의 징계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분명하게 조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 (박정현위원, 정춘생위원)

○ 경기남부경찰청의 2021년 대비 2024년 스토킹범죄 발생건수는 105%, 교제폭력은 23% 증가했는데 4년간 평균 현행범 체포 비율은 10.6% 수준이고 구속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질 것 (이성권위원)

○ 스토킹범죄와 교제폭력에 대해 위험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가해자에 대한 직접 통제, 선구속의 원칙을 확립하며, 무관용 책임제를 도입할 것 (이성권위원)

○ 동탄 교제 살인사건은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해서 발생한 비극임에도 책임을 저버린 경찰관은 경고 및 1개월의 징계만 받고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부실 수사를 한 경찰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할 것 (용혜인위원)

○ 동탄 교제 살인사건 38일전 경찰과 피해자의 대화를 보면 일단 스마트워치를 빨리 반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하고 있는데, 이 보다는 스마트워치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스마트워치가 빨리빨리 지급되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모경종위원)

○ 관계성 범죄 담당 경찰을 증원할 것 (박정현위원)

○ 교제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조치 위반 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의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보호 권리 및 기관에 대한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배포하며, 점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박과 스토킹 발생 시에는 경호원을 즉각적으로 배치하고, 피의자가 항상 현장에서 분리돼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협박 및 폭행 발생 시에는 구속 수사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시설에 대해서 현실적인 시스템과 제도개선을 할 것 (용혜인위원)

○ 관계성 범죄 체크리스트가 열 가지로 간소화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경찰관의 역량 확보, 전문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본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윤건영위원)

○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송치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반복되고, 위험성이 높은 가정폭력 사건 등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용혜인위원)

○ 동탄 등 신도시는 치안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일선 경찰서의 신변 보호를 담당자는 한 경찰서에 1~2명이 겸직하고 있는데, 치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 (모경종위원)

○ 주택단지와 노상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및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 (이성권위원)

○ 신상공개위원회가 아동유괴 피의자 정보를 적극 공개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하달할 필요 (고동진위원)

○ 피싱사이트, 범죄와 관련된 국가가 캄보디아 외 태국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의 실종 상황에 대해 엄격히 조사할 것 (모경종위원)

○ 경기남부경찰청은 외사과 및 외사경찰 155명이 있었으나, 2024년 조직개편 이후 폐지된 이후 국제공조 및 해외수사 역량, 공조업무가 약화되었으므로 외사조직을 설치할 것 (이해식위원)

○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면허를 받급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을 대여해 주는 것을 단속할 것 (김성회위원)

○ 2024년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안인 화성동탄서에서 무고한 청년이 성추행범으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 경찰관에 대해 불문경고, 경고, 주의처분이 나왔고, 피해자인 청년은 관련 경찰관을 고발했는데 수사 결과 각하처분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과 고발 각하 처분을 다시 고려할 것 (모경종위원, 양부남위원)

○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ITS 사업자와 공직자 간의 뇌물 수수 및 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용혜인위원)

○ 김포시청이 지난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 (이해식위원)

○ 전 정부 시기 경기남부경찰청은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 성남 FC에 대한 수사 등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성찰할 것 (이상식위원)

○ 구치소장의 내란특검 구인영장 집행 거부, 구치소내 특별접견 등 특혜 제공 등 윤석열 구치소 특혜 의혹 사건 7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 (위성곤위원, 이해식위원)

○ 양평군 공무원 자살 사건을 양평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이 사건을 철저히 수해서 진실을 규명할 것 (고동진위원, 이성권위원)

○ 양평 공무원의 메모에는 강압수사 등의 흔적을 단서로 하여 특검을 수사할 것 (서범수위원)

○ 양평군 공무원의 메모 작성 시점 등을 밝히기 위해 메모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할 것 (이해식위원)

○ 양평 공무원을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강압수사를 위해 해당 경찰관을 특검에서 경찰로 복귀하는 인사조치를 해서 조사를 할 것 (이달희위원)

○ 전 정부 출범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의 수갑 사용건수가 92.3% 증가했고, 경찰관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한 사건이 있으므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것 (이상식위원)

○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것 (이상식위원)

○ 경찰청 등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되 다른 방식으로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공지능이 업무의 효율화 및 정확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을 것 (권칠승위원)

○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경찰서가 수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위성곤위원)

○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CCTV, 진술, 현장사진 등의 자료를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에 공유하고, 수사-법의학 간 연계지침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 경기남부경찰청은 민생사건·금융사건이 집중되므로 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박수민위원)

○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KT 소액결제 해킹사건 등에서는 경찰 상층부와 KT 상층부가 연락해서 신속 대응을 하도록 할 것 (박수민위원)

○ 정치적 댓글에 좋아요를 다는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안양 동안경찰서 경찰관에 대한 정직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살펴볼 것 (박수민위원)

○ 경찰 내부에서 사건 기록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사건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해식위원)

○ 경감급 이상 경찰관의 비위 예방책 수립 필요 (이성권위원)

○ 신고자의 신원이 언론에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박덕흠위원)

○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인형뽑기 기계로 인해 청소년의 도박범죄 등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위성곤위원)

○ 화성, 평택, 양주시인데, 신도시 특성에 맞는 인력 재배치 기준을 만들어서 도시 특성에 맞는 경찰인력이 배치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림 (박덕흠위원)

○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된 경찰의 인권침해 유형인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부당수사에 대해 통계관리를 할 것 (이달희위원)

○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의 수가 18개 시도청 중 두 번째로 많으므로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윤건영위원)

○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수건강검진의 유소견 및 요관찰자 비율이 87.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한병도위원)

○ 경기남부경찰청의 질병휴직자는 2020년 59명에서 2024년 11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한병도위원)

○ 건강 위험신호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강화할 것 (한병도위원)

○ 4조 3교대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현장의 걱정이 있으므로 시범 실시 결과를 본청에 소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박수민위원, 정춘생위원)

○ 현장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동순찰대, 중심지역관서 폐지 및 인력의 복원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 (위성곤위원)

○ 인공지능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환각현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자체적으로 인공지능(AI) 담당관을 지정해서 교육계획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 경찰은 구조적으로 신분 보장이 약해서 정치적 외압에 약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 간부가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 (박수민위원)

○ 범죄예방 환경개선산업(셉테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 (박수민위원)

○ 경기도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기동순찰대 운영, 외국인 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서범수위원)

사. 경기북부경찰청

○ 전 정부 출범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의 수갑 사용건수가 92.3% 증가했고, 경찰관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한 사건이 있으므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것 (이상식위원)

○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것 (이상식위원)

○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불송치 권한을 이용하여 피의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배당 시 상급자의 검토 및 결재를 받도록 하고, 피의자 신문시 경찰관 2인이 참석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며, 사건 기록 폐기·조작을 적발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며, 경찰 수사의 전 과정을 점검해 통제·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이해식위원)

○ 최근 9년 동안 경감급 이상 경찰관의 비위 징계는 경기북부경찰청이 81명으로 높은 편이므로, 경감급 이상 경찰관의 비위의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 (이성권위원)

○ 조직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림 (박덕흠위원)

○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 4명의 이력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할 것 (위성곤위원, 윤건영위원)

○ 신상공개위원회가 아동유괴 피의자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권고안을 하달할 것 (고동진위원)

○ 경기북부경찰청은 특수건강검진의 유소견 및 요관찰자 비율이 76.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한병도위원)

○ 경기북부경찰청의 질병휴직자는 2020년 20명에서 2024년 43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한병도위원)

○ 건강 위험신호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강화할 것 (한병도위원)

○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면허를 받급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을 대여해 주는 것을 단속할 것 (김성회위원)

○ 피싱사이트, 범죄와 관련된 국가가 캄보디아 외 태국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의 실종 상황에 대해 엄격히 조사할 것 (모경종위원)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15명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압송되었는데, 캄보디아 측과의 공조 및 신속한 조사를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 (위성곤위원)

○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된 캄보디아 내 실종·납치·감금 신고 건수가 21건이고, 계속 진행 중인 8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할 것 (이해식위원)

○ 국제공조 및 해외수사 역량, 공조업무 역량의 약화를 위해 외사조직을 설치할 것 (이해식위원)

○ 최근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캄보디아로 유인해 납치·감금·폭행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불법대부업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이광희위원)

○ 4조 3교대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현장의 걱정이 있으므로 시범 실시 결과를 본청에 소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박수민위원)

○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인형뽑기 기계로 인해 청소년의 도박범죄 등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위성곤위원)

○ 현장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동순찰대, 중심지역관서 폐지 및 인력의 복원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 (위성곤위원)

○ 현장의 의견을 들어 현실적으로 근무에 도움이 되는 방검복을 개발·보급하고, 유사시 목 보호대, 장갑 등 일부 장비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 (정춘생위원)

○ 인공지능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환각현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자체적으로 인공지능(AI) 담당관을 지정해서 교육계획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 강압수사 문제,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해 연구할 것 (이달희위원)

○ 경찰은 구조적으로 신분 보장이 약해서 정치적 외압에 약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 간부가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 (박수민위원)

○ 경기북부경찰청의 2021년 대비 2024년 스토킹범죄 발생건수는 188%, 교제폭력은 93% 증가했는데 4년간 평균 현행범 체포 비율은 10.6% 수준이고 구속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질 것 (이성권위원)

○

○ 교제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조치 위반 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의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보호 권리 및 기관에 대한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배포하며, 점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박과 스토킹 발생 시에는 경호원을 즉각적으로 배치하고, 피의자가 항상 현장에서 분리돼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협박 및 폭행 발생 시에는 구속수사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시설에 대해서 현실적인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할 것 (용혜인위원)

○ 스토킹범죄와 교제폭력에 대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직접 통제, 선구속의 원칙을 확립하며, 무관용 책임제를 도입할 것 (이성권위원)

○ 주택단지와 노상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 (이성권위원)

○ 양평 공무원이 남긴 메모가 사실인 경우 인권침해와 강압수사라고 생각되므로 경찰 조직 전반의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할 것 (고동진위원)

아. 강원경찰청

○ 캄보디아 범죄단체와 관련된 실종건 및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이광희위원, 이성권위원)

○ 강원경찰청에서 노쇼 사기가 많은데, 노쇼 사기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므로 노쇼 등을 포함한 민생범죄를 제대로 적발하고 체포할 것 (윤건영위원)

○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통계 관리·분석,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것 (이달희위원)

○ 강원경찰청의 강간 범죄 검거율은 89.3%로 전국평균 97.2%보다 낮고, 기타 강간과 강제추행 등 범죄의 검거율은 80%로 전국평균 93.3%보다 낮으므로 이에 대해 신경을 쓸 것 (이광희위원)

○ 관계성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범죄의 잔혹성 및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 (권칠승위원)

○ 경찰관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사 정보 확인을 요구받고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의 참고인으로 KICS에 등재해서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양부남위원)

○ 강원경찰청은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첩보를 확보하고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수사 내용이 통일교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조사할 것 (이광희위원)

○ 강원학원의 사학비리 문제가 심각하므로 사학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엄중한 자세로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고, 수 십년간 이어진 사학비리이므로 경찰의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할 것 (용혜인위원)

○ 신경호 교육감과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불법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 (용혜인위원)

○ 강원도 경찰 인원 97명 감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의 면적이 넓고, 여름철 관광객이 몰려오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서범수위원, 이달희위원)

○ 양양 경찰서는 2023년 완공 계획이었으나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경찰서가 건립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양부남위원)

○ 강원경찰청 산하에 음주비리가 5건이 발생했으므로 기강을 바로 잡고, 음주상태에서 순찰차에 탑승하다가 순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을 미는 경찰관에 대해 입건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동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사실을 색출하기 위해 경위를 확인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양부남위원, 위성곤위원, 이광희위원, 이성권위원)

○ 강원경찰청은 음주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초과근무 결재를 대면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는 근무기강을 명분으로 직원들을 애먹이는 방식으로 보이므로,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사고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할 것 (서범수위원)

○ 김건희 특검에서 작성한 통일교 공소장에는 춘천경찰서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해외 원정도박 내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내사 진행 사실을 유출해서 통일교가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기재가 있는데, 해당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대해 감찰할 것 (양부남위원)

○ 강원도에는 군부대가 많고, 군 사망사건 등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강원도에서 군 관련 사건이 있으면 특별히 제대로 처리할 것 (이상식위원)

○ 수갑은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직원 교육 등을 통해 폭압성을 추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상식위원)

○ 생활밀착현 현장 치안을 위해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개선하고, 기동순찰대를 폐지하여 해당 인력을 현장에 복귀시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 (위성곤위원)

○ 중심지역관서제도의 시행 이후 강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농촌의 치안이 방치되는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치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치안센터가 폐지된 지역의 대체순찰 체계 및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 (이광희위원)

○ 강원도는 넓기도 넓고 영동, 영서 등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부터 실시하는 광역정보팀이 강원도에 적합한 시스템인지 검토할 것 (서범수위원)

○ 중심지역관서제는 서울, 부산 등 인구밀집지역의 좁은 공간에서는 가능하지만, 면적이 넓은 강원도에서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것 (서범수위원)

○ 인공지능의 환각현상(할루시네이션)으로 인해 오염된 정보를 얻는 것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수사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예방하면서 인공지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책임담당관을 지정하여 교육 및 운영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자. 충청남도경찰청

○ 2024년 아산에서 발생한 주식 리딩방 사기사건을 범한 자가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한 범죄조직이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끝까지 수사해서 뿌리를 뽑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림 (박덕흠위원)

○ 피싱수사에서 경험과 전문성 발휘될 수 있도록 수사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할 것 (박덕흠위원)

○ 2030 MZ 조직폭력배들은 불법도박, 가상화폐 사기,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텔레그램에서 사기행위를 모의하고 2~3개월 동안 활동한 뒤 해체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조직폭력배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개선할 것 (박덕흠위원)

○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단속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림 (박덕흠위원)

○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충원하고, 도내 학교폭력 근절 및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고동진위원)

○ 충청남도 북부지역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이 교육청, 시청 및 구청과 긴밀히 협조할 것 (박수민위원)

○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람 64명 중 45명이 충남청으로 이송되어 있고, 윗선 총책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충남경찰청의 수사인력이 5명 밖에 없으므로 이를 보충할 것 (이해식위원)

○ 캄보디아 사건과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약사건 관련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것 (고동진위원)

○ 캄보디아 감금·실종 사건이 전국적으로 513건 정도 되는데 이 중 미확인 상태가 160건 정도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것 (박덕흠위원)

○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45명이 대부분 동일한 대학교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지수사를 할 것 (모경종위원)

○ 중대재해는 진실을 밝히고 정확히 진단해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깊이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 (박수민위원)

○ 전동킥보드 사고 2,000건 중 500건의 운전자는 무면허인 16세 미만의 아이들이고, 오토바이 또는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대여하는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여 업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김성회위원)

○ 픽시자전거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신정훈위원)

○ 충청남도에서는 횡단 또는 도보 중 인명사고가 많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고빈발지역을 분석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것 (박수민위원)

○ 논산시 양촌면에 건립한 확산탄공장 관련하여 자회사를 통해 공장을 쪼개서 별도로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는 의혹, 매장문화재법 위반 의혹 및 논산시장 선거캠프의 본부장이 사업수행자 회사의 고문으로 취직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 (김성회위원)

○ 충남지사가 대선기간인 2025년 5월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 사건에 대해 6개월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검찰에서 이 상태로 둔다면, 경찰은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이 수사를 검토할 것 (채현일위원)

○ 경찰이 논산 확산탄 사업자의 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시위 대처를 하고, 플래카드를 철거하는 등 업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자연스로운 의사표현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치안 행정을 관리할 것 (신정훈위원)

○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2021년 20건에서 2024년 123건으로 증가했고, 주된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이므로, 경찰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것 (김성회위원)

○ 충남천안서북경찰서가 고 주리빈양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감찰을 건의할 필요 (박정현위원)

○ 2024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예산경찰서 소속 경사가 생을 마감한 사건에 대해 가해 경찰관 3명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본청에 재감찰을 요청할 것 (정춘생위원)

○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 (이해식위원)

○ 충남경찰청 한 경찰관이 전산망을 사적으로 이용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가수의 집에 찾아갔고, 한 지구대장은 회식자리에서 추행을 했으며, 조사를 받던 피의자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려서 경추 5번·6번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히기도 하는 등 심각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강을 바로세울 것 (모경종위원)

○ 충남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2020년 13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성비위 사건이 7배 증가했고, 기소 처분 47건 중에는 음주운전 19건, 폭행, 상해, 성추행 등 형법 위반이 11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6건, 뇌물수수, 직무유기, 스토킹,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있어 문제가 심각해 보이므로 무너진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 (모경종위원)

○ 시민감찰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고동진위원, 한병도위원)

○ 치안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본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 (모경종위원)

○ 충남경찰청 경찰공무원의 심리상담 건수는 2020년 948건에서 2024년 2066건으로 1.8배 증가했는데, 마음동행센터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마음동행센터의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 (정춘생위원)

차. 전북경찰청

○ 사이버사기,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기반 범죄 검거에 총력을 다할 것 (한병도위원)

○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SPO) 전담제 운영을 검토할 것 (박덕흠위원)

○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생활을 위해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실시할 것 (박덕흠위원)

○ 전북에서 교제폭력 신고가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구속률은 1%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제폭력 범죄의 특성을 연구하여 대응하고, 범죄의 증가속도를 고려하여 여성청소년과 대응 인력을 보충할 것 (정춘생위원)

○ 전북경찰청은 대면조사 실시율 68.3%로 전국 평균인 75.8%보다 낮으므로 범죄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 (고동진위원)

○ 2024년 전북경찰청의 수사에 대해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1,793건, 사건송치 이후 보완 수사 요구가 4,415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390건, 피의자 미특정 등으로 종결되지 않은 관리미제가 119,239건이고, 2025년 8월 경찰의 재수사 이후에도 공소시효 판단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송치 요구가 8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북경찰청의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키울 것 (이해식위원)

○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하므로 보행자들에게 개인형 경광등 지급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김성회위원)

○ 2024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2,000건 중 25%가 16세 이하 청소년들인데,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대여업체에 대해 단속할 것 (김성회위원)

○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하여 인권보호 수사 원칙이 지켜진 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보호 수사 원칙을 어긴 담당자를 징계할 것 (고동진위원, 박수민위원, 이해식위원)

○ 전북경찰청에서 갑질, 폭언, 비위, 강압수사 논란,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의 발생, 2025년 8월 수사 중 재개발조합비 사건, 익산 뇌물공여 사건, 군산 성범죄사건에서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징계건수는 2021년 12건, 2024년 16건 등으로 증가했고, 시민감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정춘생위원, 채현일위원)

○ 전북경찰청 1층 홍보관에 게재된 홍보물의 '여순 반란'을 '여순 사건 현장'으로 바꿨지만 그 위에는 여전히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에 대한 원정진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합당하지 않고, 여순 사건은 국가가 민간인을 부당하게 학살한 국가폭력이므로 해당 내용을 시정하여 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고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모경종위원, 박정현위원, 정춘생위원, 한병도위원)

○ 1,050원 초코파이를 절도혐의로 송치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해당 사건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경찰이 조정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전북경찰청은 반성할 것 (박정현위원)

○ 전북 남원은 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고, 전북경찰청장이 남원에 가서 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는데 현재 남원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 (박수민위원)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내용이 이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치밀하게 준비할 것 (이해식위원)

○ 수사관 기피 현황이 2022년 110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전북경찰의 수사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나타내므로, 수사 기법을 선진화·고도화 하기 위해 경찰 전체 차원에서 연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강압수사 논란은 개별 경찰관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의 수사문화 또는 시스템에 대해 점검할 것 (모경종위원)

○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개인 돈벌이와 공무원의 직무가 겹치면 조직기강의 해이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례가 무분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것 (고동진위원)

○ 전북경찰청의 특수건강검진결과 유소견자가 2022년 449명에서 2024년 744명으로 증가했는데, 경찰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할 것 (한병도위원)

카. 경상남도경찰청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의자의 모친을 보험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병역 면탈로 의심할 수 있는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으나 별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수사를 함으로써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고려하여 경찰의 기본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 (이성권위원)

○ 경남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고, 재수사 요구는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으므로 경남경찰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 (이성권위원)

○ 사건 처리 소요기간을 발표할 때 검찰에 송치한 이후 기간 및 경찰 재수사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통계방식을 개선할 것 (양부남위원)

○ 강력범죄 중 방화죄 검거 비율이 86.6%로 전국 평균 보다 6.2%p 낮고,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검거율은 46.7%로 전국 평균 85.1%보다 38.4%p 낮으므로 방화죄에 대한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광희위원)

○ 경남에서의 대표적인 횡령·배임 범죄로 경남은행 사건,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진해 웅동 사업자의 횡령·배임 의혹 등이 있고, 횡령과 배임 범죄의 검거율이 0.2%p, 2.3%p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광희위원)

○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할 것 (용혜인위원)

○ 하동 순찰차 사망사고에서 숨진 여성이 36시간 정도 순찰차에 갇혀 있었던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권칠승위원)

○ 언론에 보도된 군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해 서울과 진해에 동일한 사건이 고발되었는데 서울경찰청은 7월부터 5명의 경찰관이 투입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반면, 진해에서는 5월에 수사를 착수했지만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 (이상식위원)

○ 경남경찰청은 수갑의 사용이 106% 증가했는데, 수갑의 사용 등 물리력의 행사는 최소한의 기준에서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이상식위원)

○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 (이상식위원)

○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부터 작성되는 사건기록은 전자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록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듀얼시스템으로 구성하여 화재 등으로 데이터가 손실되었을 때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하고, 해킹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대책을 수립할 것 (이달희위원)

○ 오토바이 압수물 관리 부실과 관련하여 압수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압수물 보관 관계는 경찰 수사의 신뢰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수사를 하는 각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 및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완할 것이 없는지 챙겨볼 것 (서범수위원, 이성권위원, 주호영위원)

○ 창원서부서는 압수물 관련 대책으로 바깥에서 근무를 서는 근무지를 만들었는데 취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매달 56명이 당직으로 야외 건물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낭비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징벌적 근무 세우기로 보이므로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는 핀셋 대책을 세울 것 (권칠승위원, 서범수위원)

○ 경남에는 주취자를 보호하는 주취 보호센터가 없는데 인구밀집지역인 창원에 주취 보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주호영위원)

○ 주취자 보호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소방, 병원 등 관계 기관의 협력 사업이므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 (서범수위원)

○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서 혐오집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해당 집회는 국가가 기본권의 이름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혐오와 폭력, 고의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한 폭력적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 (권칠승위원, 위성곤위원, 윤건영위원)

○ 경남경찰청에서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경찰관 19명이 징계를 받았고 절반 이상이 정직, 해임 등 중징계이고,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성폭력, 절도, 특수 협박 등 중한 범죄이므로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주호영위원)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남경찰청의 징계 건수가 124건이지만, 시민감찰위원회는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규정과 같이 시민감찰위원회를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할 것 (양부남위원)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창원서부경찰서 경찰이 명태균 씨에게 자신의 상급자인 창원경찰서장에 대한 인사청탁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사청탁 2주뒤에 창원경찰서장은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에 대한 감찰 또는 내사를 실시할 것 (이광희위원)

○ 경찰이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찰에서 인지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를 신청한 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비율 등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요소로 활용할 것 (양부남위원)

○ 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이광희위원)

○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전면재검토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위성곤위원, 이해식위원)

○ 경찰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성의있게 정보를 제공할 것 (윤건영위원)

○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청 차원의 인공지능 TF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 (위성곤위원)

○ 공직사회를 양성 평등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여성 인사의 발탁 인사가 있기를 기대함 (이달희위원)

○ 경주 APEC 행사에 지원 나가는 경찰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람 (서범수위원)

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파. 새마을운동중앙회

하. 한국자유총연맹

○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자유센터 부지개발 관련 각종 의혹 해소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 (권칠승위원, 신정훈위원, 윤건영위원, 이광희위원, 채현일위원)

Ⅶ. 증인 및 참고인 현황

1. 기관증인

가. 기관증인 총괄

연번	대상기관	기관장		증인 수(명)	비고
1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2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16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5	
4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4	
5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13	
6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29	
7	소방청	청장직무대행	김승룡	10	
8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45	
9	대구광역시	시장권한대행	김정기	35	
10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39	
11	대전광역시	시장	이장우	37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최민호	25	
13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	51	
14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김진태	33	
15	충청남도	도지사	김태흠	29	
16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관영	27	
17	경상남도	도지사	박완수	27	
1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황종성	1	
1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고성균	1	
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재오	1	
21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심규선	2	
22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김동극	5	
23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김희중	5	

연번	대 상 기 관	기 관 장		증인 수(명)	비고
2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 장	김 창 진	4	
25	서 울 경 찰 청	청 장	박 정 보	12	
26	대 구 경 찰 청	청 장	김 병 우	19	
27	인 천 경 찰 청	청 장	한 창 훈	22	
28	대 전 경 찰 청	청 장	최 주 원	18	
29	세 종 경 찰 청	청 장	한 원 호	6	
30	경 기 남 부 경 찰 청	청 장	황 창 선	26	
31	경 기 북 부 경 찰 청	청 장	김 동 권	18	
32	강 원 경 찰 청	청 장	최 현 석	17	
33	충 청 남 도 경 찰 청	청 장 직무대리	곽 창 용	19	
34	전 북 경 찰 청	청 장	김 철 문	18	
35	경 상 남 도 경 찰 청	청 장	김 종 철	19	
36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회 장	김 상 훈	2	
37	새 마 을 운 동 중 앙 회	회 장	김 광 림	2	
38	한 국 자 유 총 연 맹	총 재	강 석 호	5	
3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 장	육 동 일	1	
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 사 장	김 장 회	1	
4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 사 장	정 선 용	1	
4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 장	박 덕 수	1	
43	지 방 공 기 업 평 가 원	이 사 장	목 영 만	1	
44	한 국 섬 진 흥 원	원 장	조 성 환	1	
45	한 국 지 방 세 연 구 원	원 장	강 성 조	1	
46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원 장	차 호 준	1	
47	경 찰 공 제 회	이 사 장	이 영 상	1	
48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	김 규 현	1	
49	한 국 소 방 안 전 원	원 장	이 상 규	1	
50	대 한 소 방 공 제 회	이 사 장	이 일	1	
51	소 방 산 업 공 제 조 합	이 사 장	옥 동 석	1	
52	한 국 소 방 시 설 협 회	회 장	박 현 석	1	
합 계				684	

나.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불출석 일자	불출석 사유	비고
1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9.25.	경찰청	10.30.	국외출장	
2	김연상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장	9.25.	소방청	10.15.	건강상 사유	
3	안태정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9.25.	대전경찰청	10.24.	건강상 사유	
4	조소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설공단 이사장	9.25.	세종특별자치시	10.20.	국외출장	
5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	9.25.	경기북부경찰청	10.21.	공무상 일정	
6	곽효승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장	9.25.	전북특별자치도	10.28.	공무상 일정	
7	조성근	전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9.25.	전북경찰청	10.28.	공무상 일정	
8	설은미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9.25.	전북경찰청	10.28.	공무상 일정	
9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9.25.	경상남도	10.28.	국내출장	

2. 일반증인 · 참고인

가. 일반증인 · 참고인 총괄

대상기관 (출석요구일)	출석요구 의결			불출석			철회		
	증인	참고인	계	증인	참고인	계	증인	참고인	계
행정안전부 (10.14.)	25인	8인	33인	2인	-	2인	7인	3인	10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15.)	2인	-	2인	-	-	-	2인	-	2인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10.14.)	1인	-	1인	-	-	-	-	-	-
경찰청 (10.17.)	16인	3인	19인	1인	1인	2인	9인	-	9인
소방청 (10.15.)	3인	-	3인	1인	-	1인	1인	-	1인
서울특별시 (10.23.)	7인	4인	11인	3인	-	3인	-	-	-
대구광역시 (10.27.)	3인	-	3인	-	-	-	1인	-	1인
대전광역시 (10.24.)	3인	1인	4인	-	-	-	1인	-	1인
경기도 (10.14.)	-	2인	2인	-	1인	1인	-	1인	1인
강원특별자치도 (10.24.)	3인	1인	4인	-	-	-	1인	-	1인
충청남도 (10.27.)	1인	-	1인	-	-	-	-	-	-
전북특별자치도 (10.28.)	1인	-	1인	-	-	-	-	-	-
경상남도 (10.28.)	2인	-	2인	-	-	-	-	-	-
서울경찰청 (10.23.)	4인	-	4인	-	-	-	-	-	-
대구경찰청 (10.27.)	2인	-	2인	-	-	-	-	-	-
인천경찰청 (10.20.)	2인	-	2인	-	-	-	-	-	-

대상기관 (출석요구일)	출석요구 의결			불출석			철회		
	증인	참고인	계	증인	참고인	계	증인	참고인	계
대전경찰청 (10.24.)	2인	-	2인	-	-	-	-	-	-
세종경찰청 (10.20.)	2인	-	2인	-	-	-	-	-	-
경기남부경찰청 (10.21.)	2인	2인	4인	-	-	-	-	-	-
경기북부경찰청 (10.21.)	2인	-	2인	-	-	-	-	-	-
강원경찰청 (10.24.)	2인	-	2인	-	-	-	-	-	-
충청남도경찰청 (10.27.)	2인	-	2인	-	-	-	-	-	-
전북경찰청 (10.21.)	2인	-	2인	-	-	-	-	-	-
경상남도경찰청 (10.28.)	2인	-	2인	-	-	-	-	-	-
종합감사 (10.30.)	23인	1인	24인	4인	-	4인	5인	-	5인
총 계	**114인**	**22인**	**136인**	**11인**	**2인**	**13인**	**27인**	**4인**	**31인**

※ 대리출석 증인 : 행정안전부(10.14.) 4인

나. 일반증인 · 참고인 출석 현황

【출석 증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일자	신문요지	비고
1	이용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9.25.	서울경찰청	10.23.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2	김원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9.25.	서울경찰청	10.23.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3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9.25.	대구경찰청	10.27.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4	정길영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대구경찰청	10.27.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5	한진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9.25.	인천경찰청	10.20.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6	박준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인천경찰청	10.20.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7	박희용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9.25.	대전경찰청	10.24.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8	태경환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대전경찰청	10.24.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9	남택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장	9.25.	세종경찰청	10.20.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0	김정환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세종경찰청	10.20.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1	강경량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장	9.25.	경기남부경찰청	10.21.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2	이상로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장	9.25.	경기남부경찰청	10.21.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3	김정연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경기북부경찰청	10.21.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4	이경자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경기북부경찰청	10.21.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일자	신문요지	비고
15	조명수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9.25.	강원경찰청	10.24.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6	최지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강원경찰청	10.24.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7	이종원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장	9.25.	충청남도경찰청	10.27.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8	김영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충청남도경찰청	10.27.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9	이연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9.25.	전북경찰청	10.28.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20	신일섭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전북경찰청	10.28.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21	임영수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장	9.25.	경상남도경찰청	10.28.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22	이정동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5.	경상남도경찰청	10.28.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23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10. 1.	행정안전부	10.14.	농어촌 기본소득 주무부처 선정 과정 관련 질의	
24	이헌중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연구위원	10. 1.	행정안전부	10.14.	계약관리 부정	
25	김회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	10. 1.	행정안전부	10.14.	2024년 4월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마련에 대한 경위 확인	
26	이정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정보화기반과 경감	10. 1.	행정안전부	10.14.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에 따라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요청을 포기한 사유와 과정을 검증	
27	권준영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장	10. 1.	행정안전부	10.14.	용산 관저 집무실 이전 관련	
28	김태영	21그램 대표	10. 1.	행정안전부	10.14.	용산 관저 집무실 이전 관련	
29	윤영준	현대건설 前 대표이사	10. 1.	행정안전부	10.14.	용산 관저 집무실 이전 관련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일자	신문요지	비고
30	박세진	현대건설 상무	10. 1.	행정안전부	10.14.	용산 관저 집무실 이전 관련	
			10.21.	종합감사	10.30.	관저, 골프연습시설, 안가 등 불법공사 및 영빈관 공사 등	
31	이재용	현대차그룹 사업관리팀장	10. 1.	행정안전부	10.14.	용산 관저 집무실 이전 관련	
32	신○○	대통령경호처 경호과장	10. 1.	행정안전부	10.14.	관저 공사 하도급법 위반 및 국회 위증 관련	
			10.21.	종합감사	10.30.	관저 공사 하도급법 위반 및 국회 위증 관련	
33	조유묵	진실화해위 315의거과장	10. 1.	진실화해위	10.14.	3.15의거 조사보고서 관련	
34	배문찬	㈜이피코리아 대표이사	10. 1.	행정안전부	10.14.	국정자원 UPS 공급 업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및 대책	
35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10. 1.	행정안전부	10.14.	허위 우수사례 홍보, 건축물 관련 점검 미비 및 보수 계획 등	
36	정종표	DB 손해보험 대표이사	10. 1.	소방청	10.15.	소방헬기 보험금 지연이자 관련	
37	배기환	울산북부경찰서장	10. 1.	경찰청	10.17.	이수기업 노동자 파업 관련	
38	안경원	울산북부경찰서 前 경비교통과장	10. 1.	경찰청	10.17.	이수기업 노동자 파업 관련	
39	박승학	울산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10. 1.	경찰청	10.17.	이수기업 노동자 파업 관련	
40	윤태영	영주경찰서장	10. 1.	경찰청	10.17.	통일교 내사 관련	
4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前 경호차장	10. 1.	경찰청	10.17.	윤석열 前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42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前 경호본부장	10. 1.	경찰청	10.17.	윤석열 前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43	조성명	강남구청장	10. 1.	서울특별시	10.23.	기부채납 관리 관련 행정·도의적 책임 확인	
44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10. 1.	종합감사	10.30.	화재 원인 및 대응 과정, 향후 재발 방지 대책	
45	손정일	가덕중공업 대표	10.14.	서울특별시	10.23.	한강 리버버스 추진 관련 질의	
46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	10.14.	서울특별시	10.23.	한강 리버버스 추진 관련 질의	
47	명태균	-	10.14.	서울특별시	10.23.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10.21.	경상남도	10.28.	공천 개입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일자	신문요지	비고
48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10.14.	서울경찰청	10.23.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수사 관련	
49	신용주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10.14.	서울경찰청	10.23.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수사 관련	
50	탁동수	양양군 부군수	10.14.	강원특별자치도	10.24.	강원도 오색케이블카 관련 질의	
51	김홍규	강릉시장	10.14.	강원특별자치도	10.24.	가뭄 사태 관련	
52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대표이사	10.14.	대전광역시	10.24.	노은동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운영 및 하역분쟁 관련	
53	전홍기	노은물류주식회사 대표이사	10.14.	대전광역시	10.24.	노은동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운영 및 하역분쟁 관련	
54	박구선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이사장	10.14.	대구광역시	10.2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채용 관련 질의	
55	정명훈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前임상센터장	10.14.	대구광역시	10.2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채용 관련 질의	
56	이승화	산청군수	10.14.	경상남도	10.28.	산청군 공무원 기강 관련 질의	
57	권순철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10.14.	종합감사	10.30.	한국자유총연맹 현안 관련	
58	성석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장	10.14.	종합감사	10.30.	이태원참사 당시 소방청 상황 담당관으로 소방대응 적절성 관련	
59	전희경	충남연구원 원장	10.17.	충청남도	10.27.	충남연구원 운영 확인	
60	오동은	익산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	10.17.	전북특별자치도	10.28.	지역 현안	
61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10.21.	종합감사	10.30.	관저 공사 하도급법 위반 및 국회 위증 관련	
62	박준규	현대건설 책임	10.21.	종합감사	10.30.	관저 공사 하도급법 위반 및 국회 위증 관련	
63	김태균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10.21.	종합감사	10.30.	공관 운영 관련	
64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10.21.	종합감사	10.30.	기부금품법 위반 은폐 관련	
65	김○○	춘천경찰서 경위	10.21.	종합감사	10.30.	통일교 내사 관련	
66	최진규	강원경찰청 경정	10.21.	종합감사	10.30.	통일교 내사 관련	
67	김완순	거제경찰서 경감	10.21.	종합감사	10.30.	통일교 내사 관련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일자	신문요지	비고
68	이형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10.21.	종합감사	10.30.	이진숙 체포 관련	
69	홍승우	국가수사본부 총경	10.21.	종합감사	10.30.	이진숙 체포 관련	

【출석 참고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일자	진술요지	비고
1	주인수	현대엘리베이터노동조합 위원장	10. 1.	행정안전부	10.14.	엘리베이터 작업환경 관련	
2	방규현	OTIS엘리베이터 노동조합 위원장	10. 1.	행정안전부	10.14.	엘리베이터 작업환경 관련	
3	정종수	숭실대학교 교수	10. 1.	행정안전부	10.14.	국정자원 화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4	김진아	gs holdings 상무보	10. 1.	행정안전부	10.14.	GS는 유통·에너지 등 현장에서 AI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을 갖춘 기업으로, 공공부문 AI 확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표 사례	
5	정성욱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10. 1.	행정안전부	10.1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중수청 설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문제점 진단	
6	권하은	-	10. 1.	경찰청	10.17.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폭력 피해 관련	
7	이국성	안산상록경찰서 경위	10. 1.	경찰청	10.17.	저위험권총 등 경찰 장비 개발 관행의 문제	
8	임영애	동탄 교제살인사건 유족	10. 1.	경기남부경찰청	10.21.	동탄 교제살인사건 관련 경찰 부실대응 현황	
9	양치승	헬스트레이너	10. 1.	서울특별시	10.23.	공공재산 관리 사각지대와 소상공인 피해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10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	10. 1.	서울특별시	10.23.	영테크 사업 구조적 문제 관련	
11	유재광	동탄 교제살인사건 피해자 지인	10.14.	경기남부경찰청	10.21.	동탄교제살인사건 경찰 부실대응 관련	
12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	10.14.	서울특별시	10.23.	TBS 폐국 위기 관련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일자	진술요지	비고
13	장형순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 위원장	10.14.	대전광역시	10.24.	노은동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운영 및 하역분쟁 관련	
14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 대표	10.14.	강원특별자치도	10.24.	시멘트 환경 문제 관련	
15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10.14.	종합감사	10.30.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16	김보성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10.14.	종합감사	10.30.	국가직 청원경찰의 수당에 대해 군경력 불인정,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취해진 정근수당 환수 조치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7	서용석	중소조선연구원 원장	10.15.	서울특별시	10.23.	한강 리버버스 추진 관련 질의	

【불출석 증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출석요구 사유	대상기관	불출석 일자	불출석 사유	비고
1	강동석	행정안전부 前 국가정보 자원관리원장	10. 1.	3시간 이내 복구 가능 발언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10.14.	해외일정	
2	조우연	21그램 감사	10. 1.	용산 관저 집무실 이전 관련	행정안전부	10.14.	공무상 일정	
3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	10. 1.	음성 국립소방병원 개원 관련	소방청	10.15.	건강상 사유	
4	김○○	대통령경호처 경호과장	10. 1.	윤석열 前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찰청	10.17.	공무상 일정	
5	조재홍	웰파킹개발(주) 사장	10. 1.	공공재산 운영의 적정성과 감독 실태 검증	서울특별시	10.23.	공무상 일정	
6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10. 1.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한 질의	종합감사	10.30.	국외출장	
7	김정열	㈜은성중공업 대표	10.14.	한강 리버버스 추진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10.23.	국내출장	
8	박동진	㈜이크루즈 대표	10.14.	한강 리버버스 추진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10.23.	국외출장	
9	이상민	행정안전부 前 장관	10.21.	내란 당일, 단전·단수 지시 관련	종합감사	10.30.	공무상 일정	
10	오명환	네오세미테크 前 대표	10.21.	민중기 특검 주식투자 관련 질의	종합감사	10.30.	건강상 사유	
11	신용주	서울중부경찰서 경정	10.21.	이진숙 체포 관련	종합감사	10.30.	공무상 일정	

【불출석 참고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출석요구 사유	대상기관	불출석 일자	불출석 사유	비고
1	이원석	前 검찰총장	10. 1.	마약범죄의 심각성 및 검찰 폐지로 인한 경찰 수사 차질 우려	경찰청	10.17.	-	
2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	10. 1.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조성 관련	경기도	10.21.	국외공무출장	

【대리출석 증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출석요구 사유	대상기관	출석 일자	불출석 사유	비고
1	강길화	일성계전 대표이사	10. 1.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	행정안전부	10.14.	-	대리출석 (이완 대표)
2	정종표	DB 손해보험 대표이사	10. 1.	풍수해 보험	행정안전부	10.14.	-	대리출석 (손석기 일반업무본부장)
3	구본욱	KB 손해보험 대표이사	10. 1.	풍수해 보험	행정안전부	10.14.	-	대리출석 (정재근 일반보험상품본부장)
4	송춘수	NH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10. 1.	풍수해 보험	행정안전부	10.14.	-	대리출석 (이종우 정책보험본부장)

다. 일반증인 · 참고인 철회 현황

【철회 증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요구일자	출석요구철회일자	출석요구 사유	철회 사유
1	차병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장	10. 1.	행정안전부	10.14.	10.14.	옥외광고 수입 부실관리 및 예산 부당사용	여야 간사 합의
2	유영상	SKT 대표이사	10. 1.	경찰청	10.17.	10.17.	AI업무협약 관련	여야 간사 합의
3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10. 1.	경찰청	10.17.	10.17.	개인정보 유출	여야 간사 합의
4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10. 1.	행정안전부	10.14.	10.14.	관저 공사 하도급법 위반 및 국회 위증 관련	여야 간사 합의
5	박준규	현대건설 책임	10. 1.	행정안전부	10.14.	10.14.	관저 공사 하도급법 위반 및 국회 위증 관련	여야 간사 합의
6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10. 1.	행정안전부	10.14.	10.1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관련 우려 및 문제 진단	여야 간사 합의
7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	10. 1.	행정안전부	10.14.	10.1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관련 우려 및 문제 진단	여야 간사 합의
8	박종환	대평엔지니어링 대표이사	10. 1.	행정안전부	10.14.	10.1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야 간사 합의
9	-	내일파워 대표이사	10. 1.	행정안전부	10.14.	10.1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야 간사 합의
10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10. 1.	소방청	10.15.	10.15.	119법 시행령 개정 관련	여야 간사 합의
11	조승호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 前 사무국장	10. 1.	중앙선관위	10.15.	10.15.	선거 관리	여야 간사 합의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요구일자	출석요구철회일자	출석요구 사유	철회 사유
12	남상덕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 前 지도계장	10. 1.	선관위	10.15.	10.15.	선거 관리	여야 간사 합의
13	정상진	울산경찰청장	10. 1.	경찰청	10.17.	10.17.	-	여야 간사 합의
14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10. 1.	경찰청	10.17.	10.17.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관련, 책임경영 관련	여야 간사 합의
15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10. 1.	경찰청	10.17.	10.17.	경찰청순찰차 부당계약 및 부실납품 문제제기	여야 간사 합의
16	안정일	현대자동차 상무	10. 1.	경찰청	10.17.	10.17.	경찰순찰차 부실납품	여야 간사 합의
17	박창지	경찰청 장비과장	10. 1.	경찰청	10.17.	10.17.	경찰순찰차 부실납품	여야 간사 합의
18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	10. 1.	경찰청	10.17.	10.17.	중고거래 사기 방지 대책 미비	여야 간사 합의
19	이진우	충북경찰청 수사과장	10. 1.	경찰청	10.17.	10.17.	수사 공정성 질의	여야 간사 합의
20	박종태	한화이글스 대표	10. 1.	대전광역시	10.24.	10.24.	한화이글스 구장 장애인석 임의변경 관련	여야 간사 합의
21	김영섭	KT 대표이사	10. 1.	종합감사	10.30.	10.30.	국가융합망	여야 간사 합의
22	이병선	속초시장	10.14.	강원특별자치도	10.24.	10.24.	가뭄 사태 관련	여야 간사 합의
23	김민정	대구광역시 뉴미디어담당관	10.14.	대구광역시	10.27.	10.27.	대구광역시 채용 관련	여야 간사 합의
24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10.14.	종합감사	10.30.	10.30.	119법 시행령 개정 관련	여야 간사 합의
25	이해욱	DL그룹 회장	10.14.	종합감사	10.30.	10.30.	폐기물 불법매립 및 지자체 유착 의혹 관련	여야 간사 합의
26	윤영준	현대건설 前 대표이사	10.21.	종합감사	10.30.	10.30.	관저, 골프연습시설, 안가 등 불법공사 및 영빈관 공사 등	여야 간사 합의
27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10.21.	종합감사	10.30.	10.30.	지역균형발전 사업 포기 관련	여야 간사 합의

【철회 참고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요구일자	출석요구철회일자	출석요구 사유	철회 사유
1	이상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10. 1.	행정안전부	10.14.	10.14.	국자원 유지보수비 절감 방안	여야 간사 협의
2	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	10. 1.	행정안전부	10.14.	10.1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에너지 정책의 비효율성 및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의견 청취	여야 간사 협의
3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10. 1.	행정안전부	10.14.	10.1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에너지 정책의 비효율성 및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의견 청취	여야 간사 협의
4	서수길	soop 대표이사	10. 1.	경기도	10.21.	10.21.	BJ 활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상인 영업 피해	여야 간사 협의